

국립대학(국립부설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내 발생한 산업재해 사례분석 및 재해예방 대책연구

연구책임자 : 윤초희(동국대학교)

2025. 12.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주요 내용	3
3. 연구 방법	4
4. 연구인력 구성	6
Ⅱ. 국립학교 산업재해 다발유형 분석 및 동종사고 예방대책 수립 · 7	
1. 국립학교 산업재해 현황 및 실태 분석	7
2. 선행연구 및 해외 대학 사례 검토	22
3. 국립학교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면담 조사 결과	48
4. 국립학교 산업재해 다발유형 예방대책	54
Ⅲ.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방안	66
1. 법적·제도적 배경	66
2. 유관기관 사례 분석	75
3. 면담 조사 결과	91
4. 교육기관 특성을 반영한 도급 운영 매뉴얼 표준모델 도출	96
IV. 결론	100
참고문헌	103
[붙임]	106

목 차

[표 목 차]

<표 II-1> 국립학교 산업재해 현황(총계)	7
<표 II-2> 직종별 산업재해 현황	9
<표 II-3> 직종별 종사자 수에 따른 재해율(2024년)	10
<표 II-4> 재해형태(원인)별 산업재해 현황	11
<표 II-5> 직종 및 재해형태(원인)에 따른 산업재해 현황	13
<표 II-6> 발생요인별 산업재해 현황(2023년도)	14
<표 II-7> 발생요인별 산업재해 현황(2024년도)	17
<표 II-8> 재해정도(요양기간)별 산업재해 현황	20
<표 II-9> 재해정도(요양기간)별 산업재해 현황	21
<표 II-10> 'UBC Safe Vancouver' 앱 주요 기능	35
<표 II-11> UBC의 직원 건강 및 안전 교육	37
<표 II-12>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교의 프로세스 중심 위험성 평가 양식(예시) ..	41
<표 II-13>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교의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험성 평가 ..	42
<표 II-14> EHSA 안전 교육 필수 이수 식별 체크리스트(예시)	43
<표 II-15> EHSA 교육 모듈의 직무별 필수 안전 교육 목록(예시)	45
<표 II-16> 국립학교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면담 조사 대상자 ..	48
<표 III-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항목 및 기준(고용노동부, 2021) ..	77
<표 III-2>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및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 기준(고용노동부, 2021) ..	79
<표 III-3> 도급(용역) 시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 세부 기준(서울 시교육청)	81
<표 III-4>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경기도교육청)	84
<표 III-5>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항목(광주광역시교육청)	87
<표 III-6>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87
<표 III-7> 수급업체 안전보건 조치능력 평가항목(경상남도교육청)	88
<표 III-8> 시도교육청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종합)	90
<표 III-9> 국립학교 도급 안전보건확보 매뉴얼 개선을 위한 면담 조사 대상자 ..	91
<표 III-10>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항목(안)	97

목 차

<그 립 목 차>

[그림 Ⅱ-1] 'UBC Safe Vancouver' 앱	36
[그림 Ⅱ-2] 서울 연서중학교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56
[그림 Ⅲ-1] 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고용노동부, 2021) ·	76
[그림 Ⅲ-2] 안전보건관리계획서(Ⅰ,Ⅱ) 서식(세종시교육청)	86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산업재해는 매년 다수의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 및 안전문화 정책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사고사망만인율은 OECD 주요 선진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며, 예방 가능한 산업재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중대재해를 비롯한 각종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 노력을 강조하고 있음(고용노동부, 2025).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국립학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이에 교육부 역시 매년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교육부, 2025a; 2025b). 그러나 매년 일정 수준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관련한 예방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 국립학교(국립대학 및 부설학교, 국립특수학교)의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57건(0.14%), 2023년 54건(0.12%), 2024년 56건(0.11%)으로 재해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재해건수는 2023년 대비 2024년의 경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2024년 기준 중상이 총 5건(9%)으로 대다수의 재해가 경상 이하(91%)로 나타나고 있으나, 하인리히 법칙¹⁾에 따라 경미한 사고가 반복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재해의 기본 원인 및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관리하여야 함.
- 따라서 국립학교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주요 특징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적합한 예방 대책을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용어사전 ‘하인리히 법칙’ (https://oshri.kosha.or.kr/kosha/data/terminologyDictionary.do?articleNo=393010&mode=view&utm_source=chatgpt.com(2025. 9. 23. 인출))

특히 국립학교의 산업재해는 상당수가 시설관리, 조리, 환경관리 등 이른바 현업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고 있어 현업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 요인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교강사, 행정직원 등 현업 외 업무 종사자에서도 산업재해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물리적 위험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 제도적 구조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 요인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대응 전략이 추가적으로 요구됨. 이러한 다차원적 분석을 토대로 국립학교의 실제 업무 환경에 부합하는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한편,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외주화 확대와 위험 작업의 도급 증가로 인해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고용노동부, 2022).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제도만으로는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문제의식이 제기되었음. 특히 태안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고,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 등 중대재해가 구조적 안전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음. 이에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안전보건체계 구축·이행 전반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공포되어 2022년부터 시행되었음(류현철, 2021).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도급·용역·위탁 등 제3자를 통한 업무 수행 시, 경영책임자가 하청업체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수급인 및 그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되며, 이에 국립학교의 경영책임자도 학교 내 도급·용역·위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관련 종사자의 안전보건의 확보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학교 역시 다양한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구성원 외 제3자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역시 중요한 과제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관련하여 교육부는 2022년 「도급, 위탁, 용역 등의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매

뉴얼(안)」을 마련하여 적격 수급인 선정 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에 대한 평가를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음(교육부, 2022). 다만 이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표준안(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21)을 준용한 것으로, 학교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됨. 이에 학교의 업무환경과 위험요인 등을 고려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관련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급인 및 그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립학교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특징 및 다발재해유형 특징을 분석하여 산업재해 유형별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 국립학교의 도급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표준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국립학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연구 주요 내용

가. 국립학교 산업재해 다발유형 분석 및 동종사고 예방 대책 수립

- 국립학교(국립대학 및 부설학교, 국립특수학교) 산업재해 현황(직종별, 원인별, 발생요인별(인적/환경적/기계적), 재해정도별 등) 파악 및 유형별 최다 발생 재해유형 도출
- 국내외 (교육기관) 산업재해 예방정책 및 개선사례, 기타 관련 선행연구 검토 등을 통한 산업재해 동종사고 예방 대책 수립의 이론적·실천적 기반 검토
- 국립학교 산업재해 실무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해당 기관의 산업재해 특징 파악 및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의견 수렴
- 정량 데이터 분석, 문헌 분석, 면담 등을 통해 도출된 국립학교 다발재해유형 예방을 위한 대책(안) 마련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한 타당성 및 적용가능성 제고

나.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방안 제시

- 관련 법령 및 지침, 고용노동부 표준 매뉴얼 등의 검토를 통한 도급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한 제도적 기반 분석
- 유사기관(시도교육청(공립학교))의 도급 안전보건 확보 매뉴얼 분석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한 학교의 도급사업 관련 사례 및 의견 수렴
- 국립대학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한 학교 내 도급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현행 매뉴얼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과 관련한 정보 수집
- 법령 및 관련 문헌분석, 유사기관의 대응사례, 실무자 면담조사 등을 통해 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도급 안전보건 확보 표준 모델을 도출하고 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표준 모델의 법적 타당성 검토

3. 연구 방법

가. 통계 분석

- 국립학교 산업재해 다발 유형 분석 및 동종사고 예방 대책 수립 관련
 - 최근 4년간 국립학교(국립대학 및 부설학교, 국립특수학교)의 산업재해 현황 분석
 - 직종별, 원인별, 요인별, 재해정도별 최다 발생 유형 분석

나. 문헌 분석

- 국립학교 산업재해 다발 유형 분석 및 동종사고 예방 대책 수립 관련
 - 국내외 학교 및 인접 분야의 산업재해 예방정책 및 관련 연구 분석

□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방안 관련

- 도급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한 법령 및 지침 검토
- 유관기관(시도교육청(공립학교) 도급 안전보건 확보 매뉴얼 분석

다. 면담 조사

1) 국립학교 산업재해 다발 유형 분석 및 동종사고 예방 대책 수립 관련

- 목적: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한 국립학교 산업재해 실무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한 소속 학교의 산업재해 특징 파악 및 산재 감소를 위한 의견 수렴
- 대상: 국립학교 산업재해 업무 담당자 1인, 시도교육청 산업재해 업무 담당자 1인

□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방안 관련

- 목적: 국립학교 도급 안전보건 확보 업무 시 발생하는 문제점 도출 및 유사기관의 우수사례 수집
- 대상: 국립학교 도급 안전보건 확보 업무 담당자 1인, 시도교육청 도급 안전보건 확보 업무 담당자 3인

라. 전문가 자문

□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방안 관련

- 목적: 도급 안전보건 표준 모델에 대한 법적, 실무적 정합성 및 타당성 검토
- 대상: 학교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문가 1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1인

4. 연구인력 구성

- 연구책임자: 윤초희(동국대학교 교수)
- 공동연구자: 이효정(동국대학교 교수)
- 전임연구원: 김미희(동국대학교 학교종합안전연구소)
- 연구자문: 권상면(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 연구보조원: 이예진(동국대학교 학교종합안전연구소)

II. 국립학교 산업재해 다발유형 분석 및 동종사고 예방대책 수립

○ 이 장에서는 국립학교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현황을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유형별 특징 및 최다 발생 유형을 도출하였음.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국내 교육기관 및 인접분야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해외 대학의 산업재해 방지 대책을 분석하였음. 아울러 국립학교 및 유관기관(시도교육청) 산업재해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구체적 양상 및 요구사항 등을 청취하여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였음.

1. 국립학교 산업재해 현황 및 실태 분석

가. 산업재해 현황(2021년~2024년)

○ 최근 4년간 국립학교(국립대학 및 부설학교, 국립특수학교)의 산업재해 현황은 다음 표 <II-1>과 같음.

<표 II-1> 국립학교 산업재해 현황(총계)

구분	국립대학(부설학교 포함)			특수학교			계		
	재해 건수	근로자 (명)	산재율	재해 건수	근로자 (명)	산재율	재해 건수	근로자 (명)	산재율
2021년	45	37,672	0.12%	0	666	0.00%	45	38,338	0.12%
2022년	53	40,624	0.13%	4	657	0.61%	57	41,281	0.14%
2023년	53	43,104	0.12%	1	654	0.15%	54	43,758	0.12%
2024년	53	48,835	0.11%	3	673	0.45%	56	49,508	0.11%

○ 국립학교의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은 45건(산재율 0.12%), 2022년

57건(산재율 0.14%), 2023년 54건(산재율 0.12%), 2024년 56건(산재율 0.11%)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2022년 산재율이 0.14%로 0.02%p 상승하였으나 2023년 이후 전체적인 산재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기관별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국립대학의 경우 2021년 45건(0.12%), 2022년 53건(0.13%), 2023년 53건(0.12%), 2024년 53건(0.11%) 발생하였으며, 국립특수학교는 2021년 0건(0.00%), 2022년 4건(0.61%), 2023년 1건(0.15%), 2024년 3건(0.45%)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국립특수학교의 재해건수가 국립대학에 비해 적었으나 이는 학교 규모 및 근로자 수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산재율은 2022년~2024년의 경우 국립특수학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0.15%~0.61%).

○ 국립대학 및 부설학교, 국립특수학교의 산재율은 2024년 기준 시도교육청(공립학교)의 산재율(재해건수 3,322건, 0.61%)에 비해 0.50%p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매년 일정 수준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유형별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하여 유형별 최다 발생요인을 추출하고, 중상 이상의 재해 내용을 사안별로 검토함으로써 학교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나. 유형별 산업재해 현황

1) 직종 및 재해형태(원인)별 산업재해 현황

○ 국립학교(국립대학 및 부설학교, 국립특수학교)의 직종별 산업재해 현황은 <표 II-2>에 제시하였음. 최근 4개년 간 연도별 직종에 따른 발생 건수를 집계하였고, 해당연도의 총 산업재해 발생 건수와 비교하여 직종별 재해 발생 비율을 산출하였음.

<표 Ⅱ-2> 직종별 산업재해 현황

구분		연도	국립대학 (건)	특수학교 (건)	계	
					(건)	(%)
현업	조리	21년	9	0	9	20.0
		22년	7	2	9	15.8
		23년	9	0	9	16.7
		24년	9	0	9	16.1
	시설	21년	5	0	5	11.1
		22년	9	0	9	15.8
		23년	8	0	8	14.8
		24년	9	0	9	16.1
	경비	21년	1	0	1	2.2
		22년	2	0	2	3.5
		23년	1	0	1	1.9
		24년	1	0	1	1.8
	청소	21년	23	0	23	51.1
		22년	23	0	23	40.4
		23년	30	0	30	55.6
		24년	26	0	26	46.4
	기타	21년	2	0	2	4.4
		22년	1	0	1	1.8
		23년	1	0	1	1.9
		24년	0	0	0	0.0
현업외		21년	5	0	5	11.1
		22년	11	2	13	22.8
		23년	4	1	5	9.3
		24년	8	3	11	19.6
계		21년	45	0	45	
		22년	53	4	57	
		23년	53	1	54	
		24년	53	3	56	

- 직종별 산업재해 현황 분석 결과, 최근 4개년 모두 현업 업무에서 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업 업무 중 가장 높은 발생 비율을 차지한 직종은 청소 직종으로, 2021년 23건(51.1%), 2022년 23건(40.4%), 2023년 30건(55.6%), 2024년 26건(46.4%)인 것으로 나타남.
- 현업 업무 중 조리 직종과 시설 직종에서도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 조리의 경우 2021년 9건(20.0%), 2022년 9건(15.8%), 2023년 9건(16.7%), 2024년 9건(16.1%)이었으며, 시설의 경우 2021년 5건(11.1%), 2022년 9건(15.8%), 2023년 8건(14.8%), 2024년 9건(16.1%)이었음.
- 현업 외 업무에서도 매년 일정비율 이상의 재해 건수가 발생됨. 2021년 5건(11.1%), 2022년 13건(22.8%), 2023년 5건(9.3%), 2024년 11건(19.6%)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특히 2023년 대비 2024년 현업 외 업무의 발생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다만 이는 직종별 근로자 수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근로자 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율을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2024년의 국립학교 직종별 종사자 수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II-3> 직종별 종사자 수에 따른 재해율(2024년)

구분	조리	시설	경비	청소	기타현업	현업외
근로자 수	662	898	501	2,456	244	44,743
산업재해	9	9	1	26	0	11
재해율(%)	1.36	1.00	0.20	1.06	0.00	0.02

- 조리 직종의 재해율은 1.36%, 시설 1.00%, 경비 0.20%, 청소 1.06%, 현업 외 0.02%²⁾인 것으로 나타남. 직종을 고려했을 때 재해율은 조리 직종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2) 단, 현업 외 종사자의 경우 공무원, 교원, 사무직 근로자가 포함되며 기간제 교직원을 제외한 정규직 공무원, 교원,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공무원재해보상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함. 이에 따라 이들의 직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통계상 산업재해 발생 건수에서 제외됨.

○ 다음으로 최근 4개년 간 재해형태(원인)별 국립대학 및 부설학교, 국립특수학교의 산업재해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II-4> 재해형태(원인)별 산업재해 현황

구분	연도	국립대학 (건)	특수학교 (건)	계	
				(건)	(%)
이상온도	21년	4	0	4	8.9
	22년	2	0	2	3.5
	23년	1	0	1	1.9
	24년	4	0	4	7.1
넘어짐	21년	26	0	26	57.8
	22년	29	1	30	52.6
	23년	35	0	35	64.8
	24년	31	1	32	57.1
절단베임	21년	0	0	0	0.0
	22년	6	1	7	12.3
	23년	3	0	3	5.6
	24년	6	0	6	10.7
물체맞음	21년	0	0	0	0.0
	22년	2	0	2	3.5
	23년	6	0	6	11.1
	24년	4	0	4	7.1
부딪힘	21년	1	0	1	2.2
	22년	2	0	2	3.5
	23년	1	0	1	1.9
	24년	3	1	4	7.1
근골격	21년	1	0	1	2.2
	22년	4	0	4	7.0
	23년	5	0	5	9.3
	24년	4	1	5	8.9
기타	21년	6	0	6	13.3
	22년	8	2	10	17.5
	23년	2	1	3	5.6
	24년	1	0	1	1.8
계	21년	45	0	45	
	22년	53	4	57	
	23년	53	1	54	
	24년	53	3	56	

- 재해형태(원인)별 산업재해 현황 분석 결과, 넘어짐으로 인한 재해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21년 26건(57.8%), 2022년 30건(51.6%), 2023년 35건(64.8%), 2024년 32건(57.1%)으로 넘어짐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매년 50% 이상의 비율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
- 이어 근골격계질환, 절단베임, 물체맞음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2021년 1건(2.2%), 2022년 4건(7.0%), 2023년 5건(9.3%), 2024년 5건(8.9%) 발생함. 절단베임은 2021년 0건(0.0%), 2022년 7건(12.3%), 2023년 3건(5.6%), 2024년 6건(10.7%) 발생함. 물체맞음으로 인한 재해는 2021년 0건(0.0%), 2022년 2건(3.5%), 2023년 6건(11.1%), 2024년 4건(7.1%)인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직종과 재해형태(원인)를 모두 고려한 국립학교(국립대학 및 부설학교, 국립특수학교)의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II-5> 직종 및 재해형태(원인)에 따른 산업재해 현황

연 도	직종구분		근로자수	이상 온도	넘어짐	절단· 베임	물체에 맞음	물체에 부딪힘	근골격계 질환	기타	소계	사망 재해
'21	현 업 무	조리	641	3	5	0	0	0	1	0	9	0
		시설	720	0	4	0	0	0	0	1	5	0
		경비·통학보조	521	0	1	0	0	0	0	0	1	0
		청소	2,247	1	13	2	0	0	3	4	23	0
		기타현업업무	232	0	0	0	0	0	1	1	2	0
		소계	4,470	4	23	2	0	0	5	6	40	0
	현업업무외		33,868	0	3	0	0	1	1	0	5	0
	합계		38,338	4	26	2	0	1	6	6	45	0
	재해율										0.12%	
'22	현 업 무	조리	686	1	3	3	0	0	1	1	9	0
		시설	875	0	4	2	2	0	0	1	9	0
		경비·통학보조	476	0	2	0	0	0	0	0	2	0
		청소	2,249	0	16	1	0	2	2	2	23	0
		기타현업업무	286	0	1	0	0	0	0	0	1	0
		소계	4,574	1	26	6	2	2	3	4	44	0
	현업업무외		36,707	1	4	1	0	0	1	6	13	0
	합계		41,281	2	30	7	2	2	4	10	57	0
	재해율										0.14%	
'23	현 업 무	조리	636	1	5	1	0	0	2	0	9	0
		시설	895	0	5	0	2	0	0	1	8	0
		경비·통학보조	505	0	1	0	0	0	0	0	1	0
		청소	2,459	0	21	2	3	1	3	0	30	0
		기타현업업무	227	0	0	0	1	0	0	0	1	0
		소계	4,722	1	32	3	6	1	5	1	49	0
	현업업무외		39,036	0	3	0	0	0	0	2	5	0
	합계		43,758	1	35	3	6	1	5	3	54	0
	재해율										0.12%	
'24	현 업 무	조리	662	4	2	0	2	1	0	0	9	0
		시설	898	0	5	3	0	1	0	0	9	1
		경비·통학보조	501	0	0	0	0	0	0	1	1	0
		청소	2,456	0	16	3	2	1	4	0	26	0
		기타현업업무	244	0	0	0	0	0	0	0	0	0
		소계	4,765	4	23	6	4	3	4	1	45	1
	현업업무외		44,743	0	9	0	0	1	1	0	11	0
	합계		49,508	4	32	6	4	4	5	1	56	1
	재해율										0.11%	

- 매년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직종인 현업업무 중 청소 직종의 경우 마찬가지로 과반 이상의 비율로 넘어짐에 의한 재해 발생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남. 청소 외 다른 현업 직종이나 현업업무의 직종에서 발생한 재해형태(원인)를 살펴보면, 2024년 조리 직종에서 다수 발생한 이상온도 접촉에 의한 사고 발생을 제외하면 대체로 넘어짐에 의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 직종별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재해형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2) 발생요인별 산업재해 현황

-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안전보건진단 시 산업재해의 원인을 인적 요인/기계적 요인(물적·설비적 요인)/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한국산업안전공단, 2024). 인적 요인은 작업자의 부주의 및 불안정한 행동, 실수, 지식·기술 부족, 불안정한 상태 방치 등 사람의 행동과 능력에서 비롯되는 원인을 의미하며, 기계적 요인은 기계·설비·도구의 결함, 고장, 방호장치 미비 등 물적 상태에서 비롯되는 원인을 의미함. 환경적 요인은 작업공간의 온도, 조명, 소음, 환기 등 물리적·주변 환경에서 비롯되는 원인을 의미함.
- 본 연구에서는 2023년~2024년 국립학교의 산업재해조사표를 분석하여 재해를 인적/물적·설비적/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재해다발요인을 파악하였음. 2023년 결과는 <표 II-6>과 같음.

<표 II-6> 발생요인별 산업재해 현황(2023년도)³⁾

	업무	재해형태	요양 일수	재해내용
인적 (31건)	경비	넘어짐	12일	빗길에 넘어짐
	사무직	넘어짐	3일	직원 체육의 날 산행 중 발목을 접질림
	사무직	넘어짐	56일	단합 프로그램(줄넘기) 중 넘어짐
	사무직	근골격계	0일	비품 상자를 옮기던 중 상자에 손가락이 걸리며 인대 파열
	시설	넘어짐	28일	수도검침 중 발을 헛디딤 넘어짐

3) 2023년도 산업재해조사표 1건이 누락되어 통계 수치와 산업재해조사표 집계 건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시설	넘어짐	70일	계단에서 발을 헛디딤
	시설	넘어짐	7일	체육활동 중 미끄러짐
	시설	넘어짐	90일	전등 교체 작업 후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균형을 잃음
	조리	근골격계	180일	반복 업무 수행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조리	넘어짐	30일	퇴근 하는 중 미끄러져 넘어짐
	조리	넘어짐	21일	음료 박스를 들어올리다 운반대차 바퀴에 의해 앞으로 넘어짐
	조리	근골격계	64일	업무상 질병으로 특이 발생장소 없음
	조리	절단, 베임	14일	박스테이프 절개 중 가위에 손가락을 베임
	청소	절단, 베임	15일	작업장 정리 중 미처 확인하지 못한 폐기물에 찢김
	청소	넘어짐	98일	계단 청소 중 미끄러짐
	청소	넘어짐	8일	빈 박스를 밟고 넘어짐
	청소	넘어짐	84일	분리수거 중 바닥에 떨어진 1회용 컵을 밟고 미끄러짐
	청소	넘어짐	49일	쓰레기통을 옮기던 도중 발목이 골절됨
	청소	넘어짐	90일	문턱 높낮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짐
	청소	넘어짐	90일	물걸레 청소 작업 중 넘어짐
	청소	절단, 베임	14일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날에 가져다 댐
	청소	넘어짐	42일	책상을 밟고 창문 청소 후 내려오며 미끄러 넘어짐
	청소	부딪힘	42일	뒷걸음으로 나오면서 바닥을 닦다가 벽 모서리에 부딪힘
	청소	넘어짐	28일	뒷걸음으로 닦으면서 내려오다가 헛딛어 계단에 찰음
	청소	넘어짐	6일	밀대에 다리가 걸려 넘어짐
	청소	근골격계	140일	어깨 및 무릎 부담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발생
	청소	넘어짐	65일	이동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짐
	청소	기타	56일	고령 및 자세 불안정성으로 인한 손상
	청소	넘어짐	14일	재활용품 처리 중 넘어짐
	청소	넘어짐	22일	이동하던 중 넘어짐
	청소	근골격계	90일	침대 이동으로 인한 허리 부상
환경적 (22건)	기타	기타	21일	휴게실에서 나갈 때 출입문에 손가락이 부딪혀 끼임
	기타	기타	30일	내원한 환자를 보정하다가 물림
	시설	넘어짐	84일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도중 넘어짐

	시설	넘어짐	14일	배수로 옆 돌에 걸려 넘어짐
	시설	넘어짐	90일	나무데크 상태가 확인되지 않아 오토바이로 이동 중 나무데크에서 미끄러짐
	시설	기타	30일	맨홀 뚜껑 개폐가 원활하지 않아 닫는 과정에서 뚜껑을 놓쳐 손가락이 끼임
	조리	넘어짐	70일	국수(회전식)의 뜨거운 물을 쏟아낸 후 약간 움직인 배수로 뚜껑에 걸려 넘어짐
	조리	넘어짐	30일	조리 준비 중 스텐으로 된 트렌치를 밟아서 넘어짐
	조리	이상온도	-	열탕소독 중 급식집기류를 꺼내려다가 물이 장갑 안으로 유입
	조리	넘어짐	16일	배수로 덮개 위에서 이동하다 넘어짐
	조경	넘어짐	90일 ↑	돌계단에서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짐
	조경	물체에 맞음	35일	이끼가 낀 수목 산물을 운반하다가 미끄러져 놓치며 발을 다침
	청소	넘어짐	20일	포대 운반 중 빙판에 넘어짐
	청소	절단, 베임	9일	쓰레기봉투 정리 중 날카로운 이물질에 베임
	청소	넘어짐	42일	점심식사 후 복귀 중 젖은 흙을 밟고 미끄러짐
	청소	넘어짐	14일	낙엽 정리 중 돌부리가 흔들려 넘어짐
	청소	넘어짐	4일	빙판길이 되면서 미끄러져 넘어짐
	청소	넘어짐	28일	물기가 있는 바닥에 미끄러짐
	청소	물체에 맞음	28일	대걸레에 밀려 서가에 꽂혀 있던 책이 떨어지며 낙상 사고 발생
	청소	넘어짐	2일	옥상청소를 위해 옥상에 들어가다가 입구와 바닥의 높이 차로 발을 헛디딤
기계적 (2건)	사무직	물체에 맞음	2일	책상을 이동하던 중 책상 부착물이 떨어짐
	시설	물체에 맞음	3일	운동기구 점검 중 갑자기 탈락된 운동기구 상단 부속이 어깨에 떨어짐

○ 2023년 국립학교의 산업재해조사표 분석 결과, 인적 요인이 31건(58.5%), 환경적 요인이 20건(37.7%), 기계적 요인이 2건(3.8%)으로 인적 요인에 의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인적 요인에 의한 산업재해의 경우 직종별로는 청소 직종에서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조리, 시설 직종 순으로 나타났음. 재해형태별로는 넘어짐인 경우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 5건, 절단 및 베임 3건 순으로 확인되었음. 환경적 요인에 의한 산업재해의 경우 인적 요인과 같이 직종별로는 청소 직종에서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어 조리, 시설이 4건으로 재해 건수가 같았음. 재해형태별로는 넘어짐이 1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태로 드러났으며, 이어 기타(끼임, 환축에 물림), 물체에 맞음, 절단, 베임 순의 재해가 발생하였음. 기계적 요인은 총 2건으로, 사무직(현업 외)과 시설 직종에서 나타났고 재해형태는 모두 물체에 맞음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II-7> 발생요인별 산업재해 현황(2024년도)

	업무	재해형태	요양 일수	재해내용
인적 (23건)	경비	기타	14일	야간 경비근무중 뱀에 물림
	사무직	부딪힘	27일	출입문 모서리에 부딪혀 발가락 골절
	사무직	근골격계	8일	학생 목욕지도 중 요추 염좌
	사무직	넘어짐	8일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발목 인대 염좌
	사무직	넘어짐	21일	외부계단을 내려가는중 미끄러짐
	사무직	넘어짐	6일	출장지에서 책상에서 일어나다가 의자에 걸려 넘어짐
	사무직	넘어짐	240일	출근 중 넘어져 양측 발목 인대 손상
	사무직	넘어짐	14일	교탁에 걸려 넘어짐
	사무직	넘어짐	41일	계단을 보지못하고 넘어짐
	사무직	넘어짐	7일	복도에서 넘어져 왼쪽 어깨 골절 발생
	사무직	넘어짐	21일	출장 중 인도가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방지턱에 부딪혀 늑골 다발 골절 발생
	시설	넘어짐	14일	예초작업 완료 후 이동 중 발을 접질러 왼쪽 발목 인대 늘어남
	시설	기타	사망	급성심근경색 추정
	조리	끼임	20일	식재료 운반 중 운반카와 개수대 사이에 손 끼임
	청소	넘어짐	5일	화장실 청소 도중 넘어짐
	청소	넘어짐	121일	건물 출입구 나가던 중 넘어져 손목골절
	청소	넘어짐	90일	동산에서 낙엽을 담던 도중 왼쪽 무릎이 돌아가며 넘어짐
	청소	넘어짐	56일	출근 중 장애인점자블록을 밟고 미끄러져 흉추12번 골절
	청소	넘어짐	42일	휴게시설에서 자전거 타고 이동중 넘어져 오른손 골절

				발생
	청소	넘어짐	42일	청소 중 차량 앞 캔을 주우러 가다가 바닥에 발이 걸려 넘어져 발목 골절
	청소	근골격계	60일	평소에 무릎관절 질환으로 인한 수술 진행
	청소	근골격계	60일	업무 특성에 따른 우측 어깨에 근골격계 질환 발생
	청소	근골격계	56일	찾은도보 이동을 우측 외경골의 골연골증 발생
환경 (28건)	사무직	넘어짐	14일	빙판길로 인한 넘어짐
	시설	넘어짐	14일	예초작업 중 옹벽에서 미끄러져 낙상
	시설	넘어짐	21일	관목 가지치기 작업 중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져 오른쪽 무릎 염좌 및 근좌
	시설	넘어짐	4일	가압펌프장 누수로 인해 계단에서 미끄러져 왼쪽 어깨 힘줄염
	시설	절단, 베임	21일	관목 가지치기 작업 중 장비가 나뭇가지에 걸려 제어하지 못하며 전정기 날에 왼쪽 무릎 베임
	위생	넘어짐	12일	통행로 결빙에 의한 미끄러짐
	조리	이상온도	1일	보온 대식대 물에 손가락 화상사고 발생
	조리	넘어짐	54일	석식 배식 준비를 위해 급식실 내에서 이동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배수구 덮개에 왼팔 팔꿈치를 부딪혀 골절
	조리	물체에 맞음	35일	작업대 위 도마가 떨어지면서 오른쪽 발가락에 부딪혀 골절
	조리	넘어짐	21일	조리대에 올라가던 중 넘어짐
	조리	이상온도	14일	끓는 물을 옮기던 중 다른 조리원과 부딪힘
	조리	이상온도	4일	열탕 소독중 온수가 고무장갑 내부로 들어감
	조경	부딪힘	7일	전지제거 작업 도중 제거된 나뭇가지가 바위에 튀어 재해자 이마에 부딪힘
	청소	넘어짐	60일	바닥 청소(세척)작업 중 미끄러짐으로 팔목 골절
	청소	넘어짐	42일	청소 중 미끄러져 발목 골절
	청소	부딪힘	40일	적재된 봉투포대가 무너지며 재해자의 무릎에 부딪힘
	청소	넘어짐	42일	트럭 위에서 나무적재 작업 도중 바닥으로 떨어짐
	청소	넘어짐	60일	계단에서 쓰레기 봉투를 옮기던 도중 넘어짐
	청소	넘어짐	74일	재활용 하역작업 중 미끄러져 차량에서 낙상
	청소	절단, 베임	14일	건물 내 발생 폐기물 운반 도중 봉투 내에 있던 깨진 유리조각에 부상을 입음
	청소	절단, 베임	22일	전지가위로 전지작업 중 넝쿨 제거를 위해 한손으로 공구를 들다가 손이 미끄러짐

	청소	넘어짐	42일	계단에서 파지자루에 걸려 넘어져 무릎 타박상, 내측반달 연골 손상
	청소	넘어짐	21일	샤워실에서 미끄러져 문틀에 엉덩이, 무릎, 팔꿈치, 어깨 부딪힘
	청소	부딪힘	28일	휴게실에서 미끄러져 휴지통에 부딪혀 갈비뼈 골절
	청소	물체에 맞음	14일	창고 정리 중 주변의 합판이 낙하하여 좌측발 타박상 및 얇은 손상
	청소	넘어짐	9일	우천시 우산을 걸고 학내 자전거 탑승중 우산이 앞바퀴에 말려들어가 넘어짐
	청소	넘어짐	95일	학교 행사 참석차 대학본부를 방문 후 건물 외부 계단을 내려가던 중 추운 겨울 날씨 및 계단 결빙으로 빙판에 미끄러져 무릎뼈의 골절 등 부상
	청소	근골격계	63일	학내 계단에서 물체를 운반하던 중 발목을 접질러 족관절 인대 파열
기계 (5건)	시설	넘어짐	154일	기계실 창문을 닫기 위해 사다리에 오르다 낙상
	조리	물체에 부딪힘	56일	잔반통 소쿠리 이동 작업 중 소쿠리밑 불받침대가 재해자 발가락에 떨어져 맞음
	청소	절단,베임	34일	제초기 엔진 작동 중 풀제거하다 베임
	시설	부딪힘	35일	사다리가 파손되어 넘어지는 사다리에 부딪힘
	시설	절단, 베임	14일	등나무 전정작업 중 전정도구(전정기) 날에 손가락을 베는 부상을 당함

○ 2024년 산업재해조사표를 분석한 결과는 위의 <표 II -6>과 같음. 2024년 국립학교의 발생요인별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인적 요인이 23건(41.1%), 환경적 요인이 28건(50.0%), 기계적 요인이 5건(8.9%)로 나타나 대다수가 환경적 요인과 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사무직(현업 외) 근로자의 경우 빙판길로 인한 넘어짐(환경적 요인)을 제외하면 모두 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으며, 재해형태는 주로 넘어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요인에 의한 산업재해의 경우 과반 이상이 청소 직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해형태는 인적 요인과 마찬가지로 주로 넘어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딪힘, 절단·베임, 이상온도 접촉에 등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기계적 요인은 5건으로 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에 비해 발생 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시설 직종에서 발생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3) 재해정도(요양기간)별 산업재해 현황

- 이 절에서는 재해정도별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하였음.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이나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등 국제 표준 기준에 요양일수에 기반하여 중증 정도를 구분하는 명확한 분류 기준은 없으며,⁴⁾ 도수율⁵⁾, 강도율⁶⁾ 등을 산출하여 재해정도를 구분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산업재해현황분석」의 재해정도(요양기간)별 기준에 따라, 요양기간을 ‘4일⁷⁾~28일 / 29일~90일 / 91일~180일 / 6개월 이상’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고용노동부, 2024), 그 결과는 <표 II-8>에 제시하였음.

<표 II-8> 재해정도(요양기간)별 산업재해 현황

(단위: 건, %)

구분	4일~28일	29일~90일	91일~180일	6개월 이상 (사망 포함)
2023년	27 (50.9%)	22 (41.5%)	4 (7.5%)	0 (0.0%)
2024년	30 (53.6%)	21 (37.5%)	3 (5.4%)	2 (3.6%)

- 2023년 요양기간이 4일~28일로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재해가 총 27건(50.9%)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어 29일~90일이 22건(41.5%), 91일~180일이 4건(7.5%)이었으며 요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재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24년의 경우 2023년과 마찬가지로 요양기간이 4일~28일로 경미한 수준의 재

4)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5) 도수율 = $\frac{\text{재해건수}}{\text{연근로시간}} \times 1,000,000$

6) 강도율 = $\frac{\text{총근로손실일수}}{\text{연근로시간}} \times 1,000$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을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단, 본 연구에서는 4일 미만의 요양일수인 경우도 이에 포함하여 분석하였음.

해가 총 30건(53.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요양기간이 29일~90일 재해 건수는 총 21건(37.5%)인 것으로 확인됨. 요양기간
이 91일~180일로 중상을 입은 재해 건수는 총 3건(5.4%), 요양기간이 6개월 이
상인 경우는 2건(3.6%)로 나타났음.

- 2024년 국립학교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우 대다수가 요양기간이 90일 이하
(51건, 91.1%)로 비교적 경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요양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비교적 중상인 경우의 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표 Ⅱ-9> 재해정도(요양기간)별 산업재해 현황

직종	요양 일수	재해 형태	재해 요인	재해내용
청소	95	넘어짐	환경	건물 외부 계단을 내려가던 중 추운 겨울 날씨 및 계단 결빙으로 빙판에 미끄러져 무릎뼈 골절
청소	121	넘어짐	인적	건물 출입구 나가던 중 넘어져 손목골절
청소	154	넘어짐	기계	기계실 창문을 닫기 위해 사다리에 오르다 낙상
사무직	240	넘어짐	인적	출근 중 넘어져 양측 발목 인대 손상
시설	사망	기타	인적	급성심근경색 추정

- 중상재해 5건은 청소 직종에서 3건, 사무직(현업 외) 1건, 시설 직종 1건이었으
며,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사고를 제외하면 모두 넘어짐에 의한 사고로 재
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2. 선행연구 및 해외 대학 사례 검토

가. 학교 및 인접 분야의 안전보건 관련 선행연구

- 교육서비스업 중 각급 학교 분야의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은 국가 전체 산업 및 유사 업종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교육활동 중심의 업무 특성상 위험 수준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이 낮고, 안전보건관리체계 또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국립특수학교 등 단위학교의 경우 행정조직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안전·보건 관련 전문인력이 부재하며, 이는 학교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학교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뿐 아니라 공공기관, 공무원 근로자, 중소기업 등 유사 분야의 안전보건관리 실태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학교안전보건체계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⁸⁾

가) 연구 배경

- 이 연구는 2017년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 산안법 적용범위 판단지침」을 통해 학교 급식실을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고, 2020년 1월부터 조리·시설관리·경비 등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도 초기의 역할 혼선을 해소하고자 수행되었음. 이 연구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안전보건체계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음.

8) 박종식, 조성재, 오진욱, 조규준(2021). 학교안전보건체계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나) 연구 내용

○ 교육청 수준에서의 안전보건체제 실태

- (내용) 안전보건체제에 대한 인식, 관리자 선임 및 과업 범위, 실제 안전보건체제 형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실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관리 등
- (방법) 전문가자문, 설문조사 및 방문 면접조사

○ 각급 학교 수준에서의 안전보건체제 실태

- (내용) 학교별 관리감독자 선임여부 및 직급, 관리감독자의 역할 및 직무, 학교 내 존재하는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요인의 위험 정도,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 및 관리방식, 위험요인 노출 현업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정보 제공 정도, 위험성평가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진행 여부, 위험요인 관리 방안 및 필요한 지원 내용 등
- (방법) 설문조사 및 방문 면접조사

다) 주요 연구 결과

-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문조사 결과, 각급 학교에서는 산업안전보건체계, 산업안전보건교육, (현업종사자)건강검진, 안전보건표지 부착, 유해물질 정보제공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안전보건교육은 대체로 만족했으나 일부 근로자들은 학교 실정에 맞지 않는 교육내용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급식종사자의 경우 화상, 타박상, 골절 등이 빈번하였으며 시설관리자의 경우 타박상, 염좌, 전도, 유해물질 접촉 순으로 나타났음. 안전사고 후 비용처리 방식으로는 치료비용 개인 부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이 유로는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노출 정도는 급식종사자가 가장 높았고 이어 시설관리자 순이었으며 행정실장이 가장 노출이 낮았으며, 일반교사는 유해위험요인 노출 정도는 낮으나 정신적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 정도가 높았음. 업무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에 대해서는 현업종사자들이 가장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관련한 업무에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외부도

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이어 실제 안전보건체계 운영에 있어 현업종사자들의 참여 정도 및 발언 등의 기회는 비교적 잘 보장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현업종사자들의 응답 평균이 업무담당자 평균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음.

- 안전보건 업무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자들의 경우 인력 부족, 업무 시간 부족, 행정서류 작업의 어려움을 지적하였음. 급식종사자들 역시 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특히 학생 수 감소로 급식실 근무인원이 줄어들며 이로 인한 업무강도 증가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음. 시설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어 사고 원인 분석이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안전보건관리체계 면접조사 결과, 교육청에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학교마다 관리감독자가 지정되어 있으나, 각 학교에 맞는 안전보건계획 수립,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절차 및 주체별 업무 역할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 안전보건 실무자들은 현업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구체적 업무 역할 및 방법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였으며, 무엇보다 안전보건업무를 자신의 주요업무 외의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음.
-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학교 근로자의 안전보건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안전보건교육 내실화, 현업업무 종사자 인력 확충, 현업종사자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한 체계적 역할 분담 및 전문화, 교육청 수준의 안전보건 관리 지원체계 확대, 교사의 감정노동 등에 대한 정밀 평가 실시 등을 제언하였음.

2) 공공행정 분야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실태⁹⁾

가) 연구 배경

- 이 연구는 공공분야에서 수행되는 업무가 점차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유해·위험도가 높은 업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함. 최근에는 공공영역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비현업 종사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위험도가 높은 업무를 현업업무 범주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 반대로 ▲공무원의 신분·직무 및 공공행정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공행정 등 사업장에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공공행정 등 사업장의 산안법 적용 제외 규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공공행정 분야의 산업재해 현황 및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현업업무 범위 조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함. 또한 공공행정기관의 조직적·직무적 특성을 고려한 산안법 적용 방향을 제시하고, 기관 유형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나) 연구 내용

- 공공행정 등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기준과 쟁점 검토
 - (내용) 공공행정 등의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 제외의 취지 및 필요성을 확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분류 기준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 제외 대상으로서의 공공행정 등의 업무를 분석
 - (방법) 문헌 연구 및 법령 분석
- 공공행정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실태 및 관리현황 분석
 - (내용) 공공행정 등의 사업장 산업재해 현황, 안전보건 담당자 설문 등에서 나타난 사업장 유해요인 및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종사자 보호를 위한 방안 검토
 - (방법) 설문조사

9) 나민오, 송안미, 최서연, 권혁, 박수경, 서진두, 정정임(2024). 공공행정 분야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실태. 산업안전보건연구원-620.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관한 고시의 현업업무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 제시
-(방법) 설문조사 및 인터뷰 조사
- 기관별 유형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사점 제시
-(방법) 비교법 연구 등

다) 주요 연구 결과

- 특정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된 업무에 해당되는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함. 본청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으나 공공행정 등의 업무와 현저하게 근로 양태와 유해위험이 달라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적용할 필요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 현업업무로 지정하고,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관한 고시의 현업업무의 적정성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 예를 들어 농작업 대행, 수도 점검, 하천 단속 업무에 대한 현업업무 반영 검토가 필요함. 교육서비스업 각급 학교의 경우 특수교육실무사는 상시적 사고성 재해의 위험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 실태조사가 필요함.
- 기관 특성을 고려한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해야 함. 공공행정 영역에서는 기관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사업별로 유해 및 위험 정도가 다름. 또한 기관의 사업에 따라 조직 구성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기관 유형별로 고유한 조직과 사업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3) 학교현장 위험요인과 교육공무직 안전보건대책 강화 방안¹⁰⁾

가) 연구 배경

- 기존의 학교 현장 안전보건 대책은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교통사고, 자연재해, 식중독, 폭력범죄 등의 예방에 중점을 두어왔음. 그러나 최근에는 노동재해와 직업병 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교원과 교육공무직 노동자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 모두를 포괄하는 안전보건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이 연구는 초·중등학교 단계의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나) 연구 내용

- 교육공무직 일반 현황 및 산업재해 현황 분석
- 교육공무직 관련 안전보건 제도 검토
- 교육공무직 노동현장의 주요 위험요인 분석
- 학교현장의 안전보건대책 및 한계 분석
- 교육공무직 안전보건대책 강화 방안 수립

다) 주요 연구 결과

- 교육공무직 노동자 수는 2020년 기준 약 16만명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이 배경에는 교육과정의 확장 과정에서 교원들이 행정업무 증가를 겪게 되었고, 동시 다양한 직종의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비정규노동 형태로 증가한 것임. 결국 꾸준한 인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불안정화가 심화되며 장시간 과중노동, 직무 스트레스 증가와 같은 문제는 심화되고 있었음. 교육공무직의 산업재해 현황은 매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교육공무직에는 80여 개 이상의 다양한 직종이 포함되지만, 이를 크게 구분하면 학생을 직접 상대하며 지도·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과, 환경·시설관리 및 급식 등과 같은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나눌 수 있음. 전자

10) 김직수(2024). 학교현장 위험요인과 교육공무직 안전보건대책 강화 방안.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24-05호.

의 경우 감정노동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심리적 위험 요인에 노출되기 쉽고, 후자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육체적 부담으로 인한 물리적 위험에 취약함. 공식적으로 산업재해로 집계되는 사례는 주로 급식, 시설, 환경, 경비 등 현업직종에서 발생하며, 특히 급식 노동자는 각종 재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주의와 대응이 요구됨. 위험 요인별로는 기계적·화학적·물리적 요인과 더불어 온열·한랭 환경 등이 주요하게 지적되고 있음. 최근에는 서이초 사건 이후 강사 및 사무직군을 중심으로 감정노동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안전보건 제도 전반에서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함. 현재 다수의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현업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는 본래 다른 법률과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실제로는 행정 편의와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관행으로 굳어져 학교 현장에 자리 잡고 있음. 따라서 현업직 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함. 나아가 교육공무직으로 분류되지 않는 방과후 강사 등 프리랜서 노동자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안전보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위험성평가와 중대재해처벌 절차에 노동자의 참여를 강화해야 함. ALARP 기준(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도로 낮은 수준)은 ‘합리적 수준’의 불명확성과 노사관계에 따른 해석 차이로 한계를 가지며, 위험요인 누락·평가기준 모호성·비용 회피 등 운영상 문제도 지속되고 있음. 영국과 일본 사례는 제도적 강제력과 사회적 참여의 중요성을 보여줌.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노동자·학생·보호자 등 다양한 주체가 위험성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함.

4) 충북지역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안전사고 실태 및 인식¹¹⁾

가) 연구 배경

- 학교 급식 현장의 조리작업은 제한된 공간에서 주로 40~50대 여성 근로자들이 동시에 수행하며, 단순·반복적인 공정이 많고 단시간 내 대량 조리를 해야 하는 특징이 있음. 이 과정에서 고온다습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대형 조리기구 사용과 중량물 취급이 빈번해 조리종사원들은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재해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됨. 또한 학교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 조리 직종의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학교급식 현장의 안전사고 실태와 인식 수준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조리종사자의 안전 확보 및 근무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 내용

- 충북지역 학교급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리종사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조사 시행·분석
 - (설문 내용)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안전사고 실태,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학교급식 운영환경 평가, 안전교육 실태,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 (설문 방법) 충북지역 초·중·고등학교 조리종사원 194명에게 설문 실시 및 기초통계분석(비율차이분석, 평균차이분석 등)

다) 주요 연구 결과

- 조리종사원의 44.3%가 안전사고를 경험하였으며, 외부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6월~8월의 사고 발생율이 가장 높았음. 조리 작업과 청소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 안전사고 유형은 화상이 약 6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손목 및 팔의 통증, 미끄러짐 등이었음. 사고처리방법은 산재처리가 아닌 치료비 개인 부담이 가장 높았으며, 그 이유에 대해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사고 처리 방법을 모르거나 대체 인력이 없는 경우의 순으로 나타남.

11) 조현아, 이영은, 박은혜(2014). 충북지역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안전사고 실태 및 인식.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43(10), 1594-1606.

- 안전사고 발생 원인 대해 응답자의 41.2%가 과도한 업무량이라고 보았으며, 이어 안전의식 미흡,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 등이었음. 안전한 업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도 충분한 근무 인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쾌적한 작업환경 등으로 나타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안전교육의 체계화, 정기화가 46.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원인 분석, 비상 대책 개발 순으로 나타남. 물리적 작업환경 중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환기시설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았고, 이어 기계 및 기구의 현대화, 조리기기의 효율적 배치 순으로 응답하였음.
- 안전교육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 대부분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있었으며, 교육 시간은 연평균 5.1시간이었음. 주된 교육 방법으로는 강의식, 사례 발표, 시청각 교육 등이었으며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안전교육 효과 증진을 위한 주요 요인으로는 작업 내용에 맞는 교육인 것으로 나타남. 안전교육의 항목별 요구도를 살펴보면 산업재해 발생 시 보험 신청 방법,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이 연구에서는 학교급식조리종사원 배치기준의 합리화,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안전사고예방교육 강화,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하였음.

5) 사무직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실태와 효과성에 관한 연구¹²⁾

가) 연구 배경

○ 사무직 종사자는 산업현장의 근로자에 비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 등의 유해·위험 요인의 직접적 노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형적인 직업병의 발병, 급성으로 발생하는 치명적 장애와는 거리가 있지만 컴퓨터 사용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실내 공기질에 의한 건강 영향, 직무 스트레스, 감정노동 등 다양한 요인에 노출되어 있어 업무 관련 안전 및 보건 유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현재 사무직 종사자는 산안법 제29조(안전보건교육)의 정기 안전보건 교육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지 않는데, 이들 역시 업무 관련 안전과 보건 측면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연구에서는 사무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안전보건 교육의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사무직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함.

나) 연구 내용

- 사무직 종사자의 정기 안전보건 교육 실태 및 효과 인식에 대한 분석
 - (내용) 사무직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 실태, 안전보건 교육 운영과 관련한 주제 및 교육 방법, 안전보건 교육의 필요사항, 효과성 및 활성화 방안 등
 - (방법) 사무직 종사자 123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 조사 시행·분석
- 사무직 종사자의 정기 안전보건 교육 효과성 분석
 - (내용) 산업안전 보건교육이 산업재해 발생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계량적 분석
 - (방법) 편익 추정 방법(회귀분석)

다) 주요 연구 결과

- 안전보건 교육 실태 조사 결과, 일반 사무직 종사자의 92.8%, 현장 사무직 종사자의 97.5%가 정기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육은 주

12) 최서연, 나민오, 김영식, 정원일(2020). 사무직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실태와 효과성에 관한 연구. *안전문화연구*, 16, 79-89.

로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교육 내용은 주로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안전보건교육 효과 인식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 일반 사무직 종사자의 85.5%, 현장 사무직 종사자의 92.5%가 안전보건교육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어떤 부분에서 효과를 느끼는지 설문한 결과 근로자와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높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성 확보, 법령, 제도 등에 관한 안전보건관리 등으로 나타났음. 교육의 효과를 인식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형식적이고 일률적인 교육, 사업장의 현실이 반영되지 못하는 교육 운영 등이라고 느끼고 있었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외부 수탁 교육 지원 사업, 사업주와 담당자 교육 지원, 사업장에 활용 가능한 콘텐츠 지원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교육 정착을 위한 필요사항으로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안전보건교육 시간의 탄력적 운영, 정부 기관의 교육 확대 및 지원 순으로 나타났음.
- 사무직 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감소할 수 있는 효과성 비율을 적용하여 얻을 수 있는 산재예방의 편익을 추정한 결과, 제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무직 종사자의 효과성은 교육하지 않은 사업장보다 6.77%의 산재 감소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었으며 비제조업 사무직의 감소효과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6) 중소기업 산재예방을 위한 교육 등 개선 방안 연구¹³⁾

가) 연구 배경

-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산재예방사업 및 법제도·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정책 수립 및 집행, 시스템 개편 등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이 연구에서는 노·사·정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포럼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육성하기 위해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교육을 중심으로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나) 연구 내용

- 위험성평가 현장 작동성 향상 방안, 안전보건교육제도 개선 방안, 안전보건교육 현장 작동성 향상 방안, 중소기업 재해율 감소 대책 등
-(방법) 노·사·정 전문가를 중심으로 TF 팀을 구성하여 총 6차례 포럼 개최

다) 주요 연구 결과

- 위험성평가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 대상 교육 강화, 차별화된 교육 및 전담 컨설턴트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이 제시되었음. 다만, 직접 지원보다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을 통한 위탁지원 방식으로 안전보건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강조되었음. 위험성평가 미 실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제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음. 노동계는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경영계는 제재보다 사업장 여건을 고려한 지원 우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정부의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KRAS) 개선 필요성이 언급되었으며, 업종·규모별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개선이 요구되었음. 아울러, 위험성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 투자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 역시 검토할 만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음.

13) 백종배 장성록, 서용운, 강병열, 최희주, 서강훈, 박희운(2021). 중소기업 산재예방을 위한 교육 등 개선 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857.

○ 안전보건교육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먼저 교육 방식의 현대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즉 모바일 교육 등 디지털 기반 교육 도입이 논의되었으며, 이에 대해 경영계는 찬성 입장을 보이며 비대면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형태의 확충을 제안하였음. 반면 노동계는 모바일 교육이 도입될 경우 교육 책임이 사업주에서 노동자로 전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감정노동자 보호 및 심리 치유를 위한 교육 내용의 포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해 노·사·정 모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일용근로자 교육시간 조정에 관한 논의도 있었는데,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일용근로계약이 같은 주 내에 반복 체결되는 경우에는 재교육을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음. 아울러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령 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표준화된 교육 매뉴얼의 개발과 보급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제안되었음.

나. 해외 교육기관 산업재해 예방 정책 · 운영 사례 분석

1)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¹⁴⁾

가) UBC Safe Vancouver

○ 최근 대학 및 대규모 연구 시설에서는 전통적인 안전관리 방식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다양한 안전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대학의 경우 광범위한 캠퍼스 구역, 유해 · 위험요인이 있는 실험실 연구 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비상 상황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 직원 및 대학 내 연구원에게 새로운 안전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UBC Safe Vancouver’ 라는 공식 모바일 앱을 도입, 직원과 학생의 안전보건 관리 및 비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UBC Safe Vancouver 앱의 주요 기능은 <표 II-10>에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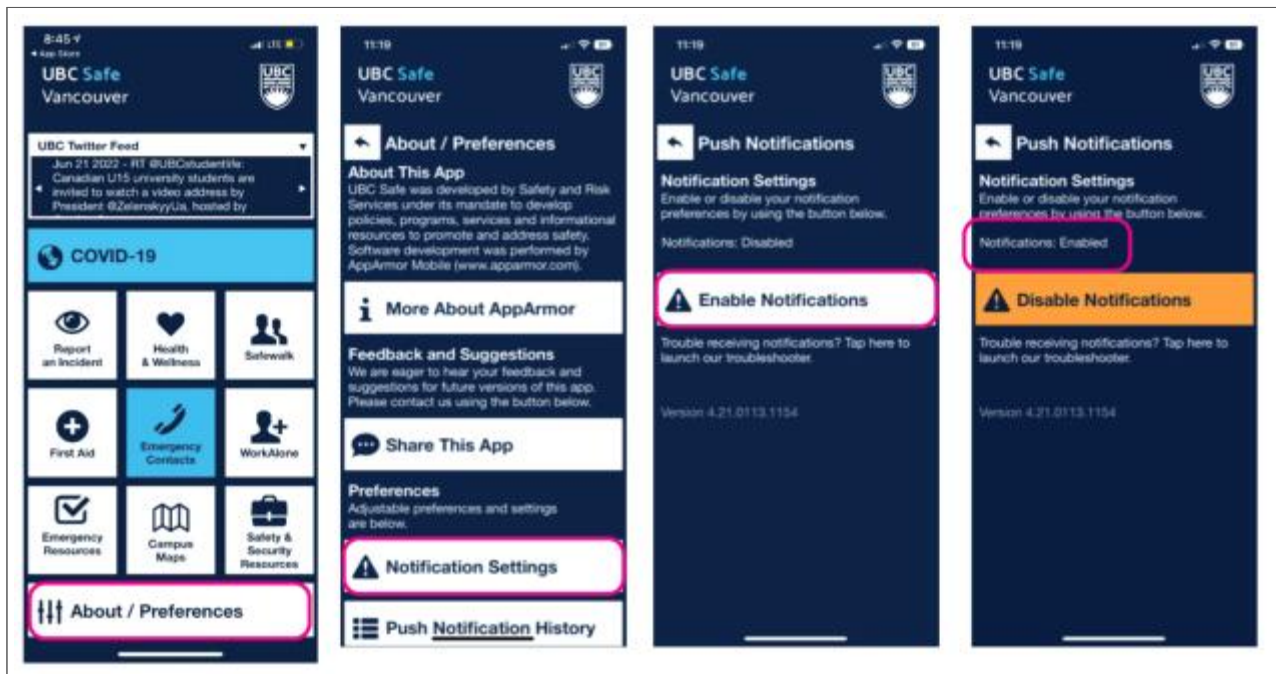
<표 II-10> ‘UBC Safe Vancouver’ 앱 주요 기능

기능	주요 내용	효과
긴급 알림	◦ 캠퍼스 전체 안전 문제 발생 시 즉각적 지침 및 정보 수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한 인명 피해 최소화
긴급 연락 및 지원	◦ 비상 사태 및 재해 발생 시 캠퍼스 보안 및 응급 처치 서비스에 즉시 연결	-안전사고 발생 시 접근 용이성을 높여 긴급 지원 서비스 이용시간 단축
안전 및 보안 보고	◦ 안전/보안 관련 문제를 캠퍼스 보안팀에 직접 보고할 수 있음	-캠퍼스에 존재하는 위험 요인을 즉시 보고하여 적시 대처 가능
안전 정보 및 자료	◦ 캠퍼스 안전 자원, 비상사태 절차, 범죄 지도 등 제공	-필요한 안전 정보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상시 안전 인식 제고
안심 귀가 지원	◦ 야간 및 취약 시간대 안전 귀가 서비스 요청 기능	-야간 근무자 및 연구원의 개인 안전 및 심리적 안정감 확보

○ UBC Safe Vancouver 앱은 캠퍼스 내에서 범죄나 각종 재난 · 산업재해 등 안전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푸시 알림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즉시 상황이 전

14)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홈페이지의 “안전 및 위험 서비스” <https://srs.ubc.ca/health-safety/>(2025.10.03. 인출)

파되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음으로 비상사태나 재해 발생 시 사용자의 긴급 위치 정보를 전송하고 신속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특히 야간이나 단독 근무 중인 교직원 및 근로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또한 캠퍼스 내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안전·보안 문제를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하면 보안팀과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위험 요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음. 이 앱은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음. 캠퍼스 안전 자원, 비상 대응 절차, 범죄 발생 지도 등을 제공하여 구성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안심 귀가 지원 서비스’ 기능을 통해 야간이나 취약 시간대에 동행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어 연구원 및 교직원의 귀가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음.



[그림 II-1] 'UBC Safe Vancouver' 앱

- UBC Safe Vancouver 앱은 학교 근로자뿐 아니라 모든 구성원을 위한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이지만, 직원의 산업재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함. 야간 근무 시 직원이 혼자 이동하지 않도록 심리적·물리적 안전망을 제공해 여성과 고령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인적·물리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위치 전송과 긴급 호출 기능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사고 유형별 매뉴얼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음. 근로자가 캠퍼스 안전 상황이나 산업안전보건 자료에 쉽게 접근해 안전 의식을 자연스럽게 내재화할 수 있으며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앱을 통해 즉시 보고하고 조치할 수 있는 양방향 시스템으로 직원의 자발적 안전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음. 이는 대학의 안전 문화 구축의 핵심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대학 내 산업재해를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직원 안전보건 교육

- UBC는 2023년부터 모든 교직원의 필수 교육 준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따라서 모든 직원은 WorkSafeBC 및 UBC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UBC는 WPL(UBC Workplace Learning,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WPL에서 제공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요 건강 및 안전 교육은 다음과 같음.

<표 II-11> UBC의 직원 건강 및 안전 교육

대상	교육
전 근로자 필수 교육	-신규 근로자 안전 교육
모든 관리자 및 감독자 필수 교육	-UBC 안전 감독
	-관리자 및 감독자를 위한 직장 내 정신 건강 지원
하이브리드 작업자	-하이브리드 작업을 위한 안전 교육
특정 작업장 환경을 위한 교육	-실험실 환경을 위한 교육
	-산업 현장 작업 환경을 위한 교육
	-사무실 환경을 위한 교육
특정 작업에 대한 교육	-직장 내 각 직무별 안전 교육

- UBC의 모든 근로자는 입사 시 신규 근로자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함. 신규 근로자 안전 교육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건강 및 안전 정책, 위험한 상황 보고,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건강 및 안전 프로그램/절차, 비상 대비, 비상 및 안전 연락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후 2부에는 감독자 또는 해당 구역의 위험에 대해 잘 아는 감독자가 지정한 사람과

함께 현장별 안전 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해야 함.

- 모든 관리자 및 감독자들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 감독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주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감독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관리자 및 감독자는 별도로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행동 수칙과 도구 등을 공유함으로써 팀의 정신 건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함.
- 하이브리드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도 제공되고 있음. 하이브리드 작업(Hybrid Work)이란 원격 근무(재택근무)와 현장 근무(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유연한 근무 방식임. 코로나 팬데믹 이후 UBC는 공식적으로 하이브리드 작업을 채택하였으며, 하이브리드 작업과 관련한 안전 교육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는 하이브리드 작업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과 대학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자원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음.
- 특정 작업장 환경에 대한 교육도 시행되고 있음. 눈여겨볼만한 점은 일반적으로 유해·위험 요인이 많다고 판단되는 실험실 및 산업 현장 환경뿐 아니라 사무실 환경에 대한 안전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임. 사무실 환경에 대한 교육은 주로 구성원이 업무공간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원격 근무 환경에서 인체 공학적 점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근골격계 부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2)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교(Philipps-Universität Marburg)¹⁵⁾

- 독일 마르부르크 필립스 대학은 학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및 건강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전략을 수립·운영하고 있음.

가)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인증(ASCA)

- 직장 내 최고 수준의 작업 안전 기준을 확보하고 대학 구성원을 위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ASCA(Arbeitsschutz-Controlling-Audit)의 외부 감사를 받았으며, 2024년 7월 24일 헤센 주에서 최초로 산업안전보건관리 시스템에 대한 ASCA 인증 마크를 획득했음. ASCA 인증은 마르부르크 대학의 산업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전국적 품질 기준을 충족하며, 국가 가이드라인(NL F 2002) 및 ILO-OSH 2001과 같은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함.
- 마르부르크 필립스 대학은 산업안전 전문가 및 각 업무 책임 관리자들을 지원하는 안전 담당자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구체적인 산업재해 예방 및 보호 조치를 전달 및 시행하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음. 이 조치는 컴퓨터 작업 공간의 인체공학적 설계부터 임신 중 특별 보호 조치, 유해 물질 취급, 대형 장비를 활용하는 실험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아울러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실험실 환기를 조절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부터 유해 폐기물의 적절한 수거·처리를 통해 물과 토양을 보호하는 것까지 다양한 활동을 이행하고 있음.

나) 산업안전과 환경보호의 책임 및 조직 체계

- 마르부르크 필립스 대학이 수립한 산업안전 및 환경보호는 안전한 근무 및 학습환경을 보장하고 환경적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산업안전법에 따른 예방 및 보호조치는 대학의 모든 부서에서 조사하고 결정·시행하며, 이는 관련 분야 뿐 아니라 교육 분야에도 적용되며 필요 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

15)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교 홈페이지의 “안전” <https://www.uni-marburg.de/de/universitaet/administration/sicherheit>(2025.11.01. 인출)

여야 함. 또한 산업안전법에 따라 각 부서, 연구 분야, 교육 분야에서 마련한 예방 및 보호조치는 위험성 평가의 형태로 문서화해야 함.

- 대학 내의 산업안전 관리 및 조치에 대한 총 책임은 총장 및 총장이 위임한 단위별 조직의 책임자가 가지고 있음. 대학 총장은 노동보호 규정과 산업안전 규정이 대학 내에서 법적으로 준수되는지에 대한 전체 책임을 가지며, 산업안전법에 따라 대학 내 운영 안전을 보장해야 함. 총장은 산업안전법 13조에 근거해 각 조직단위의 책임자에게 절차 중심 위험성 평가를 작성하고 갱신할 의무를 위임함. 책임자는 조직 내의 근로자, 작업환경 및 사용 장비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시행, 정기 점검을 지침에 따라 이행해야 함.
- 그러나 학내 단위별 조직 책임자가 산업안전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어렵고 학교 특성상 교체가 잦다는 점을 고려하여, 총장과 각 책임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중앙안전담당자와 각 단위별 안전담당자를 배치함. 중앙안전담당자는 대학의 전체 산업안전 이슈와 관련한 전문적 조언과 조정을 도우며, 단위별 안전담당자는 조직에서 산업안전과 환경보호 조치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다) 프로세스(절차) 중심의 위험성 평가

- 마르부르크 대학은 대학교의 안전 관리에 있어 프로세스 중심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프로세스(절차) 중심 위험성 평가는 단순히 고정된 작업 환경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의 변화와 활동의 흐름에 따라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갱신하는 접근 방식임. 즉, 작업 도구나 환경 그 자체보다 실제 수행되는 작업 공정을 중심으로 위험 요소를 식별하며, 활동이나 절차에 변화가 생길 경우 취해진 보호 조치와 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함.
- 아울러 임산부/수유 중인 직원에 대한 개별 평가 및 심리적 부담에 대한 평가 등 특수한 상황까지 고려하여 위험을 평가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은 위험 요인이 변할 때마다 평가를 즉시 수정하여 안전관리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매우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음. 마르부르크 대학교는

주요 작업별로 프로세스 중심 위험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문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음.

<표 II-12>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교의 프로세스 중심 위험성 평가 양식(예시)

질문	보호조치	이행	보호조치 점검
1. 위험 물질 등록: 모든 위험 물질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목록이 정기적으로 갱신되고 관련 안전 데이터 시트가 모든 직원에게 접근 가능한지 어떤 방식으로 보장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이행한 보호조치와 점검 후 필요한 새로운 조치 포함	누가, 언제 까지?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새로운 보호 조치 결정 날짜 기재
2. 식별: 모든 위험 물질 및 혼합물이 2017년부터 시행된 GHS 및 CLP 규정에 따른 위험 표지로 식별되어 있는지 어떻게 보장하십니까?			
3. 가연성 위험 물질 취급 시: 3.1. 화재로부터 가장 안전한 보관 방법을 어떻게 보장하십니까? 3.2. 실험 중 30/100 규정에 따른 필요한 기술적 환기가 올바르게 작용하도록 어떻게 보장하십니까?			

...(후략)...

○ 이 문서는 위험물질을 사용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점검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프로세스 중심 위험성평가를 자연스럽게 수행하도록 지원함. 각 질문은 위험물 등록, 표시, 보관, 환기, 폐기 등 업무 과정의 핵심 단계에 맞춰 제시되며 사용자는 각 단계에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이행 책임자와 일정, 점검 결과를 연속적으로 문서화함. 이렇게 작성된 내용은 단순한 문서에 그치지 않고 업무 흐름에 따라 위험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구조를 만듦. 이를 통해 변화된 상황이나 새로운 작업 조건에도 맞게 위험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할 수 있음.

○ 또한 프로세스 중심 위험성평가는 위험 강도가 높은 작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활동(강의, 실습, 현장견학 등) 일체에 해당하여, 국내 위험성평가와 비교할 때 보다 포괄적이고 엄격하다고 볼 수 있음.

라)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마르부르크 대학은 근로자에 대한 물리적인 위험 요소에 대한 파악·관리뿐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에 대한 위험을 단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국내 대학의 교사 및 강사 등이 겪는 감정노동 문제를 다루는 데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함.
-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업무 강도, 불리한 업무 환경, 근무 시간, 감정적 요구 또는 활동 분야에 대한 지원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마르부르크 대학교는 잠재적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가능한 해결책을 협력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목표를 기반으로 부서의 모든 직원이 5단계에 걸친 위험 평가를 진행함.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험성 평가의 단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II-13>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교의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험성 평가

단계	주요 내용
1. 정보 제공	-책임자는 부서 구성원에게 위험성 평가 실시 사실 안내 후 체크리스트 배포
2. 부담요인 파악	-심리적 부담 요인은 디지털 방식으로 조사하며, 책임자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해당 체크리스트에 응답 -조사 결과는 2주 이내에 부서 책임자에게 전달
3. 팀에서 해결책 찾기	-책임자는 체크리스트에서 '대체로 그렇지 않다'로 반복 응답된 항목이 있을 경우 팀 회의를 개최하여 원인 및 가능한 해결책과 필요한 여건에 대해 논의 -필요한 경우 안전담당자 등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음
4. 조치 계획과 실행	-제안된 해결책 중 조치 시행 여부는 책임자가 검토하고, 이를 팀과 공유 -결정된 조치 사항은 문서화
5. 효과성 점검	-조치 기간이 지나면 실행 조치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심리적 부담이 감소하였는지 점검 -작업조건이나 팀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심리적 부담 신호가 나타나는 경우 재분석 실시

3) 미국 시카고 대학교(The University of Chicago)¹⁶⁾

- 미국 시카고 대학교는 연구 안전국(ORS)과 환경 및 보건 안전 부서(EHS)가 공동으로 지원·운영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인 EHSA(Environmental Health & Safety Assistant, 환경 보건 및 안전 지원)를 구축하고 있음. 이 시스템은 1999년 EHS에 의해 마련되었고, 2017년 연구 안전국이 신설되며 업그레이드되었음. EHSA는 안전교육/학습관리 시스템, 사고 및 재해조사, 검사, 화학 물질 재고 목록, 허가증, 안전 장비 관리, 소방 훈련, 작업자 등록, 실험실 안내판, 기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각종 안내 자료 등 대학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산업재해 예방,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 자료를 구축·관리하고 있음. 이를 통해 환경, 보건, 안전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선제적 위험 예측 및 대응을 통해 대학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보건 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음.

가) EHSA 교육 모듈

- EHSA 교육 모듈의 핵심은 직무 유형별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을 제공하는 것임. EHSA는 직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손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관련한 온라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음. 직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고, 시스템에서는 제출된 체크리스트 정보를 바탕으로 직무 관련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반드시 수강해야 할 안전 교육 수업 목록을 자동으로 제공함. 직원들은 이에 따라 직무 위험·유해 요인 별로 개별화된 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음.

<표 II-14> EHSA 안전 교육 필수 이수 식별 체크리스트(예시)

1. 귀하는 비(非)사무직 분야에 종사하는 교직원(교수, 교직원, OAA 등)이십니까? (예: 시설 관리, 경찰, 시설 관리자, 창고/재고 관리, 간호사, 건설 프로젝트 관리자, 예술/연극 무대 디자인 등)	○ Yes	○ No
2. 귀하는 1990년 이전에 건설된 건물의 기계실이나 저장 구역에서 증기 터널에 출입하거나 유지보수/청소 업무를 수행합니까?	○ Yes	○ No

16) 미국 시카고 대학교 홈페이지의 “환경 보건 및 안전” <https://safety.uchicago.edu/> (2025.10.05. 인출)

3. 귀하의 직무가 일상적으로 과도한 (하루 업무 시간의 50% 초과) 또는 무거운 (30파운드 초과) 물건 들기/내리기 작업을 요구합니까?	☐ Yes	☐ No
4. 귀하는 형광등 램프나 안정기를 교체하거나, 형광등 램프, 안정기 또는 배터리의 보관/폐기를 관리합니까?	☐ Yes	☐ No
5. 귀하의 업무가 인체 혈액, 체액, 기타 잠재적 감염 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거나, 관련 업무를 감독해야 합니까? (예: 학교 간호사, 운동 트레이너, Lab School 교사, 경찰관, 집수정(sup pits)을 관리하는 건물 엔지니어)	☐ Yes	☐ No
6. 귀하는 밀폐 공간(예: 맨홀, 터널, 밀폐 구역)을 관리하거나, 출입하거나, 그 안에서 작업합니까?	☐ Yes	☐ No
7. 귀하는 유해 물질 보안과 관련된 필수 인력으로 지정되었습니까? (예: 실험실 건물의 시설 관리자, 창고 담당자 또는 경찰관)	☐ Yes	☐ No
8. 귀하는 전기 설비 근처 또는 그 주변에서 최소한의 작업이라도 수행합니까?	☐ Yes	☐ No
9. 귀하는 노출된 활선(energized parts, 전기가 통하는 부분) 위 또는 근처에서 작업합니까?	☐ Yes	☐ No
10. 귀하는 기본적인 사무실 인체공학(Office Ergonomics)에 대한 개요 교육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 Yes	☐ No
11. 귀하의 직무는 지면/바닥으로부터 4피트(약 1.2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비 또는 환경에서의 작업 또는 감독을 요구합니까? (예: 지붕 출입, 기계 장비 오르기, 무대 리깅(rigging) 사용 등은 추락 방지 조치가 필요한 일반적인 작업입니다.)	☐ Yes	☐ No
12. 귀하는 지게차 또는 전동 산업용 트럭(예: 전동 팔레트 잭)을 운전합니까?	☐ Yes	☐ No
13. 귀하는 전기 또는 가스 구동 장비를 작동합니까?	☐ Yes	☐ No
14. 귀하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을 하거나 그 근처에서 작업합니까? (예: 유지보수나 청소 업무 수행, 부두나 시설에서 화학물질 수령, 예술/연극/제작 공간과 같은 실험실 공간, 대형 기관 세탁 시설 또는 작업장에서 작업)	☐ Yes	☐ No
15. 귀하는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수행합니까?	☐ Yes	☐ No
16. 귀하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에너지(예: 전기, 기계, 공압, 유압)를 방출할 수 있는 장비를 다루면서 작업합니까?	☐ Yes	☐ No
17. 귀하는 잠재적 감염성 폐기물(빨간색 봉투 또는 날카로운 물질 폐기물)을 생성, 포장, 취급 또는 운송합니까?	☐ Yes	☐ No
18. 귀하는 Knapp Center for Biomedical Discovery 또는 Carlson Animal Resource Center에서 대형 Stericycle 360 카트를 사용하여 잠재적 감염성 폐기물을 생성, 포장, 취급 또는 운송합니까?	☐ Yes	☐ No

19. 귀하는 기계 공장(machine shop)이나 제작 공간(maker space)에서 근무하거나 목재 또는 금속 가공 기계를 다루는 작업을 합니까?	☐ Yes	☐ No
20. 귀하는 개인 보호 장비(몸, 얼굴, 눈, 청력, 발 또는 손 보호 장비)를 착용합니까?	☐ Yes	☐ No
21. 귀하의 직무는 호흡 보호구(마스크 또는 방독면 등) 사용을 의무화합니까?	☐ Yes	☐ No
22. 귀하는 시카고 대학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건물의 건설 또는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감독합니까?	☐ Yes	☐ No
23. 귀하는 오일 및 관련 장비(예: 유압식 엘리베이터 및 비상 발전기 연료 탱크)의 저장/취급 또는 운전 및 유지보수에 관여합니까?	☐ Yes	☐ No

○ 직무 유형별 필수 안전교육 목록의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II-15> EHSA 교육 모듈의 직무별 필수 안전 교육 목록(예시)

교육과정	필수 이수 횟수	온라인 수강	강의 빈도	추가 정보	직무 분류
석면 인식	한번	N	월별	직무상 석면 함유 물질에 노출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은 재직 중 1회 석면 인식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건물 유지보수 직원 - 주거 서비스, 목수, 목수 - 주거 서비스, 수위/관리인, 수위/관리인 - 주거 서비스, 장식가 또는 페인트공, 전기 기술자, 엔지니어, 시설 관리자, 프로젝트 관리자 - 건설 시설, 루퍼, 판금 노동자, 증기 공장 또는 터널 노동자

교육과정	필수 이수 횟수	온라인 수강	강의 빈도	추가 정보	직무 분류
허리 안전	한번	Y	월별	직무상 과도하거나 무거운 물품을 들어올리는 작업이 포함된 직원	운동 보조원, 건물 유지보수 직원 - 주거 서비스, 목수, 목수 - 주거 서비스, 수위/관리인, 수위/관리인 - 주거 서비스, 장식가 또는 페인트공, 부두 작업자, 전기 기술자, 엔지니어, 환경 관리인, 재고 담당 직원, 자물쇠 수리공, 기계공, 루퍼, 판금 노동자, 증기 공장 또는 터널 노동자, 트럭 운전사
조경 안전	한번	N	필요 시	전기 또는 가스 구동 장비를 운전하는 직원. 일정을 잡으려면 환경 보건 및 안전 부서(safety@uchicago.ed u)에 문의하십시오.	건물 유지보수 직원 - 주거 서비스, 수위/관리인, 수위/관리인 - 주거 서비스, 환경 관리인
기계 작업장 안전	한번	Y	월별	기계를 작동하거나 기계 작업장(Machine Shops) 내에서 작업할 직원.	교수진, 연구원, 일반 직원

○ ESHA는 직원들의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 서비스는 직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필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대학 내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ESHA 교육 모듈은 위험 커뮤니케이션, 개인보호장비, 잠재적으로 감염성이 있는 폐기물, 허리 안전, 시설 관리자 및 감독자를 위한 안전 교육 등 대학 내 다양한 직무 유형과 위험 요소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교육 콘텐츠를 구비하고 있음. 온라인 안전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모든 직원은 퀴즈 등을 통해 해당 교육과 관련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합격 기준은 70%임.

- 아울러 직원들의 효과적 학습을 위해 개인화된 교육 이수 환경을 제공함. 직무 유형에 따라 직원에게 할당된 필수 이수 과목은 교육 목록의 맨 위로 자동으로 필터링되어 제시됨. 이를 통해 직원들은 자신이 반드시 수강해야 할 교육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수할 수 있음. 필수과목 외에도, 직원들은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원하는 교육을 자율적으로 추가 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온라인 안전보건 교육 시스템은 대학 직원들의 안전보건 역량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고, 유연하면서도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3. 국립학교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면담 조사 결과

가. 개요

- 본 연구에서는 국립학교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음. 본 면담은 단순한 제도적 현황 파악을 넘어 실제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 유형과 원인, 사고 대응 과정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예방대책의 한계 및 개선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음.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다각도로 이해하고 현장의 경험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음. 본 면담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표 II-16> 국립학교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면담 조사 대상자

연번	일자	방식	소속기관	직위	담당업무
1	2025. 08. 12.	대면	A시 교육청	A주무관	◦ 산업안전보건 업무
2	2025. 09. 29.	대면	B국립대학	B주무관	◦ 산업안전보건 업무

- 면담은 국립대학 및 유관기관인 시도교육청에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와 총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음. 면담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산업재해 현황 파악

- 학교(또는 관내 학교)의 산업재해 현황
- (산업재해 발생율이 증가한 유형 관련) 산업재해 발생율이 증가한 원인 분석, 추가 조치 및 대책 마련 등
- 다발 재해 유형에 대한 재해 감소 사례 등

2. 산업재해 방지 대책

- 학교(관내 학교)에서 산재 예방에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되는 사례
- 타 기관이나 시도 등으로부터 벤치마킹한 산재 예방 활동 및 제도
-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 및 정책적 지원 사항 등

3. 기타 학교 산업안전보건 관련 개선 방안

나. 면담 결과

1) 산업재해 현황

- A시 교육청 및 B대학 모두 전년도(2023년) 대비 산업재해 발생율이 증가하였음. 이에 대해 B주무관은 재해율 증가와 관련해 근로자 인식 변화 및 사회 제도적 변화의 영향을 언급하였음. 과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기간제 교사 등이 ‘산재를 신청하면 다음 계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로 경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었음. 또한, 산재로 인한 휴업 시 급여를 받지 못하는 현실적 부담도 이러한 경향을 강화시켰음. 그러나 최근에는 산재 신청이 근로계약이나 고용 유지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추세로 전환되었음. 이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건수의 증가는 실제 재해의 증가일수도 있지만, 인식 개선과 제도 신뢰성 향상에 따른 보고 활성화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음.
- 직종 및 재해형태별 다발 재해요인 현황을 살펴보면, A시 교육청 관내 학교와 B국립대학 및 부설학교의 산업재해는 공통적으로 현업업무에서 주로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업의 세부 직종별 산업재해 현황에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었음. B국립대학 및 부설학교는 총 산업재해 발생 건수의 절반이 청소 직종에서 발생한 반면, A시 교육청 관내 학교의 경우 2024년 산업재해의 약 2/3가 조리 직종에서 발생하였음. 그러나 이는 1절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전체 근로자 구성비(직종 분포)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학교의 경우 건설 현장이나 공장 등 다른 사업장에 비해 물리적·환경적 위험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대부분 경미한 수준의 산업재해가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었음. 재해형태를 살펴보면 낙상·미끄러짐 등 넘어짐과 관련한 사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조리 직종의 경우 업무 특성상 이상온도(고온·저온) 접촉, 베임 등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자의 연령과 산업재해 발생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B대학의 경우 전체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많지 않아 연령대별 뚜렷한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려웠음. 다만, 면담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높을수록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상의 정도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반면 A시 교육청의 A주무관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증가한다는 일정한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근무 경력과 재해 발생 간에 뚜렷한 경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저연차 근로자는 업무 미숙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고연차 근로자는 업무 숙련도에 대한 과신과 안전수칙 소홀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음.
- 한편 B주무관은 산업재해 현황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언급하였음. 산업재해 현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가 인정된 건수를 기준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공무원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음. 이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별도의 재해보상을 받기 때문임. 산업재해 집계에 포함되는 현업의 근로자는 주로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등 비정규 교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실제로 2024년 대학 시간강사가 교탁에 걸려 넘어지는 등 이들에 대한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2) 산업재해 방지 대책

- B국립대학의 산업안전보건 기본방향은 전 직원의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 제로’를 실현하는 것에

있음. 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산업재해 예방의 체계적 관리,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고도화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다만 B주무관은 소속 대학의 산업재해 방지 대책에 대해 안전교육 강화, 유해위험 방지활동 추진 등에 있어 타대학과 특별히 차별화된 점은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는 해당 대학에서 중대재해나 대규모 산업재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현실적 상황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본부 차원에서 수립한 안전보건 정책이 단과대학이나 부설기관 등 하위 조직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문제로 언급되었음. 이에 대해 B주무관은 정책의 완성도 또한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 구성원이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참여가 안전관리의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하였음.

○ A시 교육청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강화, ▲학교 유형 및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운영, ▲학교의 안전보건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실무 지원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수립·추진하고 있음. A주무관은 특히 학교 현장의 실제 근무 환경과 직무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따라 관련 교육 자료와 실무 매뉴얼의 현장 확산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음. 다만 학교 현업 직종의 업무 특성에 적합한 교육자료(예: 온라인 강의, 실습형 콘텐츠 등)가 부족하여 실제 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였음.

○ 또한, 관내 학교에서 조리 직종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현행 제도상 조리실무사에게 안전교육을 정기적·반복적으로 이수하도록 강제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영양교사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 수행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소극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이는 조리실무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 책임이 법적으로 학교장에게 부여되어 있음에도, 실무상 해당 업무가 영양교사의 급식관리 업무와 혼재되어

있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B주무관은 고령 근로자와 관련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에 대한 예방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제1항 제7호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항목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하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사업주의 구체적인 보건조치 의무가 마련되었음. B주무관은 특히 고령 근로자는 온열 및 한랭 환경에 신체적으로 취약하여 작은 부주의에도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법개정의 취지를 현업 근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관련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3) 기타 학교 산업안전보건 관련 제도적 개선 방안

- 면담의 참여자 모두 학교의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재해 예방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였음. 이들은 체계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성원 모두가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특히 산업재해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관심이 집중되고 대책이 마련되는 후행적 대응 방식이 여전히 일반적이는데, 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평상시부터 관리체계가 일상적으로 작동하고,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는 선제적 대응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음.
- 관련하여 본부(교육청)와 단위학교(단과대학·부설학교) 모두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할 인력의 확충 및 담당자에 대한 전문적 역량 강화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특히 사고 발생 시 안전업무 담당자는 본연의 업무 외에도 각종 대응 업무를 함께 수행해야 하므로 업무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따라 안전조직 구성 시 비상상황 대응을 고려한 인력 확보 및 역할 분담의 명확화가 필요하며, 대규모 산업재해 등 돌발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단위학교의 경우 본부(교육청)에 비해 전문적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상황이 더욱 열악함.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직원이 관련 업무를 병행하는 사례가 많아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단위학교 산업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실무 중심의 내실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즉시 지원할 수 있는 보조 인력 및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음.

4. 국립학교 산업재해 다발유형 예방대책

- 이 절에서는 최근 4년 간 국립학교 산업재해 유형별 통계분석 결과, 국내외 선행연구 및 사례 검토, 국립대학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자와의 심층 면담 조사를 토대로 국립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제안하였음.

1) 학교에서의 청소 및 조리 직종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

- 2021년~2024년 모두 현업업무 중 청소 직종에서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 안팎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매우 높았음(2021년 51.1%, 2022년 40.4%, 2023년 55.6%, 2024년 46.4%). 청소 업무는 반복 동작과 미끄러움, 날카로운 물체 접촉, 무거운 물품 취급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청소 업무와 관련된 주요 사고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맞는 관리·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조리 직종은 절대적 사고 건수는 청소 직종보다 적지만 전체 근로자 수를 고려한 재해율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음(2024년 조리 직종 재해율 1.36%, 청소 직종 재해율 1.06%). 조리 업무는 이상온도 접촉, 미끄러운 바닥, 급박한 작업 속도 등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중대재해로 이어질 위험이 큼. 따라서 조리 환경에 적합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됨.
- 관련하여 국립대학 및 시도교육청 산업재해 담당자와의 면담 결과, 학교 현업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교육과정 및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학교는 일반적으로 타 사업장에 비해 물리적 위험요인이 낮다고 평가되지만 청소, 조리 등 현업 직종에서는 여전히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면담 결과 학교 현장에서는 각 직종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 교육자료가 부족하고 정기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조리 직종의 경우 넘어짐, 화상, 베임 등 이상온도 접촉과 관련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교육내용이 일반적인 안전수칙 수준에 머물러 현장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는 학교 조리종사원이 생각하는 안전교육 효과 향상을 위한 주요 요소로 ‘작업 내용에 맞는 교육’인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조현아, 이영은, 박은혜, 2014)와 일치하는 결과임.

- 따라서 **학교 내 작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곳에 대해 직무 특화형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현장 중심의 실습형 교육 확대**가 필요하며, 나아가 관련 인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구체적 전략으로는 직종별 업무 공정을 기반으로 교육 콘텐츠를 설계하는 방식을 들 수 있음. 작업이 이루어지는 흐름을 그대로 교육의 구조로 삼아 현장과 맞닿은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접근임. 예컨대 조리 직종의 경우 식재 검수-전처리-조리-배식-정리·세척 공정별 위험 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보호구 착용 등 사전 예방 활동이나 사고 발생 시 대처법 등의 순으로 자료를 구성할 수 있음. 청소 직종은 화장실, 복도·계단, 교실, 야외 등 장소별로 위험요인이 다르므로 이를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재해 예방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예) 계단: 미끄러움, 추락 위험 / 화장실: 미끄러움, 약품사용 및 환기 / 야외: 중량물 취급 및 기후 요인 등)

- **학교에서 발생한 실제 사고사례를 기반으로 교육 모듈을 구성**하는 방안도 학교 현장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임. 청소와 조리 업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를 실제 사례로 제시하고, 사례 제시 후 ①왜 사고가 발생했는지, ②무엇을 놓쳤는지, ③어떤 방식으로 행동했어야 하는지를 단계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재해예방 행동기준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도록 하는 방식임. 이러한 방안과 관련해 국립학교에의 산업재해 예방대책 우수사례를 수집·발굴하여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음.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안전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학생보건, 산업안전, 학생안전 등 유형별로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있음. 학교안전우수사례집에서 소개하고 있는 산업안전 영역의 우수사례 예시는 다음과 같음(서울시교육청, 2025).

[개선 전]	[개선 후]
	
<p>급식실 콘센트에 방수커버를 부착하지 않아 화재 및 감전의 위험이 있음</p>	<p>급식실 콘센트에 방수커버를 설치하였음</p>

[그림 Ⅱ-2] 서울 연서중학교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 이 외에도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25년 상반기 아차사고 개선 우수사례집」 등을 배포하여 관내 학교 근로자들에게 사례를 공유·확산하여 안전인식 향상을 유도하고 있음(울산광역시교육청, 2025). 우수사례는 이미 특정 학교에서 효과가 입증된 방식이므로 산업재해 예방 조치와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기준을 간명하게 제시해 준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일반적인 안전교육에 비해 실제 학교에서 발생한 위험과 해결방식을 반영하므로 교육의 실행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 아울러 사례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태도가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고, 안전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동기 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아울러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고려해보아야 함. 업무 과중은 근로자의 피로 누적, 주의력 저하, 근골격계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최근 언론 보도에서도 학교 급식실의 경우 고강도 노동과 낮은 임금수준으로 만성적인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근로자에게 업무가 집중되고 피로가 누적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부산MBC뉴스, 2025. 11. 05).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결국 산업재해 발생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현업 직종의 안전보건대책 수립 시 인력·업무 배분 문제를 함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음.

2) (비정규직) 현업 외 직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

- 국립학교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있어 주목할만한 점은 현업 외 직종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비율임. 현업 외 직종은 주로 사무직으로 학교에서는 교원, 강사, 행정직 등이 포함되며, 현업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근무환경으로 분류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립학교에서 산업재해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2023년 5건(9.3%)→2024년 11건(19.6%)).
- 이는 산업재해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환경과 조직 운영 전반에 걸친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줌. 학교 시설의 노후화나 각종 행사·행정지원 등과 같은 비정형 업무 증가, 업무 과중으로 인한 피로 누적, 교권 침해와 민원 부담 등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기타 제도적 요인 등은 모두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이러한 점은 현업 외 직종의 산업재해 발생을 증가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보다 정교한 원인 분석이 필요함.
- 현업 외 직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와 제외 규정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할 수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교육서비스업 중 각급 학교’에 대해 제2장 제1절(안전보건관리체제)·제2절(안전보건관리규정)·제3장(안전보건교육)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¹⁷⁾.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이 낮다고 분류되는 학교의 경우 안전보건교육이 형식적이거나 느슨하게 운영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대학 시간강사 등 비정규직 현업 외 근로자는 교육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실제 재해 통계에서도 이들 집단의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 담당자와의 면담 결과에서도 시간강사가 교탁에 올라서다 넘어지는 등 경미하지만 반복적인 사고 사례가 보고되었음. 따라서 이들은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집단으로 볼 수 있으며, 업무환경 내 잠재적 유해요인 개선과 함께 실질적 안전보건

17) 단, 현업업무 종사자는 법 적용 제외 없이 산안법을 모두 적용함.

교육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 인식 제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학교 시간강사 등 비정규직 교원은 비상근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집체교육 등의 방식으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함. 따라서 미국 시카고 대학교 등 해외 대학 사례를 참고하여, 각 직무와 업무 장소에 적합한 안전교육 내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기반 온라인 안전교육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온라인 교육은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비상근직 교원이 편리하게 접속하여 원하는 시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어 교육의 실용성을 담보할 수 있음. 다만 온라인 교육은 학습 유지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 중 퀴즈, 간단한 과제 등을 포함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확보하는 장치 마련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또한 비정규직 교원의 경우 학교 시설의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별 주요 위험요인, 사고 사례, 안전수칙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안전관리포털, 안전 앱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근무 장소 및 업종에 따른 위험요인이나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사전에 숙지할 수 있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 이러한 체계는 상근 교원과 외부 강사 모두가 동일한 수준의 안전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전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3) 반복 발생하는 ‘넘어짐’ 사고에 대한 구조적 개선 방안 마련

- 최근 4년간 국립학교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발생한 재해 형태는 ‘넘어짐’인 것으로 나타났음(2021년 57.8%, 2022년 52.6%, 2023년 64.8%, 2024년 57.1%). 넘어짐 사고는 모든 직종에서 고르게 발생하였으며, 특정 발생요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근무 환경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음. 이는 근로자의 단순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작업환경의 구조적 문제, 시설 노후화, 안전관리 미흡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따라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넘어짐 사고의 근본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환경개선·안전교육·관리체계 강화 등의 다각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 시설·작업 환경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면밀한 점검·개선, 직종별 맞춤형 넘어짐 예방교육 등을 통한 인식 개선, 기후 변화로 인한 넘어짐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함.

○ 먼저 학교시설 및 작업 환경의 ‘넘어짐’ 관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면밀하고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함. 위험성 평가 등 위험요인 파악에 있어 절차적 수행에만 머무르지 말고,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넘어짐 사고와 관련한 위험 요인을 기존 사례 등을 충실히 수집하고 이를 반영해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함. 예를 들어 노후 바닥의 균열, 들뜸, 미세 요철 등을 면밀하게 살펴 바닥 재질을 개선하고, 조도가 낮은 공간의 조명 개선 등 어두운 상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명 환경을 개선해야 함. 넘어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계단에 대한 안전장치도 철저한 보강이 필요함. 미끄럼방지 패드 부착, 계단 단차 등 구조적 위험 요인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직종별 맞춤형 넘어짐 예방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 인식을 높이는 것은 인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넘어짐 사고를 줄이는 데 필수적이라 볼 수 있음. 학교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인적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험성 평가와 시설·환경 개선 못지않게 근로자 스스로의 위험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이 중요함. 특히 넘어짐 사고는 조리·청소 등 현업 직종뿐 아니라 교원·행정직 등 현업 외 직종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직종별로 넘어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방안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음.

○ 기후 변화로 인한 ‘넘어짐’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함. 최근 기후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기상 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졌고, 폭우·폭설과 같은 극단적 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기후 조건은 바닥을 빠르게 미끄러운 상태로 만들어 넘어짐 사고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따라서 외부 기후 요인에 따른 학교 환경

의 주기적이고 상황별 맞춤형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예컨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출입구와 야외 계단에 충분한 양의 염화칼슘을 상시 비치하고, 필요 시 즉시 살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또한 외부 계단·출입구 등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구역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를 추가로 설치하여 바닥 상태가 급변하더라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우천 시에는 빗물로 인한 미끄럼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구에 빗물 트레이를 충분히 확보하고, 실내로 유입되는 물기를 줄일 수 있도록 출입구 주변 바닥 청소 및 건조 관리를 강화해야 함. 이와 같은 조치는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넘어짐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필수적이며,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방 전략으로 볼 수 있음.

4) 인적·환경적 요인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

- 국립학교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재해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한 산업재해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2023년 인적 요인 58.5%, 환경적 요인 37.7%, 2024년 인적 요인 41.1%, 환경적 요인 50.0%). 즉 기계·장비의 안전성 미확보, 설비 결함 등의 문제보다는 작업자의 행동 특성, 안전수칙 미이행, 작업환경의 미흡한 관리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근로자의 행동 개선과 작업환경 관리 중심의 예방대책 강화가 필요함.

가) 인적 요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대책

- 인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안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평소에 위험요인과 예방 대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내실화하여 참여형 학습 방식을 도입하고, 연령과 경력에 맞춘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교육의 효과성을 높여야 함.** 아울러 업무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거나 고강도 작업이 지속되는 **현업 직종의 특성을 고려해, 작업량 조절과 근무체계 개선 등을 통해 근로자의 피로 누적·주의력 저하·집중력 감소와 같은 인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참여형 교육방식을 도입하고, 연령과 경력에 맞춘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참여형 교육방식은 단순히 강의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근로자가 교육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위험요인을 인지·해결해보는 형태의 교육을 의미함. 박경옥(2017), Burke et al.(2006)의 연구에서도 사례 중심 강의, 실습 교육, 현장 시찰·견학 등 참여도가 높은 교육 방식이 안전교육 효과를 크게 높인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으며, 이는 학교 현장에도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공함. 학교에서는 이러한 참여형 교육 접근법을 활용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작업하는 공간의 위험요인을 직접 식별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스스로 도출해보도록 하는 방식의 교육을 운영해볼 수 있음. 예를 들어 구성원이 교내 공간의 사진이나 실제 작업 환경을 보며 미끄러짐, 단차, 조도 부족과 같은 위험요인을 찾아보는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이러한 참여형 교육을 통해 근로자는 일상적인 작업 속에서 잠재된 위험요인을 즉시 판단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인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또한 근로자의 연령 및 경력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 제공이 필요함. 국립대학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와의 면담 결과 근로자의 연령이나 근무경력은 산업재해 발생 요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면담에 따르면 B국립대학은 연령대별 통계적 상관관계는 미약하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동일한 사고에서도 부상의 정도가 심화되는 경향이 보고되었음. A시교육청은 근속연수에 따른 재해 발생 경향을 지적하며 저연차 근로자는 업무 미숙으로, 고연차 근로자는 과신으로 인한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다고 보았음. 이에 따라 경력 단계별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인지 훈련 강화가 필요함. 예컨대 신규 근로자에게는 실무 중심의 기초안전교육을, 고연차 근로자에게는 주기적인 리마인드 교육 및 안전 리더십 프로그램 제공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근로자의 피로 누적, 집중력 감소, 업무 과중으로 인한 작업 가속화 등 또한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인적 요인으로 작용함. 특히 청소·조리 등 학교에서 산업재해 빈도가 높은 현업 직종은 반복적이고 고강도 노동이 지속되기 쉬운 작업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짐. 따라서 해당 직

종의 업무 강도, 작업량, 근무시간, 휴식 보장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량 조절, 인력 충원 또는 재배치, 교대제 도입 등 근무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함. 이러한 관리적 개선은 근로자의 피로와 과부하를 줄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직접적 효과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현업 직종의 안전·보건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대책

- 환경적 요인은 작업 공간의 물리적·시설환경적 조건에서 비롯되는 유해·위험 요인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닥 상태 개선, 동선 및 공간 관리, 시설 노후화 점검 및 조치, 조리실, 실험실 등 특수 환경 개선, 공기질 관리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해 사전에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해놓는 것이 중요함. 이와 관련해서 **학교의 위험성 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학교의 안전업무 담당자들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박종식 외, 2021). 특히 단위학교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별도로 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행정업무 담당자가 안전보건 업무까지 함께 맡는 사례가 흔하며 이로 인해 업무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었음.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 요소인 위험성 평가 또한 내용과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담당자 스스로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학교의 안전업무 담당자들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무엇보다 위험성 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사례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또한 박종식 외(2021)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많은 학교 담당자들은 스스로 모든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담을 느끼며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었음. 실제로 서울, 대구, 광주 등 여러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안전업무 부

답을 줄이고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현장 지도, 관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대구광역시교육청, 2025). 국립대학의 경우 위험성 평가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사례가 있지만, 국립특수학교처럼 학교 규모가 작고 예산 여건이 제한적인 기관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이와 관련해 선행 연구(백종배 외, 2021)에서는 중소기업에서의 효과적 위험성 평가 시행을 위해 외부 전문 위탁 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방식을 제언하였는데, 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 즉, 소규모 학교에서도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의 공동 컨설팅 지원 체계 구축, 순회 안전전문가 파견, 학교급 특성을 고려한 간이 위험성 평가 도구 개발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함. 이러한 다층적 지원 체계는 학교의 위험성 평가 질을 높여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

5) 학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내실화 및 집단적 실천 기반 확장

- 면담 조사 결과, 학교의 안전업무 담당자들은 공통적으로 학교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음. 이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수행해야 할 안전보건 업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며 실천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즉, 단순히 체계를 마련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전반의 인식 전환과 참여 확대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그러나 현재 학교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구조적 한계로 인해 안전관리 업무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행정직원에게 배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음. 이에 안전보건 업무가 ‘부가적 업무’로 인식되는 문제,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 안전보건 지식과 경험의 축적 부족 등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며 체계가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학교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체계의 고도화 및 구성원의 인식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참여형 안전보건 모니터링 체계 구축, 담당 직원의 주기적

직무 순환 체계를 고려한 전문성 강화, 산업재해 발생 등 비상상황 대응을 고려한 인력·조직 재편 등을 제안함.

○ 먼저,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안전보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실제 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현장 근로자의 경험과 의견이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현장 수요에 기반한 밀착형 안전관리가 가능해짐. 이 체계는 단순한 보고 절차를 넘어, 근로자가 위험요인을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작업 현장의 안전 감수성을 높이고 조직 전체의 안전인식을 향상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음. 예컨대 캐나다 UBC 사례처럼 학교 안전 앱을 개발·활용하여 위험요인을 상시적으로 발굴·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위험요인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위험관리의 적시성과 대응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음. 이와 같은 근로자 참여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상 등 인센티브 제도를 결합하면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으며, 보고 활성화에 따른 위험요인 데이터 축적은 향후 학교 안전보건정책 개선에도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근로자 참여 기반의 운영 모델은 근로자의 안전 인식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뿐만 아니라, 학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단순한 문서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내실화된 체계로 전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아울러 담당 직원의 주기적 직무 순환 체계를 고려한 전문성 강화 방안이 필요함. 학교의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인사 체계상 정기적인 직무 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장기간 동일 업무를 전담하거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기 어려움.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학교 현장에서는 개별 담당자의 역량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 기반의 전문성 유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먼저, 행정직원에게 고난도의 전문 교육을 즉시 요구하기보다는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 수준의 안전보건 역량을 정례적으로 교육하여 기본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확보해야 함. 동시에 직무 순환과 관계없이 학교의 안전보건 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점검 절차, 사고 대응 등 핵심 업무를 표준매뉴얼(SOP)과 체크리스트 형태로 고정하여 담당자 변경 시에도 혼선 없이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학교 행정직원은 본질적으로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위학교 내부 인력만으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 외부 전문지원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 국립대학 본부 또는 외부 전문기관 위탁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 사고 발생 시 대응, 안전보건교육등의 영역을 전문적으로 지원받는 구조를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임. 이는 학교 구성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데 매우 중요함.
- 장기적으로는 안전보건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단순한 일회성 교육으로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기본 교육을 토대로 한 전문 심화과정을 개발·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함. 더불어 해당 업무를 장기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관 제도 도입 및 이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등 장기근무체제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신우리, 강형기, 2016).
- 아울러 안전 업무는 평상시의 관리뿐 아니라 예기치 않은 비상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점검, 원인 파악, 긴급 조치, 관계기관 협의 등 다각적인 대응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담당 인력이 온전히 이 업무에 매진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립학교의 산업재해 관련 업무는 제한된 인력에 의해 수행되고 있어, 비상상황 대응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 집중이나 대응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안전 업무의 전문성과 즉시 대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및 국립대학 차원의 산업재해 업무 전담 인력을 확대·충원하여 안정적인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III.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방안

- 이 장에서는 국립대학 및 부설학교, 국립특수학교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사업 진행 단계별 안전·보건 확보 조치와 관련한 표준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특히 도급사업 시행에 있어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 평가 및 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학교 특성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학교 경영책임자의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검토하였음. 이어 유관기관인 시도교육청의 우수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국립학교 및 시도교육청 도급 안전보건 확보 업무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도급 업무 수행에 있어 제약요인 및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학교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도급, 용역, 위탁 사업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개선안을 마련하였음.

1. 법적·제도적 배경

가. 도급사업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압사 사고, 2020년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 사고 등 반복되는 대형 산업재해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에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 일반 시민의 안전권 확보를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 미비로 일어나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
-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는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지만 형사 처벌 범위가 낮거나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며, 하청노동자에게 위험한 업무를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원청(도급인)이 하청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들이 많아 이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음(김명준, 2021).

- 이에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 실질적 책임자 처벌로서 기업이 법을 지키도록 개선하고, 고의적이거나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월 26일 공포되었으며, 1년의 유예기간 후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음(류현철, 2021).
-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중 하나는 바로 원청(도급인)의 책임이 보다 강화되었다는 점임. 도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하청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경우 하청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부과함(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제6조). 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급 관련 의무 조항 및 적용 범위, 처벌 수준 등을 강화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음(박상진, 2021).
- 국립학교 또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으로, 도급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 1. 27.][법률 제 17907호, 2021. 1. 26., 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학교의 경영책임자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시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행해야 함.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7.][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는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대책 수립 및 이행,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및 시정 등을 요구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이행,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동법 제5조에서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 경영책임자가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에서 밝힌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¹⁸⁾이 있는 경우로 확대하고 있음. 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도급인의 안

18)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장소에 대한 소유권, 임차권, 그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이에 물품 구입 및 제조 의뢰에 따른 납품 및 설치작업, 장소, 시설, 설비 등 현장 개념이 없는 학술, 연구, 설계용역,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설발주공사 등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됨(교육부, 2022).

전 및 보건 확보 조치가 제3자, 즉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까지 확대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계획 및 기준,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함.

-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서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이는 다음과 같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상기 법안에 따르면 도급인은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 하는 경우 제3의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즉, 도급 등을 할 경우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 수준, 운영 관리, 재해발생 수준 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식 및 기준 등을 사업장에 맞게 수립하고 실제 업체와의 계약 단계에서 이를 절차대로 평가하여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나. 도급사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79조 및 동법 시행령에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음. 도급사업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2021).

1)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급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하략)...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도급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물질 제조·사용작업에 대해 사내 도급을 금지함.

-다만, 상시 인력의 고용이 어려운 일시·간헐적 작업과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 수급인이 보유한 전문적 기술 활용의 목적의 도급은 예외로 하되, 전문적 기술 활용 목적 도급인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기간은 3년임.

○도급의 승인 및 도급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1절 도급의 제한

제59조(도급의 승인)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하략)...

-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급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도급 승인 대상 작업으로 승인을 받아 도급한 작업의 하도급을 금지하며, 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됨.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제1절 도급의 제한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수급인 선정 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산재예방업무를 총괄·관리하여야 함.

-대상: 도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 및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건설업

-직무: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사항, 작업의 중지 및 재개,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사용 협의·조정,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여부 확인 등

○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 확대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장소)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21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장소, 시설 등의 위험에 대하여 지배·관리권이 있다면 도급 유형, 위험 장소, 사업 목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단,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

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등)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해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 간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매월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인 사업주는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며, 관계수급인은 순회점검을 기피해서는 안되고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함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함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도급인은 수급인이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혼재 작업 시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내용·안전보건조치 등의 확인 및 조정)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하며, 확인 결과 작업 혼재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내용 등을 조정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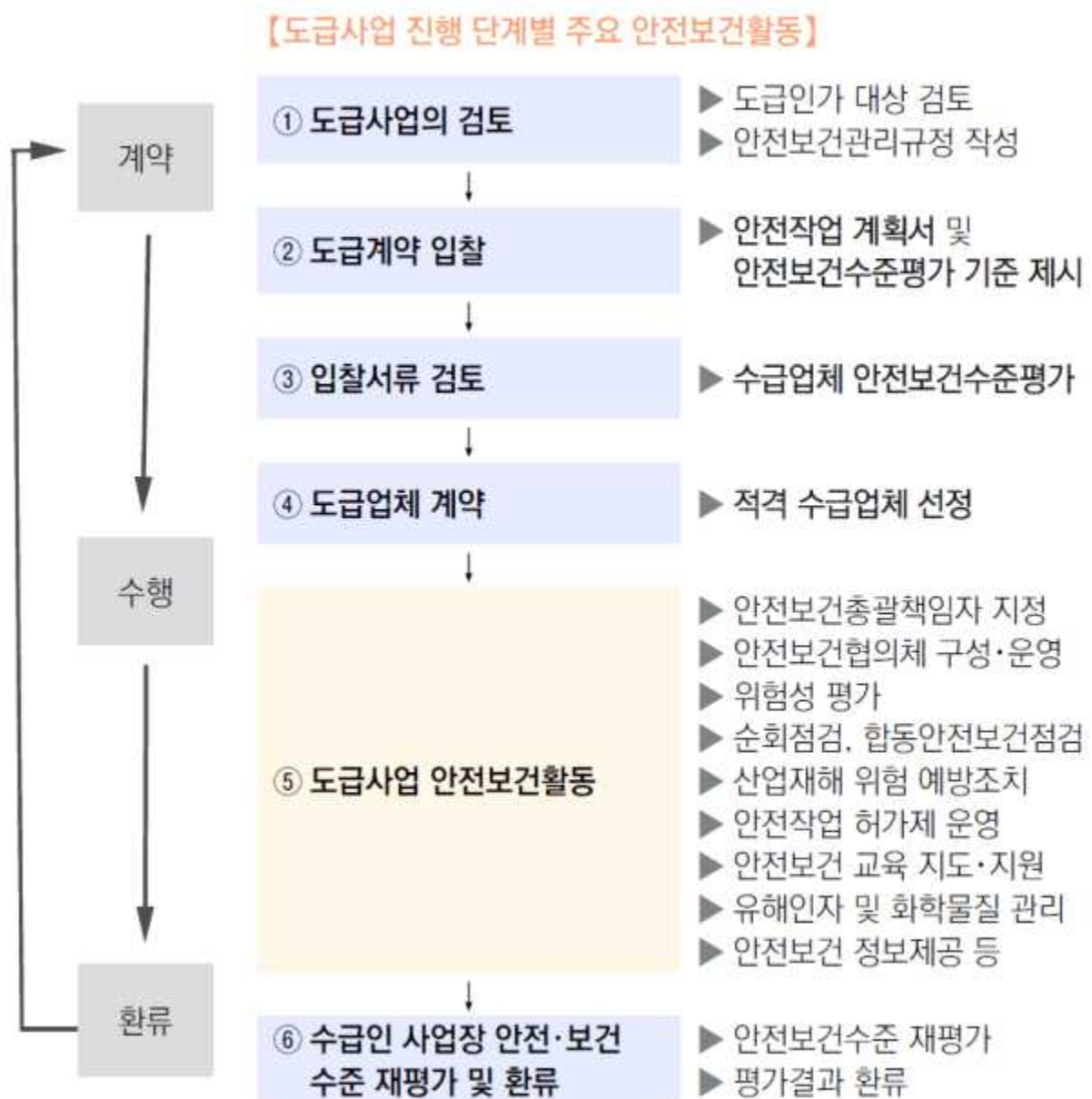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작업)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사업주와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함(분기 1회 이상).

2. 유관기관 사례 분석

- 이 절에서는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매뉴얼」에서 제시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표준모델을 검토하고, 시도교육청·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유관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용 중인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과 운영 체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립학교의 환경과 업무 특성에 적합한 평가 기준(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를 추출하고, 국립학교가 보다 현실적이며 실행 가능한 도급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가. 고용노동부 표준모델

-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 도급인의 의무 위반사례 및 우수사례 제시, 도급사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는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과 방법,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음. 이 중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포함한 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업무 흐름도는 다음과 같음.



[그림 Ⅲ-1] 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고용노동부, 2021)

- ①도급사업의 검토: 도급하려는 업무가 유해·위험작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급 금지·승인 대상인지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함. 이를 통해 도급 전 단계에서 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부적격 도급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②도급계약 입찰: 입찰 공고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관리 요구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여,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갖춘 업체가 입찰하도록 유도함. 이를 위해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관련 활동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과 평가를 통한 수급

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 수준을 확보함

- ③입찰서류 검토: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 등을 기반으로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함. 안전보건수준평가는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임.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을 분류하여 선정에 활용함으로써 수급업체에 자발적, 점진적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유도함.
- ④도급업체 계약: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고, 수급업체와 계약 시 안전보건조치사항 등을 명시하여 이후 모든 안전보건활동의 근거를 확보
- ⑤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도급인은 안전한 도급사업 진행을 위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위험성평가, 안전작업허가제 운영, 안전보건교육 지원,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등의 안전보건활동을 이행하여야 함
- ⑥수급인사업장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 및 환류: 평가 결과 우수한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

○이 중 계약 단계에서 도급인이 수행하여야 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주요 항목 및 세부 평가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Ⅲ-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항목 및 기준(고용노동부, 2021)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①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②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7. 교육및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③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④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의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항목별로 정량적 평가 배점을 부여하며, 배점은 도급작업장에서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세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였음. 이 중 특히 실행수준에 높게 배점을 부여하여 작업장 안전실행을 강조하고 있음.

-①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체제 분야에서는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체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역할 분담 등을 평가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일반원칙(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계획수립(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역할 및 책임(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의 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배점은 20점임.

-② 실행수준: 이 매뉴얼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실행수준 분야는 총 배점이 40점으로 가장 비중이 높게 구성되어 있음. 실행수준 분야에 포함된 세부 항목은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성평가 역량, 보호구 착용확인을 포함한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도급업체의 지도조언 등에 대한 이행을 포함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이 제시되어 있음.

-③ 운영관리: 운영관리 분야는 도급작업에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에 대한 도급·수급인 간 신호 및 연락체계, 유해·위험물질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안정성 확인 등의 관리 방안, 안전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락체계, 대응절차, 사후 복구 절차 등의 조치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총 배점은 20점임.

-④ 재해발생 수준: 이 분야에서는 수급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재해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모든 세부 항목은 평가 기준에 따라 도급인이 우수/보통/미흡으로 평가하며, 12개의 항목에서 득점한 모든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등급을 부여함. 이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등급 분류 및 위험작업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Ⅲ-2>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및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 기준(고용노동부, 2021)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 역량을 갖춘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수급업체 선정 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 이상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일반 도급작업은 점수의 합이 60점 이상인 경우, 즉 C등급 이상으로 분류된 경우 해당 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는 B 이상,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는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함.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평가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일 시 D등급으로 분류함.
- 교육부의 현행 적격 수급업체 선정기준은 고용노동부의 표준안을 따르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 표준안은 건설업과 제조업을 비롯해 광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통신업 등 국내 여러 산업 현장을 공통 기준으로 묶어 평가하도록 설계된 범용 모델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도급 사업의 특수한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학교는 상시 작업 밀도가 낮고 단가·소규모 공사가 반복되는 등 다른 산업과는 상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또한 청소, 급식, 시설 유지보수 등 교육기관 특유의 도급 유형은 산업별 표준안에서 다루는 위험요인과 운영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학교의 작업 특성, 재해 위험구조,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해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조정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지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이는 국립학교가 도급사업을 수행할 때 현실적인 안전보건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과정이며, 결과적으로 보다 실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음.

나. 시도교육청

1) 서울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은 도급사업에 있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선임,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등 법정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항목을 설계하였음. 또한 단위학교에서 도급사업 선정 및 운영을 담당하는 행정직원의 평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평가에 있어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을 최소화하고, 객관적 증빙 자료에 기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음. 이를 통해 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행정직원의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수급업체가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자발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표 Ⅲ-3> 도급(용역) 시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 세부 기준(서울시교육청)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평가기준)		배점
안전보건 조직체제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체제 구축 및 운영의 적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여부(대표자 및 책임자에 한함) - 관리감독자 지정 여부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여부(위탁 가능) *지정서(업체 자체 문서) 및 선임확인서 확인 	관리책임자	7	20
		관리감독자	7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의 적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기관) 내 안전관리담당자(관리감독자)가 관리하는 인원 (50명 이하 - 5점, 50~100명 이하 - 3점, 100명 초과 - 0점) 	50명 이하	5	5
		50~100명 이하	3	
		100명 초과	0	
안전보건 계획수립 (안전보건 관리활동 계획서) (25)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수립 및 적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점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감독자(안전보건담당자)의 점검 확인 등 활동(월 1회 이상) 및 안전보건자율점검(주 1회 이상) 포함 여부 ○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사다리 작업 등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포함 여부 ○ 비상대책 계획 수립(구조 및 신고체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시 구조, 신고체계, 시나리오, 긴급조치 사항 포함 확인 ○ 학교(기관)에서의 안전·보건조치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도급 시 협의체 참여, 합동점검 참여 등 안전·보건조치 및 작업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확인 ○ 용역 업종별 유해·위험요인 관리 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업종에 대한 대표적인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대책 수립 여부 확인 ※ 실행 내역은 타 학교(기관) 내역으로 평가 가능 	안전보건점검	1~5	25
		위험작업계획	1~5	
		비상대책계획	1~5	
		안전보건조치 계획	1~5	
		유해위험관리	1~5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평가기준)		배점
안전보건 교육 (35)	○ 법정교육 외 추가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 안전보건책임자(사업주), 사업책임자와 해당 학교(기관) 관리자로 구분하여 평가 - 최근 1년간 교육실적(2시간 이상) 이수증 확인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주관 교육만 해당	책임자교육	10	15
		학교(기관) 관리자교육	5	
	○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 (우수) 근로자가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추가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 및 계획을 수립한 경우 - (보통) 법정교육 실시계획 수립 및 실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 (미흡) 법정교육의 실시 및 계획에 누락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간 교육계획 및 실적으로 평가	우수	10	10
		보통	7	
		미흡	5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효율성 여부 - (우수) 전문강사(안전·보건관리자 포함)에 의한 집합 또는 위탁교육으로 50%이상 실시 - (보통) 관리자 및 인터넷으로 50%이상 실시 - (미흡) 교육자료 등을 통해 전달교육 실시	우수	10	10
		보통	7	
		미흡	5	
안전보건 확보 (15)	○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또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여부	안전보건 확보	15	15
산업재해 발생 (-20)	[산업재해 발생 수준 평가(감점)]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은폐 및 보고의무 위반 ○ 최근 3년간 평균 사고성 산업재해 발생 현황(동종업종 재해율 이상)	중대재해발생	-10	-20
		산재은폐	-5	
		사고성 산업재해	-5	
6. 평가항목별 득점(적격업체 기준 80점 이상)		계		100

○ 평가항목은 크게 안전보건조직체제(25), 안전보건교육(35), 안전보건계획수립(25), 안전보건 확보(15), 산업재해 발생(-20)으로 구성되어 있음. 배점의 25%를 차지하는 안전보건계획수립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의 경우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학교의 담당 직원의 평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 예컨대, 안전보건조직체제의 경우 주요 평가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임. 평가자는 수급업체가 제출한 해당 직책에 대한 선임신고서 및 선임확인서, 직무교육 이수증 등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선임 여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됨.

○ 서울시교육청은 안전보건수준 평가체계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중요한 평

가 요소로 삼고 있으며, 법정 교육 이행 여부, 법정 교육 외 추가 교육 실시 여부, 교육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설계하고 있음. 이러한 접근은 학교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주로 인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방향이라 할 수 있음. 즉,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임으로써 수급업체가 교육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실질적인 교육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다른 기관의 사례와는 달리, 산업재해 발생 현황 항목을 득점 요소가 아닌 감점 요소로 구성하였음, 즉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10점, 산업재해를 은폐하였을 경우 5점, 사고성 산업재해의 경우 5점을 총 득점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음.
-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체계적 평가를 통해 업체의 안전관리역량 강화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특히 평가가 단순한 서류 확인이나 형식적 이행 여부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의 실제 안전관리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되고 있음. 예컨대 안전교육 분야의 경우 예컨대 안전교육의 경우 법정교육 이수뿐 아니라 집체교육 등을 통한 교육의 효과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추가교육 이수 여부 등을 평가기준에 반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업체들은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집체교육을 기획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서울시교육청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와 관련하여 실제 평가 과정에서 제출된 평가 서류의 사례는 [붙임 2]에 제시하였음.
- 이처럼 서울시 교육청의 평가 체계는 평가 항목이 의도한 방향으로 업체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안전보건 활동을 필수적 경영 요소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범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또한 발주기관이 안전보건 수준 향상의 촉진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기관 도급사업 운영 관리에 시사하는 바가 큼.

2)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교육청은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 <표 Ⅲ-4>와 같이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음.

<표 Ⅲ-4>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경기도교육청)

구분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내용 및 기준	충족 여부 (○,×)	점수
안전 보건 관리 체계 (50)	안전보건 관리 인력 구성 (10)	-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 안전담당을 배정 시 배점		
	안전점검계획 (10)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절차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 배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20)	-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 배점		
	비상조치 계획 (10)	-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비상상황 시 조치 계획을 수립 시 배점		
실행 수준 (20)	위험성 평가 (10)	-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계획 -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시 배점		
	안전보건교육 (10)	-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시 배점		
재해 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3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배점한도 내에서 재해 건수 1건당 10점 감점 - 산재요양확인서 제출		예시) 2년간 재해건수 0건: 30점 1건: 20점 2건: 10점 3건 이상: 0점

- 평가항목은 크게 안전보건관리체계(50), 실행수준(20), 재해발생수준(30)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전보건관리체계에는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등을 평가하는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10), 산업재해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수립 여부를 평가하는 안전점검계획(10), 보호구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수립 여부를 평가하는 보호구 및 방호장치(20),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 여부를 평가하는 비상조치 계획(10)의 세부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 실행수준은 위험성평가의 이해 및 자체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여부를 평가하는 위험성평가(10),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여부를 평가하는 안전보건교육(10)으로 구성되어 있음. 마지막으로 재해발생 수준의 경우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해 배점한도 내에서 재해 건수 1점 당 10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음.
- 각 평가 항목별로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O, X로 판정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총점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는데 이는 고용노동부의 기준과 같음. 예를 들어 일반작업의 경우 60점 이상, 즉 C등급 이상을 획득했을 시 해당 수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 단, 평가 결과가 선정 기준 미만일 경우 수급업체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보완 요청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을 간소화·이원화하여 평가에 활용하고 있음. 일반 도급사업에는 위험요인 확인,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안전교육, 기계기구 안전성 확보, 비상조치 계획에 대해 세부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1일 이내의 단시간·소규모 작업(단, 위험작업 등은 미적용)에는 해당 작업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조치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양식을 간소화하고 있음. 이를 [그림 III-2]에 제시하였음.

안전보건관리계획서(I) 서식																																			
■ 작업명: 냉난방기 청소 용역		■ 업체명: ○○○○																																	
■ 작업일자: 20. (1월)		■ 연락처: 010-0000-0000																																	
■ 작업장소: 보통교실(○실), 관리실(○실)		■ 소재지: 세종시 ○○동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김○○ (서명)																																	
■ 비상 연락망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성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안전조치 세부계획 ※ 작업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할 것(별지 작성 가능)																																			
<p>■ 위험요인 확인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및 그에 따른 안전 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1)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대 사용, 등대(등) 올릴 전 경고방송 확인, 고소 작업 시 후자 감시원 배치 등 · 예) 2) 비상 작업일시 안전보 및 안전대 착용, 폐전도 차단지 방폭박스 사용, 모든 작업자 보안벨 및 방전마스크 착용 등 · 예) 3) 작업 전 10분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전구 위치를 파악한 후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전도방지 고지 등 · 예) 4) 안전 교육, 안전벨트 사용, 전구 위치를 파악한 후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전도방지 고지 등 · 예) 5) 안전 교육, 안전벨트 사용, 전구 위치를 파악한 후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전도방지 고지 등 																																			
■ 작업 난이도 체크 ☐ 고위험작업(안전작업자가 대상 작업 중) ☐ 중작업 ☐ 경작업																																			
<p>【공사(용역) 업체 확인 서약서】</p> <p>○ ○가(학)으로부터 해당 작업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으며, 공사(용역) 전 자정에 걸쳐 소속 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할 것과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고 ○ ○가(학)에 즉시 보고할 것을 서약합니다.</p> <p>20.</p> <p>소속기관(회사): _____ 공사(용역)업체 대표(원장소장): _____ (서명)</p>																																			
<p>■ 작업 난이도 확인 ☐ 고위험작업(안전작업자가 대상 작업 중) ☐ 중작업 ☐ 경작업</p> <p>■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평가 ※ 작업 난이도가 중작업일 경우 적정성 평가 '별첨 가능'</p>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안전작업여부(평가 내용)</th> <th>적합 여부</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td> <td>○/X</td> <td>적당함</td> </tr> <tr> <td>2</td> <td>작업 기간의 적정 여부</td> <td></td> <td></td> </tr> <tr> <td>3</td> <td>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td> <td></td> <td></td> </tr> <tr> <td>4</td> <td>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소모품) 적정 여부</td> <td></td> <td></td> </tr> <tr> <td>5</td> <td>안전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적정 여부(필요 시)</td> <td></td> <td></td> </tr> <tr> <td>6</td> <td>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필요 시)</td> <td></td> <td></td> </tr> <tr> <td colspan="2">최종 평가</td> <td>적합/부적합</td> <td></td> </tr> </tbody> </table>				NO	안전작업여부(평가 내용)	적합 여부	비고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X	적당함	2	작업 기간의 적정 여부			3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소모품) 적정 여부			5	안전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적정 여부(필요 시)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필요 시)			최종 평가		적합/부적합	
NO	안전작업여부(평가 내용)	적합 여부	비고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X	적당함																																
2	작업 기간의 적정 여부																																		
3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소모품) 적정 여부																																		
5	안전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적정 여부(필요 시)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필요 시)																																		
최종 평가		적합/부적합																																	

일반 도급작업

(단시간·소규모 작업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II) 서식																											
■ 작업명: 냉난방기 청소 용역		■ 업체명: ○○○○																									
■ 작업일자: 20. (1월)		■ 연락처: 010-0000-0000																									
■ 작업장소: 보통교실(○실), 관리실(○실)		■ 소재지: 세종시 ○○동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김○○ (서명)																									
■ 비상 연락망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성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안전작업 확인 및 조치 사항 ※ 작업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할 것(별지 작성 가능)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확인 사항</th> <th colspan="2">확인 결과</th> <th rowspan="2">재해 예방 조치 사항</th> </tr> <tr> <th>예</th> <th>아니오</th> </tr> </thead> <tbody> <tr> <td>① 감전·눌려짐 등 위험 여부</td> <td>○</td> <td></td> <td>예시) 절연장갑 사용, 배타 물기 제거 등</td> </tr> <tr> <td>② 사다리 사용 중 추락 위험 여부</td> <td>○</td> <td></td> <td>예시) 2인1조 작업, 안전작업대 이용, 안전도 착용 등</td> </tr> <tr> <td>③ 유해 화학재질을 사용 여부</td> <td>○</td> <td></td> <td>예시) 송기마스크 착용 작업, 안전장갑 착용 등</td> </tr> <tr> <td>④ 기타 위험 요소 여부</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확인 사항	확인 결과		재해 예방 조치 사항	예	아니오	① 감전·눌려짐 등 위험 여부	○		예시) 절연장갑 사용, 배타 물기 제거 등	② 사다리 사용 중 추락 위험 여부	○		예시) 2인1조 작업, 안전작업대 이용, 안전도 착용 등	③ 유해 화학재질을 사용 여부	○		예시) 송기마스크 착용 작업, 안전장갑 착용 등	④ 기타 위험 요소 여부		○					
확인 사항	확인 결과		재해 예방 조치 사항																								
	예	아니오																									
① 감전·눌려짐 등 위험 여부	○		예시) 절연장갑 사용, 배타 물기 제거 등																								
② 사다리 사용 중 추락 위험 여부	○		예시) 2인1조 작업, 안전작업대 이용, 안전도 착용 등																								
③ 유해 화학재질을 사용 여부	○		예시) 송기마스크 착용 작업, 안전장갑 착용 등																								
④ 기타 위험 요소 여부		○																									
<p>【공사(용역) 업체 확인 서약서】</p> <p>○ ○가(학)으로부터 해당 작업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으며, 공사(용역) 전 자정에 걸쳐 소속 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할 것과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고 ○ ○가(학)에 즉시 보고할 것을 서약합니다.</p> <p>20.</p> <p>소속기관(회사): _____ 공사(용역)업체 대표(원장소장): _____ (서명)</p>																											
<p>■ 작업 난이도 확인 ☐ 중작업 ☐ 경작업</p> <p>■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평가 ※ 작업 난이도가 중작업일 경우 적정성 평가 '별첨 가능'</p>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안전작업여부(평가 내용)</th> <th>적합 여부</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안전작업관리계획서 및 안전작업 확인사항 적정성 여부</td> <td>○/X</td> <td>적당함</td> </tr> <tr> <td>2</td> <td>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여부</td> <td></td> <td></td> </tr> <tr> <td>3</td> <td>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소모품) 적정 여부</td> <td></td> <td></td> </tr> <tr> <td>4</td> <td>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필요 시)</td> <td></td> <td></td> </tr> <tr> <td colspan="2">최종 평가</td> <td>적합/부적합</td> <td></td> </tr> </tbody> </table>				NO	안전작업여부(평가 내용)	적합 여부	비고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및 안전작업 확인사항 적정성 여부	○/X	적당함	2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여부			3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소모품)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필요 시)			최종 평가		적합/부적합	
NO	안전작업여부(평가 내용)	적합 여부	비고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및 안전작업 확인사항 적정성 여부	○/X	적당함																								
2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여부																										
3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소모품)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필요 시)																										
최종 평가		적합/부적합																									

1일 이내의 단시간·소규모 작업

[그림 III-2] 안전보건관리계획서(I,II) 서식(세종시교육청)

- 일반 도급작업의 경우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작업기간 적정성 여부,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안전교육 계획 및 기록 적정 여부,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여부 등 6가지 항목에 기반해 수급인의 안전작업 적정성을 평가하며, 단시간·소규모 작업의 경우 작업 기간의 적정 여부, 안전교육 계획 및 기록 적정 여부를 제 외한 4가지 항목에 대한 적합 여부를 평가하게 됨.

4) 광주광역시교육청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도급 업무가 대체로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작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작업이행계획서와 안전관리 수준 평가 기준을 간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표 Ⅲ-5>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항목(광주광역시교육청)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 안전작업이행계획서에는 작업자 안전계획(안전교육 계획, 안전보호구 사용계획 등), 비상연락체계,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및 이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종합하여 우수/보통/미흡의 3수준으로 평가함. 미흡일 경우 업체에게 반드시 보완 요청하여 재징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간소화된 평가를 통해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에 부담을 겪는 소규모 수급업체의 계획서 제출 참여를 유도하여 2024년도 기준 상반기 5,230건, 하반기 4,254건의 평가 건수를 기록하는 등 학교 현장의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평가 시행율을 높이고 있음.

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원칙적으로 모든 도급 작업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통해 평가하되, 도급 작업의 특성상 주기적·반복적 작업 및 위험성이 낮은 소규모 도급 작업은 ‘수급업체 안전보건 점검표(체크리스트)’ 제출로 평가를 대체함.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Ⅲ-6>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평가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1	작업 전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의 적정 여부			-위험도가 낮은 소규모 도급은 수급업체 안전보건 점검표 평가
2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의 적정 여부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의 적정 여부			
4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최종 평가		적합(√), 부적합()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항목은 총 5개로, 작업공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그에 따른 산재예방대책 실행 계획,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사용계획,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산재예방대책), 산안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 비상조치체계 구축의 적정 여부를 판정함. 단,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전까지 수급업체에 보완을 요구하여 개선 확인 후 적합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의 주요 도급사업(전기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수목전정공사, 현장체험학습 차량임차, 교실 리모델링 등)별 계약~수행단계에서 도급인 및 수급인이 이행해야 할 업무에 대해 명시하고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템플릿 등을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음.

6) 경상남도교육청

- 경상남도교육청은 사업금액 및 작업기간에 상관 없이 종사자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능력을 평가·확인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음. 다만 A/S 등 1회성 작업(수리, 용역)의 경우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제출받도록 대체하고 있음.

<표 Ⅲ-7> 수급업체 안전보건 조치능력 평가항목(경상남도교육청)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안전, 보완, 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 경상남도교육청의 안전보건 조치능력 평가항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유사하게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수립,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안전교육 계획,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 비상조치 체계 구축의 적정 여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완’ 판정 시 수급업체에 계획서를 보완 요청하여 재징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7) 종합

- 교육부의 현행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과 시도교육청 사례를 종합한 결과를 <표 III-8>에 제시하였음.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평가항목으로 구성하고 있음. 서울시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보건조직체제 구축 및 운영, 관리감독자가 관리하는 인원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을 세부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음. 경기도교육청은 안전보건 관리 인력 구성과 안전점검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종시교육청은 안전점검 계획 수립의 일종으로 작업기간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유해·위험요인 파악(위험성평가), 안전교육 계획,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비상조치 계획 등을 공통적인 평가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음. 이는 도급작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정에 어떠한 위험요인이 존재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적절히 마련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안전보건교육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위험 작업에 필요한 보호장비와 기계·장비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음.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착공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실제 작업 실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교육부의 개선안 또한 공정별 위험요인 파악, 안전교육, 보호장비 관리, 장비 사용계획 등과 같이 작업 실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소들을 포함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음.
-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각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배점)를 부여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종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은 적합 여부를 O/X로 판정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항목별 위험도와 중요도를 세밀하게 반영하는 점수 방식과 이행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적합·부적합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상이하므로, 국립학교 도급사업의 특성과 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어느 방식이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목적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표 Ⅲ-8> 시도교육청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종합)

	고용노동부·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세종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남교육청	
평가 기준	안전 보건 관리 체계 (20)	일반원칙(5)	안전 보건 조직 체계 (25)	안전보건조직체제 구축 및 운영(20)	안전보건 관리 인력 구성(10)					
		계획수립(10)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5)	안전점검계획(10)					작업 기간 적정성
		역할 및 책임(5)								
	실행 수준 (40)	위험성 평가(10)	안전 보건 계획 수립 (25)	안전보건점검(5)	안전보건교육(10)	안전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적정성	안전교육계획 적정성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성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안전점검(10)		위험작업계획(5)						
		이행확인(10)		비상대책계획(5)						위험성 평가(10)
		교육 및 기록(5)		안전·보건조치 계획(5)						
		안전작업허가(5)		유해·위험 관리(5)						
	운영 관리 (20)	신호 및 연락체계(5)	안전 보건 교육 (35)	법정교육 외 추가 안전교육 이수(15)	보호구 및 방호장치(20)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성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성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위험물질 및 설비(10)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10)						
				안전보건교육 효율성(10)						
		비상대책(5)	안전 보건 확보 (15)	안전보건 확보(15)	비상조치 계획(10)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성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성	비상조치 체계 구축 적정성	비상조치 체계 구축 적정성	
			재해 발생 수준 (20)	산업 재해 발생 (-20)	산업재해 발생(-20)	산업재해 현황(30)				
평가 방식	4개 항목으로 가중치 평가 고용노동부와 동일		5개 항목으로 가중치 평가 산업재해발생은 감점요소로		충족 여부로 만점-0점 부여	적합/부적합 판정 단기간 소규모 간소화	4개 항목 종합평가	적합/부적합 판정 개별항목평가 실시	적정성(안전, 보완, 해당없음) 개별항목 평가	

3. 면담 조사 결과

가. 개요

- 이 절에서는 국립학교 도급 시 안전보건확보 매뉴얼의 개선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음. 소속 기관에서 운영 중인 적격수급업체 자체 평가기준의 구성 방식은 어떠한지, 해당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운영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도급 안전보건확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개선 사항이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음.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도급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매뉴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음. 본 면담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표 Ⅲ-9> 국립학교 도급 안전보건확보 매뉴얼 개선을 위한 면담 조사 대상자

연번	일자	방식	소속기관	직위	담당업무
1	2025. 08. 27.	대면	광주광역시 교육청	C주무관	◦ 도급 안전보건 확보 관련 업무
2	2025. 08. 29.	대면	서울특별시 교육청	D주무관	
3	2025. 09. 05.	대면	경상북도 교육청	E주무관	
2	2025. 09. 29.	대면	전북대학교	B주무관	

- 면담은 국립대학 및 유관기관인 시도교육청에서 산업재해 및 도급 안전보건 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와 총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음. 면담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속 기관(학교)의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
 - (공통) 실제 현장의 수용도, 활용 정도
 - (자체 개발한 기관) 개발의 주안점, 주요 특성 등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관리 및 운영의 애로사항
- 기타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한 개선사항 등

나. 면담 결과

1) 소속 기관의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

-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을 운용하고 있었음. 먼저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성, 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안전보호구 사용계획의 적정성,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의 적정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고 있었음. 평가 방식은 항목별 점수화가 아니라 전체 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수·보통·미흡으로 판단하는 형태였으며, ‘보통’ 이상이면 적격 수급업체로 인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음. 계획서가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탈락시키기보다 보완을 통해 ‘보통’ 이상 등급을 받도록 함으로써, 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음.
-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고용노동부의 표준모델을 전면 적용하기보다는 이를 간소화한 형태로 평가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작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하였음. 학교의 청소용역, 간단한 수리, 수목작업 등은 대체로 소규모 업체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작업 또한 1일 이내에 완료되는 등 규모가 제한적임.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세부 평가기준을 그대로 준용할 경우, 업체의 행정적 부담이 과도하고 실제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특히 소규모 업체는 서류 작성 역량이 높지 않고 안전보건방침이나 안전보건관리 인력·역할 등과 관련된 별도의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최소한의 필수 항목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현실화하되, 가능한 모든 도급작업에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었음.

-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평가의 주요 목적을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데 두고 있었음. 이를 위해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평가 영역을 안전보건조직체제, 안전보건계획수립(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확보, 산업재해 발생의 다섯 축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세부 항목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음.
-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안전보건교육(35점)과 안전보건조직체제(25점)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두고, 안전보건계획수립(25점)은 고용노동부 기준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었음. 이에 대해 담당자는 실제로 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평가할 때, 관계 법령상 의무와 직접 연관되며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지표에 더 큰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음. 예를 들어 안전보건조직체제 영역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지정 여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항목은 평가자가 안전보건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선임·지정 서류나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증빙자료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을 고려한 결과였음.
- 안전보건교육의 경우 법정교육 이수 여부뿐 아니라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교육 등 추가 교육 이수 여부까지 평가함으로써, 업체가 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제로 교육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었음. 이러한 항목은 교육 이수증, 실시 보고서 등 객관적 서류를 통해 검증이 가능하므로 평가자가 전문성이 부족하더라도 판단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동시에 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음. 또한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타 시도와 달리 ‘안전보건교육의 효율성’을 별도의 세부 지표로 설정하여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실시 비율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음. 이는 인터넷 교육이나 전달 교육 등 비대면 방식보다 집합교육이 근로자의 교육 효과성을 높인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평가항목을 위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집체교육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 아울러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여부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음. 소규모 업체의 경우 이러한 평가지표가 다소 엄격하여 준수하기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 담당자는 관련 법령(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강화되고 사회적으로도 근로자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체 역시 평가지표에 부합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근로자·관리자 교육을 강화하는 과정을 통해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그리고 이러한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안전보건관리 평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았음.

○ 또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같은 항목은 현실적으로 득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업체가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즉, 특정 항목에서 점수가 낮더라도 다른 영역에서의 충분한 노력과 개선이 인정된다면 적격 수급업체로 충분히 선정될 수 있도록 배점을 설계하였다고 설명하였음.

○ 경상북도 교육청과 전북대학교의 경우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평가기준 및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음. 단 경상북도교육청과 전북대학교 담당자 모두 평가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전북대학교의 경우 안전보건방침/위험성평가/안전점검/산업재해 현황으로 간소화한 평가지표(안)를 개발하여 적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었음.

2)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관리 및 운영상 애로사항

○ 서울특별시 교육청 담당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실제 계약 단계에서 이행하는 데 제도적 제약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음. 계약업무는 지방계약법(국립학교의 경우 국가계약법)을 따르며, 적격업체 선정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의 적격심사기준(예규)에 근거해 이루어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도급업체 안전보건평가 기준을 그대로 반영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임. 즉, 양 법률 간 위임 규정이나 적용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하더라도 계약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음. 이에 따라 중

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도급 안전보건 확보 평가기준과 업무 절차가 계약 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계약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3) 기타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한 개선사항

- 모든 시도교육청과 국립대학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문제점은 도급사업에서 안전 보건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인식이 충분히 자리 잡지 않았다는 점이었음. 예를 들어 전북대학교의 경우 도급사업을 추진할 때 산업안전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본부와 달리 단과대학이나 부속기관 등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었음. 이에 대해 해당 대학은 이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거나 일관되게 관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토로하였음.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은 기관 내 모든 부서가 도급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보건 확보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 정비와 조직 차원의 관리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음.
- 경상북도 교육청은 단위 학교의 위험성평가 역량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실제로 많은 학교가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상북도 교육청은 최근 3년간 학교에서 수행된 도급작업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작업별 위험요인과 관리대책을 정리한 예시안을 제공하고 있었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유형이 대체로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학교가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 이와 같은 방안 이외에도 위험성평가 위탁 비용 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등 보다 구조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4. 교육기관 특성을 반영한 도급 운영 매뉴얼 표준모델 도출

- 도급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된 법령 분석, 시도교육청의 자체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검토, 업무 담당자 면담 결과 등을 종합하여 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국립학교 도급 운영 매뉴얼 표준모델(초안)을 도출하였음. 이후 학교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법적 타당성,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항목 간 균형 등을 점검하여 최종 표준모델을 확정하였음.

가. 주요 개선 방향

1) 사업장(학교) 특성에 맞는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항목 조정

- 기존 교육부의 도급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는 고용노동부(2021)가 제시한 4개 분야, 12개 항목을 그대로 준용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시도교육청 사례 분석 결과, 다수의 교육청이 학교 도급사업의 특수성과 실제 현장 여건을 고려해 평가항목을 간소화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조사에서도 평가를 수행하는 학교 행정직원과 평가 대상인 소규모 수급업체 모두 복잡한 평가항목과 제출서류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2021)의 기본 방향성은 유지하되 학교 현장에 적합하도록 항목 구성과 내용을 현실화하였음.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필수 요소 중심으로 간소화하였으며 평가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배점)를 재조정하였음. 이러한 개선 작업을 통해 학교가 실제로 활용 가능한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도급 안전보건관리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하였음.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음.

<표 Ⅲ-10>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항목(안)

전		후	
1. 안전보건관리체제(20)		1. 안전보건관리체제(20)	
일반원칙(5)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작업 추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
계획수립(10)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역할 및 책임(5)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2. 실행수준(40)		2. 안전보건관리계획(50)	
위험성평가(5)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20)	도급작업의 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수립
안전점검(10)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보호구 사용(10)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이행확인(10)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기계·장비 활용(10)	작업 중 활용하는 기계 및 장비의 안전성 확보 방안 수립
교육 및 기록(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비상대책(10)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안전작업허가(10)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3. 안전교육(30)	
3. 운영관리(20)		안전교육(30)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신호 및 연락체계(5)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 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10)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비상대책(5)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4. 재해발생 수준(20)		4. 산업재해 발생(가산점)	
산업재해 현황(20)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산업재해 발생(+1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수준

2) 평가 부담 경감 및 평가의 객관도·신뢰도 향상을 위한 평가기준 개선

- 기존의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는 안전보건방침,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등 여러 항목에서 평가자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우수·보통·미흡을 판정해야 했음. 그러나 실제로 수급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기관)의 사업부서 행정직원들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비전문가인 경우가 많아 평가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음. 이로 인해

수급업체가 계획서 작성부터 자체 평가까지 사실상 전담하게 되고, 평가가 요식행위로 진행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 이에 본 연구는 평가자의 전문적 해석이 필요한 항목을 줄이고 가중치를 재조정하였음. 또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보고서 및 교육 이수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선임 관련 서류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음. 이러한 개선을 통해 평가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음.

3) 기본 법정 의무 강화를 통한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역량 제고

-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고 소규모 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학교 도급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현실화하고 간소화하되, 평가가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상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기본사항은 평가항목과 기준에 반드시 포함하였음. 이를 통해 수급업체가 법정 안전보건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학교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수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하였음.
- 예컨대 안전보건관리체계 항목에서는 수급업체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관리감독자를 적정하게 선임했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삼고, 단순 선임 여부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정교육 이수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였음. 이를 통해 수급업체의 관리자와 현장 감독자 등이 안전보건과 관련된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

4) 도급 안전보건 확보 업무 절차 명확화 등 실무 편의성 향상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절차별로 도급인과 수급인 각각의 역할과 필요한 제출자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계약-수행-환류 단계별 업무 흐름도와 업무별 템플릿을 제시하였음. 이를 통해 업무 처리 과정

의 명확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였음.

나. 국립학교 도급사업 운영 매뉴얼 표준모델

- 본 연구에서 개선한 국립학교의 도급사업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매뉴얼 표준모델(안)은 [붙임 1]에 제시하였음.

IV. 결론

- 본 연구에서는 국립학교(국립대학 및 부설학교, 국립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최다 발생 유형을 도출하고, 유형별 예방 대책을 수립하였음. 아울러 국립학교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사업 진행 단계별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에 대한 매뉴얼을 개선하여 국립학교의 안전보건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주요 연구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가. 국립학교 산업재해 다발유형 분석 및 동종사고 예방대책 수립

- 최근 4개년간 국립학교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분석 결과 현업업무 중 청소 직종에서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전체 근로자 수를 고려한 재해율 산출 결과 조리 직종의 재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소 및 조리 업무 중 위험도가 높은 곳에 대한 직무 특화형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현장 중심의 실습형 교육 확대, 학교에서 발생한 실제 사고사례를 기반으로 한 교육 모듈 구성, 현업 직종의 인력 확충 및 업무 배분 등을 통한 관련 종사자의 업무 과중 해소 등을 제안하였음,
- 현업 외 직종의 경우 현업 직종에 비해 발생 건수가 낮지만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특히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현업 외 직종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음. 이와 관련해서는 학교시설의 노후화, 비정형 업무 증가, 업무 과중으로 인한 피로 누적, 정신적 스트레스 등 여러 영향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중 본 연구에서는 현업 외 직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및 제외 규정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비정규직 교원에 대한 체크리스트 기반 온라인 안전교육 체계 도입, 온라인 안전관리포털 및 안전 앱 등의 구축 등을 제시하였음.
- 국립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재해 형태는 ‘넘어짐’으로, 최근 4개

년 간 매년 과반을 넘는 비율을 차지하였음. 넘어짐 사고는 특정 발생요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근무 환경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넘어짐 사고가 단순히 근로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시설 노후화, 안전관리 미흡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고의 근본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영향 요인별 대책 방안을 다각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시설·작업 환경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면밀한 점검·개선, 직종별 맞춤형 넘어짐 예방교육자료 개발을 통한 근로자 인식 개선, 기후 변화로 인한 넘어짐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방안 등을 주요 예방 방안으로 제안하였음.

○국립학교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주로 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기계 및 장비의 설비 결함, 안전성 미확보 등의 문제보다 작업자의 불안정한 행동 특성이나 작업환경 등의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적 요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으로 참여형 학습 방식 등을 도입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실화, 연령과 경력에 기반한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 제공, 현업 직종의 작업량 조절 및 근무체계 개선을 제안하였으며, 환경적 요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으로 학교의 위험성 평가 역량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음.

○업무 담당자의 면담 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학교의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이 저조하다는 것이었음.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내실화 및 집단적 실천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참여형 안전보건 모니터링 체계 구축, 담당 직원의 주기적 직무 순환 체계를 고려한 전문성 강화, 산업재해 발생 등 비상상황 대응을 고려한 인적·조직 재편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음.

나.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방안

- 본 연구에서는 도급사업 운영 시 도급인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검토하고,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갖춘 적격업체 선정에 위해 활용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대해 고용노동부 표준모델과 유관기관인 시도교육청의 평가 기준·방식을 비교·분석하였음. 또한 도급 안전보건 확보 업무 담당자 면담 결과를 종합하여, 개선된 평가 방식과 절차가 반영된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매뉴얼’ 개선(안)을 마련하였음.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개선(안)은 기존 12개 세부 항목을 7개로 재구성하여 평가 지표를 현실화·간소화한 것이 특징임. 이를 통해 도급인(학교)과 수급인(업체)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단위 학교에서도 실제로 활용 가능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음. 아울러 평가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항목은 객관적 증빙자료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보건 전문성이 낮은 학교 행정 직원의 평가 부담도 줄이고자 하였음.
- 또한 평가 본래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관계 법령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요구하는 기본 조치사항을 평가 항목과 기준에 반영하였음. 이를 통해 수급업체가 법령상 안전보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학교의 산업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재정비하였음. 더불어 업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업무 흐름도와 템플릿을 제공하고, 최근 정부 방침도 반영하는 등 활용성을 강화하였음.
- 개선된 매뉴얼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산업안전의 중요성과 위험 요인에 대한 경각심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학교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또한 매뉴얼에 제시된 절차와 기준을 실제 업무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원 대상의 실무 중심 교육, 정기적인 점검 및 피드백 체계를 마련해야 함.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202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적격 수급 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포함.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202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2022).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2023).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2023).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2024). 2023년 산업재해현황분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2024).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업무 가이드북.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2025. 9. 15.).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교육부(2025a). 교육부 산업재해 예방계획. 교육부 내부자료.
- 교육부(2025b). 교육부 중대재해 예방계획. 교육부 내부자료.
- 교육부(2022).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매뉴얼. 교육부.
- 권승연(2020). 공무원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개선계획에 관한 연구-성남시를 중심으로. 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20(11), 165-172.
- 김명준(202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장 배경과 시사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형사처벌 판례 분석.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슈리포트, 제3호*,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김직수(2024). 학교현장 위험요인과 교육공무직 안전보건대책 강화 방안.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24-05호*.
- 나민오, 송안미, 최서연, 권혁, 박수경, 서진두, 정정임(2024). 공공행정 분야 등 사업장의 안전분야 실태. 산업안전보건연구원-620.
- 대구광역시교육청(2025). 제11회 전국 시도교육청 중대재해 예방 협의회 자료집. 협의회 내부자료.

- 류현철(202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의 사회적 의미와 과제. **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박상진(2021).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어떻게 다른가. **노동법률**, 2021(3), 116-119.
- 박종식, 조성재, 오진욱, 조규준(2021). **학교 안전보건체계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 백종배, 장성록, 서용운, 강병열, 최희주, 서강훈, 박희운(2021). **중소기업 산재예방을 위한 교육 등 개선 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서울시교육청(2025). **2025년 학교 안전 우수사례집**.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 신우리, 강형기(2016). 재난관리시스템 재편에 따른 공무원 역량강화에 관한 연구: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재난관리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12(2), 53-68.
- 울산광역시교육청(2025). **2025년 상반기 아차사고 개선사례집**. 울산광역시교육청.
- 이유진, 김보애, 변혜영, 백희정, 박정모, 박종태, 조흠학(2023). **조리종사자의 건강영향 분석**. 산업안전보건연구원-1134.
- 조현아, 이영은, 박은혜(2014). 충북지역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안전사고 실태 및 인식.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43(10), 1594-1606.
- 부산MBC뉴스(2025.11.05.). 학교 급식실 만성 인력난에...급식법 개정 목소리. (<https://www.youtube.com/watch?v=2EW8WLkBxE4>. 2025.11.16. 인출)
- M. J. Burke, S. A. Sarpy, K. Smith-Crowe, S. Chan-Serafin, R. O. Salvador and G. Islam, "Relative Effectiveness of Worker Safety and Health Training Method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96, No. 2, pp. 315-324, 2006.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5호, 2025. 10. 1., 타법개정]
-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5호, 2025. 10. 1., 타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시행 2025. 10. 1.] [고용노동부령 제453호, 2025. 10. 1.,
타법개정]

[인터넷 웹사이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홈페이지 “안전 및 위험 서비스” (<https://srs.ubc.ca/health-safety/>)(2025.10.03. 인출)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교 홈페이지 “안전” (<https://www.uni-marburg.de/de/universitaet/administration/sicherheit>)(2025.11.01. 인출)

미국 시카고 대학교 홈페이지 “환경 보건 및 안전” (<https://safety.uchicago.edu>)
(2025.10.05. 인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용역, 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매뉴얼

2025. 12.



교육안전정책과

교육부 안전·보건 경영방침

교육부는 “안전경영, 안전과 보건”을 핵심 가치로 정하고 전 직원과 소속기관 및 국립특수학교 교직원에게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적극 실천한다.

1. 교육부 및 소속기관과 국립특수학교는 모든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건강·안전 증진을 위해 ‘재해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산업 안전·보건 목표로 삼는다.
2. 우리는 안전보건 법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보건 목표 달성을 위해 각자의 책임과 의무 이행에 최선을 다한다.
3. 교육부는 교직원 중심의 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모든 조직의 안전 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4. 교육부 및 소속기관과 국립특수학교는 기관장을 중심으로 “교육부 안전보건 경영방침”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5.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의 상호존중과 안전보건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5. 우리는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제거하는 등 재해 예방과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6. 우리는 상호 존중과 투명한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다함께 노력한다

교 육 부 장 관

일 러 두 기

- 본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과 교육부(본부), 국립특수학교, 소속기관에서 ‘도급(위탁·용역) 등을 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및 ‘중대재해 등 사고 발생 대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참고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 참조하는 시점에 참고한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정이나 폐지, 정책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법령 및 규정, 공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1.26., 제정)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716호, 2025.8.26., 타법개정)
- ☑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065호, 2025.10.01., 타법개정)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597호, 2025.6.20., 타법개정)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52호, 2025.9.19., 일부개정)
-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2024.12.18., 일부개정)
-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고용노동부, 2021.11)
-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21.12.)
- ☑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22. 03.)
- ☑ 중대재해처벌법령 Q&A 중대산업재해 부문 (고용노동부, 2022.01)
- ☑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고용노동부, 2022. 03)
- ☑ 2023 새로운위험성평가 안내서(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23. 05.)
- ☑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안내서(고용노동부, 2023. 06.)
- ☑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업무 가이드북(고용노동부, 2024. 10.)

— <목 차> —

I. 추진 배경	1
II. 추진 근거 및 용어 정의	1
III. 적용대상 및 범위	3
IV. 단계별 안전보건 관리 업무 절차	5
V. 안전보건 관리 세부 이행 사항	6
1. 계약 단계	6
2. 수행 단계	9
3. 환류 단계	12
【붙임 및 서식자료】	1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용역, 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매뉴얼(안)

I 추진 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은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가 있음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사업 수행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모두 종사자*로 그들의 안전·보건 조치 대책 필요
 - *근로자(공무원 포함),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 따라서 교육부 및 소속기관, 국립특수학교도 관련법령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하 ‘도급’) 수행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II 추진 근거 및 용어 정의

1. 추진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다. 건설법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79조(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2. 용어 정의[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도급인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1. 적용대상

- 교육부(본부) 및 소속기관, 국립특수학교

2. 적용범위

- 도급 시 기관(학교)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및 사업장
 - 기관(학교)의 사업장(도급인 소유 사업장)
 - 기관(학교) 사업장 밖이라도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지 여부의 판단 기준

해당 시설이나 장비, 장소에 관한 ① 소유권, ② 임차권, ③ 그 외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해당 장소* 등의 유해위험 요인을 인자·파악하여 제거하는 등 통제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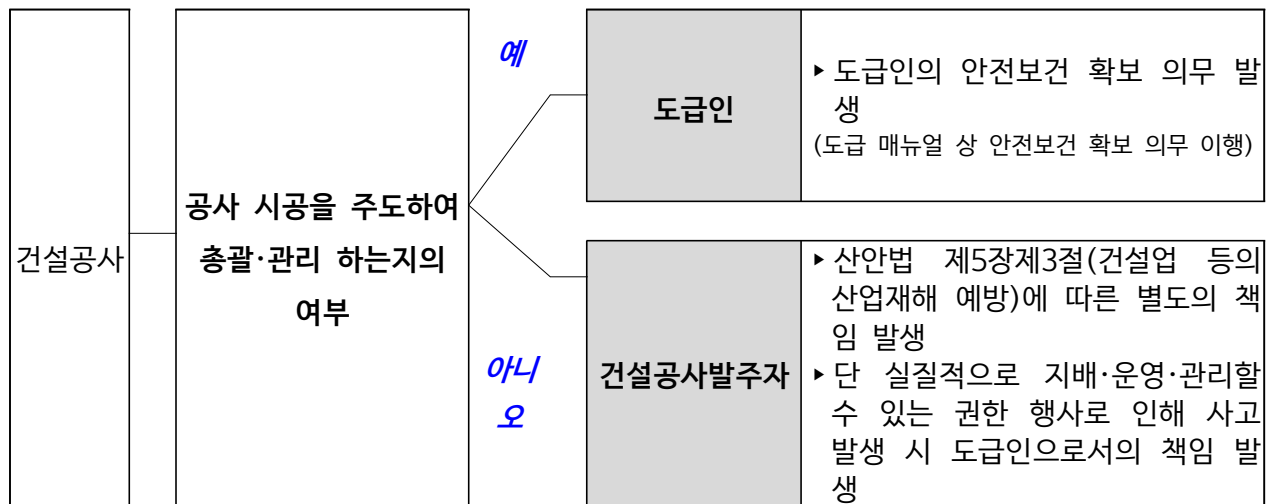
* ‘도급인의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밖의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a ~ c)

- 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시설, 장비 등)를 제공 또는 지정
- ② 도급인이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이는 장소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붙임 1】

3. 적용 제외 대상

- (물품 납품 및 설치) 제조·판매물 업체 근로자가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단순한 납품 및 제품 설치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도급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됨
 - 사무집기, PC, 자재 납품·설치·하자보수, 안전 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컨설팅, 행사, 교육 등
 - 단,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도급인의 관리·감독 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의 경우는 예외
 - 또한 이러한 방문작업 중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도급인의 책임을 질 수 있음

- (학술, 연구, 설계 용역) 장소, 시설, 설비 등 현장 개념이 없는 학술, 연구, 설계 용역은 도급 적용 범위에서 제외
- (발주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의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책임【붙임 2】을 부담하도록 규정



***건설공사(「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 「전기공사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 여부 판단 기준**

- 공사 일정 개입, 작업지시 등 공사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 행사 여부
- 해당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의 여부
-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 기타 예측 가능한 업무인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

IV

단계별 안전보건 관리 업무 절차

※ 단계별 안전보건 관리 업무 흐름도

구분	절 차	세부 내용	관련문서	담당부서
계약	① 계획수립 및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사업 검토 □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안전보건관리 확보에 관한 사항 검토 	매뉴얼 3~4p	사업부서
	②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명시 	【서식 1】	사업/계약부서
	③ 안전보건수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계약예정 업체로부터 [서식 3] 등 관련서류 징구 	【붙임 3】 【서식 2~4】	사업부서
	④ 사업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징구 및 계약체결 □ 위험성평가 결과 제공 	【서식 5】	계약부서 사업부서
↓				
수행	⑤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협의회 운영 □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 경보체계 등 대피 훈련 □ 위생시설 설치 및 이용 협조 □ 작업 혼재 조정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서식 6】 【서식 7】 【서식 8】 【서식 9】	사업부서
↓				
환류	⑥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및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및 환류 		사업부서

1. 계약

[사업/계약부서]

① 계획수립 및 검토

□ 도급사업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사항 검토

- 법령상 도급사업 해당 여부 및 도급 금지 업무 및 승인 업무 검토
- 공고문(과업지시서) 등에 포함할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사항 검토

○ 도급사업 검토

- 법령상 도급사업에 해당되는지 검토
- 도급 금지 업무 및 도급 승인 업무 확인[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59조]

○ 공고문(과업지시서)에 포함할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내용 검토

- 도급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내용 및 제출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 계약체결 이후 안전보건 관리방안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공고 및 계약 입찰

□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명시

공고 시 공고문(과업지시서)에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등을 명시

○ 공고문(과업지시서) 명시 조항 **【서식 1】**

-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한 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서류)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계약체결 이후 안전보건 관리방안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③ 안전보건수준평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수준을 평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이행 능력이 있는 업체를 확보하여야 함

○ 평가 목적

-도급 등의 계약 당락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닌, 기관(학교)에서 도급 등을 시행할 때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요건 확보

○ 적격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항목(예시) 【붙임 3】 【서식 2~3】

-평가 항목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선임,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등 기본적인 법정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보건관리체계		○작업 추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	20	20	10	1
2. 안전 보건 관리 계획	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도급작업의 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대책 수립	20	20	10	1
	안전보호구 사용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10	10	5	1
	기계·장비 활용	○작업 중 활용하는 기계 및 장비의 안전성 확보 방안 수립	10	10	5	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0	10	5	1
3.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30	30	20	1
4. 산업재해 발생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수준(가산점)	+10			
계			100			

※기관(학교) 및 업체 사정 및 작업 특성에 따라 평가 항목 및 방법 변경 가능

○ 평가 방법

-기관(학교)은 수급업체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2】 및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평가 방법【붙임 3】에 따라 업체의 안전보건수준 확보 정도를 평가【서식 3】

-업체에서 제출한 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평가 기준 및 방법, 서식은 예시로 제공되는 것이며, 필요시 기관(학교) 및 업체 사정에 맞게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

○ 등급 분류

-평가항목별 득점을 합산하여 안전보건수준 등급을 분류하고, 작업별 선정 기준에 따라 평가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 역량을 갖춘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수급업체 선정 기준

-일반작업: C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 이상

-화재폭발 위험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 이상

※미흡한 평가항목에 대해 계약체결 전까지 계획서를 보완 요구하여 개선 확인 후 재평가 가능

○ (예외) A/S 등 1회성 작업이거나 위험성이 낮은 소규모·단시간 도급 작업의 경우 수급업체에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서식 4】를 제출받아 종사자의 안전을 관리(안전보건관리계획서 미제출)

4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확약 및 징구

·작업 전 도급인과 수급인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도급인은 이를 검토하여 개선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징구

○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결과 적격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 체결

-단,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전까지 보완 요청 가능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관계법령 준수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반영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5】 확약·징구

□ 위험성평가 결과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하여야 함
 - 위험성평가 절차 및 방법은 **【붙임 4】** 참고
 - 도급인은 수급인의 원활한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해 안전보건 정보 제공
- 작업 시작 전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하여 수급인이 작업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및 조치사항, 작업 시 유의사항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함
- 공사 등의 경우 업체(시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사전에 파악한 유해·위험요인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공유하도록 안내 및 확인

2. 수행

[사업부서]

5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사업 안전보건 조치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 시행규칙 제79조]

도급 사업 시 도급인은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성 방법
 - 도급인 및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수급인 전원
 - 매월 1회 이상 정기 개최하며,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함**【서식 6】**
- 협의사항
 - ①작업의 시작 시간, ②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③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④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⑤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

○ 제외대상

-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및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작업)

□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 및 ②, 시행규칙 제80조 82조

도급인은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1주일에 1회 이상) 및 수급인과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 안전·보건 점검 실시

○ 점검 방법

- 점검일지를 활용, 점검 후 부서 자체별 기록·관리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수급인에게 시정조치 및 개선여부 확인

구분	실시주체	점검주기	점검일지
순회점검	도급인	주 1회 이상	【서식 7】
합동안전보건점검	도급인, 수급인 (도급인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점검반 구성)	분기별 1회 이상	【서식 8】

□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3,4]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자료를 제공하고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교육지원

-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
- ※(안전보건교육 지원) 교육장소, 교육 기자재, 안전교육 교재 등

○ 교육실시 확인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반기 1회)【서식 9】시 교육일지 등으로 확인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여부를 확인

□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훈련[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경보를 운영하고, 수급인에 통보하여 사고위험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운영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해 연락·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등 훈련
- 도급인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대비하여 상호 간 연락체계와 신호방법을 정하여 관리
-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대피훈련 실시

□ 위생시설 설치·이용 협조[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6]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 작업 혼재 조정[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7,8]

도급인과 수급인의 작업시기·작업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하여,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 발생 우려 시 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변경

-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및 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
-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위험발생 우려** 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간 조절

* 작업 혼재: 같은 장소, 시설에서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짐

**위험 발생 우려 상황: 화재·폭발, 끼임, 충돌, 추락,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전도, 붕괴, 질식·중독 등

- 작업시간 조절이 어려울 경우 작업 영향에 대한 안전조치 및 감시자 배치 확인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

○ 정보 제공 대상 작업

구분	내용
화학물질 위험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 등의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철거하는 작업 및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질식 위험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붕괴 위험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제공 방법

-해당 작업 시작 전 문서로 제공

○ 제공 자료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및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

※공사의 경우 시공사에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안내하였는지 확인

3. 환류

[사업/계약부서]

⑥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및 환류

사업 종료 후 수급업체의 재평가를 통해 안전보건수준을 진단하고, 수급업체 스스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관리

○ 평가를 통해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 및 개선사항 도출

-평가 결과를 다음 수급업체 선정에 반영함으로써 수급업체의 자발적, 점진적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유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1. 토사·건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화재·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장소)

1.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나.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식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2.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574조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6.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 주요 책무]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제3절 제67조~제76조(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 단계별 건설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법 제67조>

-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총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인 건설공사
- (내용) 건설공사발주자 주도로 건설공사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조치를 마련

□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법 제68조>

- (대상)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복수의 건설공사가 동시에 시공되는 건설현장
- (내용) 복수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작업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법 제69조>

- (내용) 설계도서에서 산정된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험공법 사용, 정당한 사유 없는 공법 변경 등 금지

□ 공사기간 연장 <법 제70조>

- (내용) 천재지변 등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도급인이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

□ 설계변경 <법 제71조>

- (내용)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축·토목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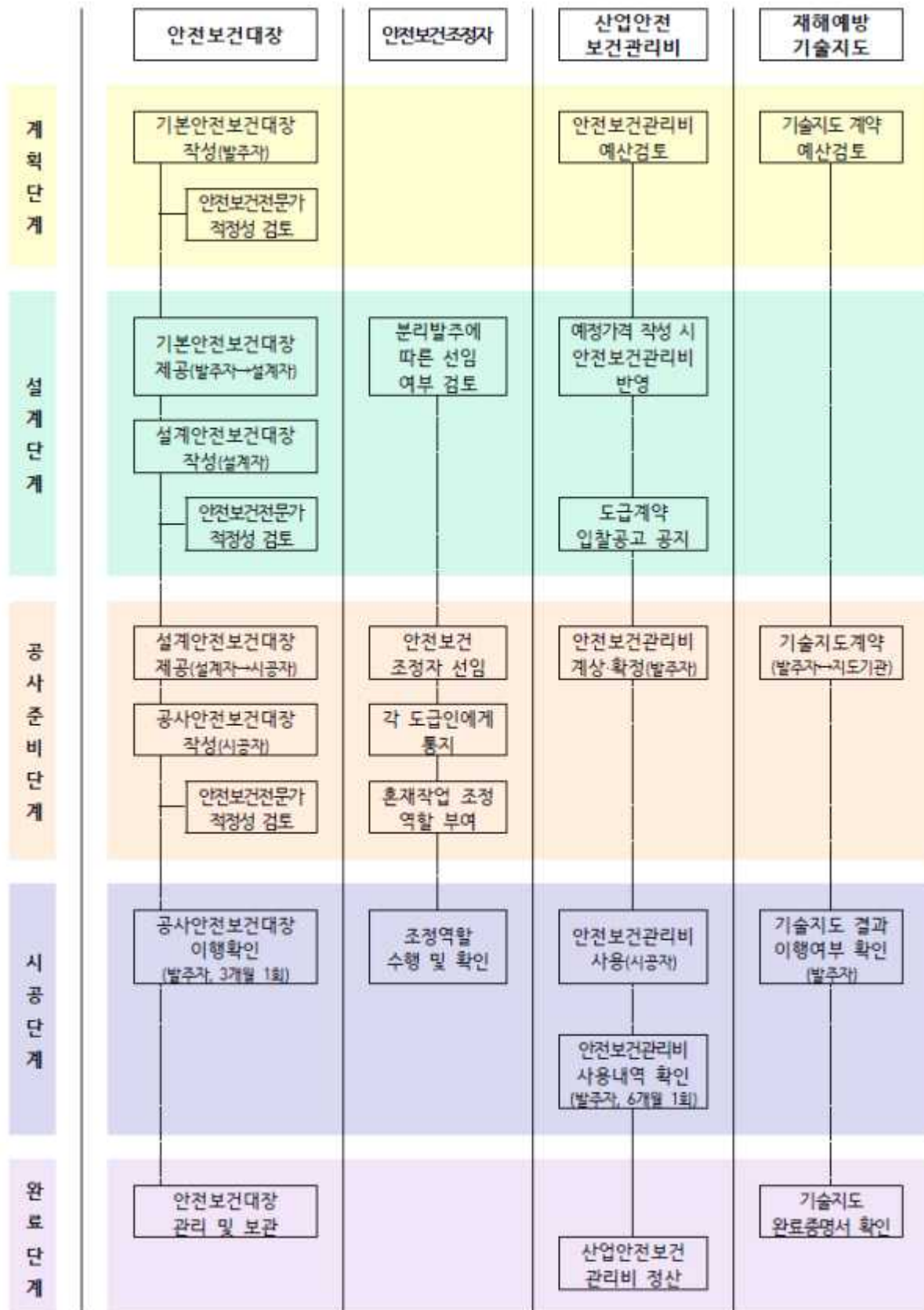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법 제72조>

- (대상)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 (내용)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 수립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계상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참고)

□ 중소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법 제73조>

-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총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 미만인 건설공사와,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이 경우 1억원 미만도 해당)
- (내용)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 체결

[건설공사발주자 업무 흐름도]



(출처: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업무 가이드북」)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는 도급 등의 계약 당락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기관(학교)에서 도급 등을 시행할 때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평가항목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선임,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등 기본적인 **법정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사항을 이행한 업체는 **적격업체 선정에 필요한 점수 이상으로 평가**되도록 구성되었음.
 - 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관(학교)에서는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함(단, 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주 명의로 작성된 문서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사업주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함.
- ※평가기준 및 방법, 서식은 예시로 제공되는 것이며, 필요 시 기관(학교) 및 업체 실정에 맞게 양식을 변경하거나 자체 서식을 활용할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서류
1. 안전보건관리체계 (20)		○작업 추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지정 여부	제출서류① [서식 11]
2. 안전보건관리계획	위험요인 파악·관리(20)	○도급작업의 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대책 수립 -도급 업종 및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및 관리대책 수립의 적절성	제출서류② [서식 2]
	안전보호구 사용(10)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도급작업에 적절한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계획 수립의 적절성	
	기계·장비 활용(10)	○작업 중 활용하는 기계 및 장비의 안전성 확보 방안 수립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 및 사다리작업 등 위험작업에 대한 안정성 확보 방안의 적절성	
	비상대책(10)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산업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절차, 비상연락체계 수립에 대한 적절성	
3. 안전교육(30)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제출서류③ [서식 2, 11]
4. 산업재해 발생(가산점)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수준	제출서류④

■ 안전보건수준 평가 방법

1. 안전보건관리체계(20)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작업 추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	20	10	1

○ 평가 기준

- ① 우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가 모두 선임되었음
- ② 보통: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 중 한 명만 선임되어 있음
- ③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가 모두 선임되지 않음

○ 평가 방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선임 문서 확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교육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우선 확인
- 교육이수증이 없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선임 문서 확인
-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단, 1년 미만의 관리감독자는 관리감독자 선임 문서만으로 평가

○ 평가 서류(해당 서류 중 1개 확인)

- [제출서류 ①-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관련 교육 수료증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선임 문서
- [제출서류 ①-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문서 및 관리감독자 지정 문서【서식 10】

2. 안전보건관리계획(50)

2-1. 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20)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대책 수립	20	10	1

○ 평가 기준

- ① 우수: 도급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함
- ② 보통: 도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대책이 일부 누락됨
- ③ 미흡: 도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대책이 수립되어있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 평가 서류

- [제출서류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3.유해·위험요인 관리대책 【서식 3】

2-2. 안전보호구 사용(10)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10	5	1

○ 평가 기준

- ① 우수: 도급작업에 적절한 안전보호구 지급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이 마련됨
- ② 보통: 안전보호구 지급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이 일부 누락됨
- ③ 미흡: 안전보호구 지급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이 상당부분 누락되었거나 해당 도급작업에 적합하지 않음

○ 평가 서류

- [제출서류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4. 안전보호구 사용 【서식 3】

2-3. 기계·장비 활용(10)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작업 중 활용하는 기계 및 장비의 안전성 확보 방안 수립	10	5	1

○ 평가 기준

- ① 우수: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장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함
-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장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성 확보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일부 누락되어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장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성 확보 방안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가 필요한 작업 및 작업지휘자 지정이 필요한 작업의 경우 별도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참고

○ 평가 자료

- [제출서류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5. 기계·장비 활용 【서식 3】

2-4. 비상대책(10)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0	5	1

○ 평가 기준

- ① 우수: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사후 조치가 포함된 비상대응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됨

-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에서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사후 조치 중 일부가 누락됨
-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 **평가 방법**

- [제출서류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6. 비상대책 **【서식 3】**

3. 안전교육(30)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실시	30	20	1

○ **평가 기준**

- ① 우수: 근로자가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하였으며, 추가교육(2시간 이상)에 대한 실시 및 계획 실적이 있음
- ② 보통: 근로자가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③ 미흡: 근로자가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 방법**

- 근로자에 받아야 할 법정 안전보건교육 및 추가교육*을 실시하였는지에 대한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하며, [공사]와 [용역]을 구분하여 평가

* (추가교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상 '3. 위험요인 파악·관리'에 관한 내용 등

【공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료증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보고서 등

※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계획서로 대체하고, 해당자료는 착공 전까지 교육실시 보고서 제출

※ 해당 공사가 특별교육 대상일 경우 특별교육 실시 결과를 함께 평가

【용역】: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계획서 및 안전보건교육실시 보고서 등

※ 신규 입사자의 경우 동일업무자 교육실시 자료로 대체

- 안전보건교육 실적은 최근 1년간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보고서 **【서식 11】** 등으로 평가

※ 착공 전으로 인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안전교육 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 3】**)로 대체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 보고서 및 증빙자료(개인별 안전교육 수료증 등)는 착공 전까지 제출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는 관리감독자교육(16시간)이 포함됨

-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참고

○ **평가 자료**

- [제출서류 ③-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서 (**【서식 2】** 또는 자체 양식)
- [제출서류 ③-2] 안전보건교육실시 보고서 (**【서식 11】** 또는 자체 양식)
- [제출서류 ③-3] (근로자별) 안전보건교육 수료증

4. 산업재해 발생(가산점)

구분	가산점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수준	+10

○ 평가 기준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일 경우 가산점 10점 부여

※사업장 가동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함

○ 평가 자료

- [제출서류 ④] 사업자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확인서 등 사업장의 재해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확인서 발급 방법) 산업안전포털(<https://portal.kosha.or.kr>)→사업신청·조회→문서발급·조회→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발급

■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을 합산하여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등급을 분류하고, 작업별 선정 기준에 따라 최종 평가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 역량을 갖추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수급업체 선정 기준

-일반작업: C등급(60점)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 이상

※미흡한 평가항목에 대해 계약체결 전까지 계획서를 보완 요구하여 개선 확인 후 재평가 가능

■ 예외

- A/S 등 1회성 작업이거나 위험성이 낮은 소규모·단시간 작업 등의 경우 수급업체에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서식 4]를 제출받아 보관(안전보건관리계획서 미제출)
※기관(학교)은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숙지하고 수급업체에 관련 사항을 반드시 상호 확인 후 해당되는 분야별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출 요구하여야 함

(참고) 안전보건수준 평가 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평가항목		업체 제출서류			제출 여부
1. 안전보건관리체계		제출서류①-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수료증		✓
		제출서류①-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류 및 관리감독자 자정 문서	[서식10] 또는 업체 자체양식	
2. 안전 보건 관리 계획	위험요인 파악·관리	제출서류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2] 또는 업체 자체양식	
	안전보호구 사용				
	기계·장비 활용				
	비상대책				
3. 안전교육		제출서류 ③-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서	[서식 2] 또는 업체 자체양식	
		제출서류 ③-2	안전보건교육실시 보고서	[서식 11] 또는 업체 자체양식	
		제출서류 ③-3	(근로자별) 안전보건교육 수료증		
4. 산업재해 발생		제출서류④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필요시)	사업자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확인서	

■ 도급사업 시 위험성평가

-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
- 도급인과 수급인은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의 상호 조정·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협의체 등을 통해 협의
- 도급인과 수급인은 도급사업의 특성,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제5)항에 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3년간 보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위험성평가 시기 및 내용

구분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위험성 평가	정의	기관(학교)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위험성평가	최초 평가 이후 매년 위험성 결과 재검토	① 설비·물질 신규 도입 ② 작업방법 등 변경 시 ③ 산업재해 발생 시
	시기	1회/최초	1회/년	발생 시
	실시 내용	① 사전준비(평가대상 선정, 실시계획 작성, 위험성수준 및 판단기준 확정 등) ② 유해·위험요인 발굴(파악) ③ 위험성 판단 후 수준의 허용 가능 여부 결정 ④-1 (허용 가능) 위험성평가의 공유 ④-2 (허용 불가능)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허용 가능 여부 재확인 ⑤ 평가결과 공유 및 교육 ⑥ 감소대책 이행·확인		

■ 위험성평가 방법의 종류

평가 방법	주요 내용 및 특징	권장 사업장
① 3단계 판단법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와 같이 3단계 등의 등급으로 간략하게 분류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 -비교적 빠르게 위험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 -3단계 구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여야 함	중·소규모 사업장

평가 방법	주요 내용 및 특징	권장 사업장
② 체크리스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대상에 대해 미리 준비한 세부적 항목에 대해 '적정' 또는 '보완' 등으로 표시하는 방법 -간단하고 빠른 결정 가능하며 일관성이 높음 -점점 항목의 적정성 확인은 소수의 인원이 수행 가능 -체크리스트 항목 작성에 경험, 지식 등 전문적인 능력 요구 	중·소규모 사업장
③ 핵심요인기술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간략하게 실시하는 방법 -근로자 의견의 수렴에 효율적이고 현장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용이함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움 	중·소규모 사업장
④ 빈도·강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곱셈, 덧셈, 뺄셈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수준)를 산출하는 방식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 과정의 신뢰도가 높음 -빈도, 강도의 기준을 사전에 결정하여 적용하여야 함 -위험성평가 절차에 대한 이해 없이 진행하기 어려움 	모든 사업장

■ 위험성평가 시 유의사항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각 절차에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함**

- ①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 마련 및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수립·변경하는 경우
- ②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 ③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 ④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경우
- ⑤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등

○ 위험성평가 결과는 모든 근로자에게 공유되어야 함

- ①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
- ②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 ③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계획
- ④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등
- 중대재해로 이어질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하여야 함

○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 위험성 감소대책은 법령에 규정된 방법에 따른 조치→위험작업 제거 또는 대체→공학적 대책→관리적 대책→개인보호구 사용 순으로 수립
- ①위험성 수준이 높은 유해·위험요인부터 즉각적 개선조치를 실시
- ②개선조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잠정적 조치(관리적 대책 및 개인보호구 사용 등)를 마련하여 우선 시행
- ③감소대책 실행 후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검토 후 (위험성이 떨어지지 않은 경우) 추가 대책 수립·실시
- ④복합적 대책* 마련
- *예) 조리용 국소배기장치 설치(공학적 대책)+개인보호구(마스크 등) 착용

■ 위험성평가 관련 참고 자료

- (누리집) 위험성평가 시스템(kras.kosha.or.kr)
- (누리집)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p><주요 자료 수록 목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 ■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 실무자를 위한 위험성평가 교육 영상 ■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가이드 ■ 고위험요인 인포그래픽 등 다수 	<div data-bbox="979 412 1184 613"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1018 622 1149 645" data-label="Caption"> <p>위험성평가 자료실</p> </div> <div data-bbox="730 667 1436 792" data-label="Text"> <p>URL https://portal.kosha.or.kr/business-apply-search/biz-support/risk-consulting/consulting-risk-data</p> </div>
--	---

과업지시서 (예시)

“(중략)”

1. 과업수행자는 000공사(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도급인이 제시한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확인하여 적격업체로 선정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가.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에 충실히 응해야 합니다.
 -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1) 안전보건관리인력 구성
 - (2) 대상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 (3) 개인보호구 지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4) 사용기계·장비의 종류 및 안정성 확보 계획
 - (5) 안전보건교육계획
 - (6)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3.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개인 보호구(안전인증품)을 반드시 착용하게 해야 합니다.
4. 과업수행자는 종사자(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도급인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6. 과업수행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지체없이 보고하고 사고처리를 해야 합니다.
7. 과업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참석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 관리에 협조해야 하며,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입찰공고문 (예시)

“(중략)”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에 낙찰예정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보고서 및 근로자 안전교육 이수증

다. 사업장 산업재해를 조회 결과

라. 공사현장에 배치된 현장관리자가 관리감독자로 지정한 자료 및 관리감독자교육 이수증 (해당업체)

마. 안전보건관리책임자(대표자)를 지정한 서류 및 교육이수증 (해당업체) 등

3. 사업주(대표이사)는 공사 시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나. 일반 산업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다.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 위험이 있는 공사)

라. 감전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

마.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질식·중독 위험이 있는 공사)

4.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 제80조, 제82조에 따른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에 참여하고 작업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급인(발주자)이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작성용					
■ 일반사항					
사업(작업)명					
기관(학교)명		작업장소			
업체명		연락처			
작업기간		계약금액(VAT포함)	₩	원	
■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1. 안전보건관리체계	담당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현장책임자)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작업종사자 수	명	현장책임자 활동		-일일 현장점검 및 TBM 실시
2. 안전교육	(예시)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채용 시 교육	작업근로자 0명	2000. 00. 00. (1h)	안전사고 예방교육 안전보호장비 착용 등	
3. 위험요인 파악·관리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관리대책		
	-전기 설비 중 감전 위험		-절연용 보호구 지급 및 사용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		-운행 전 차량 점검, 차량 내 소화기 설치 등		
	-쓰레기 이동 시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		-충분한 휴식 및 스트레칭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4. 안전보호구 사용	(예시)				
	품명	지급계획·대상		유지·관리 계획	
	방진마스크	작업 전 쉼 근로자에 제공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작성·보관	
5. 기계·장비 활용	(예시)				
	기계·장비	안전성 확보 방안			
	사다리	예) 고소작업 시 안전 작업발판 설치			
6. 비상대책	◦ 대응절차 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소방서, 병원, 고용노동부, 발주처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고용노동부)				
	◦ 비상연락망 (예시)				
	소방서(구급대)	119	사무실(관리책임자)	※※※※※※※※※※	
	인근병원	※※※※※※※※※※	현장 책임자	※※※※※※※※※※	
	○○고용노동(지)청	※※※※※※※※※※	발주처(학교, 기관 등)	※※※※※※※※※※	

※ 해당 서식은 예시 서식으로, 작업 특성 등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음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기관(학교)작성용

학교(기관)명	
사업명	
업체명	
평가일시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기준	배점			점수
			우 수	보 통	미 흡	
1. 안전보건관리체계(10)		○작업 추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지정 여부	20	10	1	
2. 안전보건 관리계획 (50)	위험요인 파악·관리	○도급작업의 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대책 수립 -도급 업종 및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대책 수립의 적절성	20	10	1	
	안전보호구 사용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도급작업에 적절한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계획 수 립의 적절성	10	5	1	
	기계·장비 활용	○작업 중 활용하는 기계·장비의 안전성 확보 방안 수립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 및 사다리작업 등 위험작 업에 대한 안정성 확보 방안의 적절성	10	5	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산업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대응 절차, 사후조치 포함 여부	10	5	1	
3. 안전교육(20)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30	20	1	
4. 산업재해 발생(10)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수준(가산점)	+10			
총 점						
등 급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 역량을 갖추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수급업체 선정 기준

-일반작업: C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 이상

※미흡한 평가항목에 대해 계약체결 전까지 계획서를 보완 요구하여 개선 확인 후 재평가 가능

(제시된 서식은 예시 서식이니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공통)

[기관(학교)에서 점검하고, 업체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 기관(학교)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학교(기관)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같음													
2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정기 또는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 반기별 12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 실시(공사 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 대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39개)을 수행하는 근로자													
3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지급·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4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학교(기관)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5	학교(기관)는 공사(용역)기관으로부터 과업에 따라 발생 가능한 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table><tr><th>점검 체크리스트</th><th>해당여부(○,×)</th></tr><tr><td>【서식 4-1】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td><td></td></tr><tr><td>【서식 4-2】 감전재해 예방 체크리스트</td><td></td></tr><tr><td>【서식 4-3】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td><td></td></tr><tr><td>【서식 4-4】 일반 산업재해 예방 체크리스트</td><td></td></tr></table> ※ 공사업체의 경우 자율점검관리를 위해 ‘사업장 자체 점검표’ 제공	점검 체크리스트	해당여부(○,×)	【서식 4-1】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서식 4-2】 감전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서식 4-3】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		【서식 4-4】 일반 산업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점검 체크리스트	해당여부(○,×)													
【서식 4-1】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서식 4-2】 감전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서식 4-3】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														
【서식 4-4】 일반 산업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6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와 과업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협의하고 대책을 수립하였습니까?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위험성평가 등 자료에 대한 대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7	건설공사의 경우 학교에서의‘기술지도 계약’과 업체에서의‘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까? ※ (기술지도) 공사금액 1억~120억 미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0만원 이상													
8	학교(기관)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관(고용노동부 등)과 학교(기관)에 즉시 보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까?													
9	학교(기관)는 과업 수행 중에 추가로 발견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학교(기관)와 예방대책에 대해 협의하도록 안내하였습니까?													

※ A/S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징구

공사(용역)업체 확인·서약서

학교(기관)로부터 위 점검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았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하며,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

(서명)

(제시된 서식은 예시 서식이니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 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추락재해 위험 관련 안전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지붕공사거나 작업구간에 개구부가 있는 경우,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사용 시 충분한 검토 필요) ※ 시스템 비계는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7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1) 사다리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 2) 이동식비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탐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 (코브라) 착용

-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참고) 밀폐공간 작업*은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 별도 작성 필요

* 밀폐공간 작업: 비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 탱크 등에서의 작업

- ▶ 밀폐공간 작업* → 유해공기 측정, 환기장치 가동,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작업에 필요한 장비 한국안전보건공단에서 대여 가능(공기측정기, 환기팬(송풍기), 공기호흡기 등)

(제시된 서식은 예시 서식으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전기공사 감전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감전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전로의 설치·해체·정비 등의 감전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작업자의 자격을 확인하겠습니다.			
2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절연장갑, 절연복 등)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임시 수전설비 주변은 관계 작업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위험표지 등을 설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4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작업자에게 LOTO**작업절차를 공지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	가설 분전반 및 전원에는 누전차단기 및 접지를 설치하고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작업하겠습니다.			
6	작업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요인 확인·제거, 절차 준수, 안전시설 설치 등)			
7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등) ※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이외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8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318~324조에 관한 사항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 LOTO(잠금장치, 표지판)란?

“Lock-Out, Tag-Out” 의 줄임말로,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함

○ LOTO 작업절차

- 1 전원차단준비
- 2 기계설비운전정지
- 3 전원차단확인
- 4 LOTO 설치
- 5 작업 실시
- 6 점검 및 확인
- 7 LOTO 해제
- 8 기계설비재가동

○ LOTO 종류 (전기 잠금장치 및 표지판)



※ LOTO(잠금장치, 표지판) 작업절차 바로알기 참조 (안전보건공단, 2020-기술총괄본부-69)

(제시된 서식은 예시 서식이니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

[작업 중 산업재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밀폐공간 작업 시 관계자와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를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밀폐공간 안전작업허가서 포함) ※밀폐공간에 관계자와 출입금지조치가 안된 경우 학교에 안내			
2	밀폐공간내 작업 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하고 작업하겠습니다. ※(계획서 포함사항) 밀폐공간의 위치, 유해위험요인파악, 사전확인 절차, 교육 및 훈련, 기타 건강장해 예방사항이 포함된 프로그램			
3	밀폐공간 작업 전에 작업정보, 작업자정보, 농도측정 및 조치, 노출·유입·발생가능성 검토 및 조치, 보호구, 비상연락체계 등 사전확인사항을 파악하고 작업하겠습니다.			
4	밀폐공간 작업 전·중 지속적으로 환기팬(송풍기)을 가동하고 작업하겠습니다.			
5	작업 시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배치 및 연락가능설비 구비하고 작업하겠습니다.			
6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 (교육내용에 응급조치 포함) ※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이외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7	작업 전·중에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하고 작업하겠습니다.			
8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주요 장비를 사용 또는 비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주요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팬(송풍기), 송기 마스크, 공기호흡기 등			
9	비상시 구조용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사다리, 섬유로프,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10	관리자(작업지휘자)에게 밀폐공간 작업 시 직무를 정확히 알리고 작업하겠습니다.			
11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기관)과 협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 공기측정기, 환기팬(송풍기), 공기호흡기를 무상 대여 받거나 구입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세요

(제시된 서식은 예시 서식이니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일반 산업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작업 중 산업재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절연장갑 등)를 작업자에게 지급 및 착용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2	작업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겠습니다.			
3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채용 시) 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정기(채용 시)교육] 반기별 1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주 이하 1시간, 1개월 이하 4시간 (공사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이외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 해당 조사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5	가시설물, 공구·도구,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전 점검과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보행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행자와의 통로를 구분하여 작업을 하겠습니다			
7	작업 중 작업자의 통로 확보 등 현장에서의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8	전도방지장치를 설치한 사다리를 사용하며, 작업 시에는 2인 1조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9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하겠습니다. (예: 난간보다 높은 곳에서의 사다리 작업, 개구부에서의 작업, 안전난간이 없는 단부에서의 작업 등)			
10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는 공간에는 근로자·보행자의 출입금지 등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11	낙하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12	용접 등 화기작업 시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하겠습니다.			
13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및 부속 접속기구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14	이동전선을 통로 바닥에 설치하지 않으며, 바닥에 설치할 경우 절연피복이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15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연피복의 상태, 누전차단기, 접지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예시)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〇〇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〇〇〇〇〇〇학교장 귀하

20〇〇년 월 안전보건협의회 회의록

일시				장소				
참 석 위 원	도 급 인(부서명)				수 급 인(업체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업체명	직위	성명	서명
		부서장				대표이사		
		팀장				부장		
		주무관				반장		
협의 의결 사항	<p>[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협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업의 시작 시간 : 2. 작업(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3. 사업주와 수급인,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4.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5.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 							
기타 의견								
회의 사진								

작업장 순회 점검일지

○ 작업명:

○ 점검사항:

일시	작업명	점검결과	결재	
			담당자	확인자

합동 안전보건 점검일지

업체명		사업명	
-----	--	-----	--

1. 안전보건 점검사항

점검항목	점검 결과				비고
	양호	보통	불량	해당 없음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교육	-현장책임자 지정 여부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교육결과 기록·보존 등				
안전보건관리비용	-안전관리비 적정 계상 여부 -안전관리비 집행 실태 -항목별 적정 비율 집행 여부 등				
개인보호구지급	-보호구 적격품 구입 여부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 등				
기타 안전보건대책	-위험물 관리 상태 -화재예방 대책 -안전보건표지 설치 상태 -작업장 내 자재 정리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 상태 등				

2. 현장 점검 확인 : 20 년 월 일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점검자				
확인자				

○ 사업 현황

업체명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장위치

○ 점검 항목

항 목	점검내용	점검 결과		
		네	아니요	해당 없음
①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도급인 및 수급인 간 협의체 구성 여부			
	·정기회의 실시 여부(월 1회)			
② 작업장 안전보건점검	·순회점검 주 1회 이상 실시 여부			
	·합동점검 분기 1회 이상 실시 여부			
③ 안전보건 교육지원	·수급인 근로자 교육을 위한 장소, 자료 지원			
	·수급인이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여부 확인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 여부			
⑤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히 조치			
⑥ 유해·위험 정보제공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설비 등에 대한 개조, 분해, 내부로 들어가는 작업시안전보건정보 (해당 물질의 유해·위험성, 작업상 주의사항, 안전보건조치, 긴급 조치사항) 등을 제공			
⑦ 안전보건 정보제공	·화학물질, 질식·붕괴위험 등 작업상 안전보건 주의사항 등 제공 여부			
⑧ 경보운영사항	·발파작업, 화재 및 토석 붕괴 사고대비 경보운영체계를 수립 운영			
	·수급인과 그 근로자가 경보내용을 통보받고 숙지			
⑨ 종사자 의견청취	·수급인근로자 의견청취 여부			
	·청취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치 여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소 속 : ○○건설

직 책 : ○○

성 명 : ○ ○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오니, 아래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내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 년 ○○ 월 ○○ 일

대표이사 ○ ○ ○ (인)

관리감독자 지정서

소 속 : ○○건설
직 책 : ○○
성 명 : ○ ○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오니 아래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1.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 중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 년 ○○ 월 ○○ 일

대표이사 ○ ○ ○ (인)

안전보건교육일지

결
재

교육일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분)						
교육구분	☐ 신규 채용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근로자 정기교육(MSDS, 근골격계관련 교육 포함) ☐ 기타()교육						
교육인원	구 분	계	남	여	교육미실시사유		
	교육 대상자 수						
	교육 실시자 수						
	교육 미실시자 수						
교육과목 (주제)							
교육내용							
교육강사 및 장소	성 명	직 명	교육실시 장소		비고		
비고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NO	직 종	성 명	서 명	NO	직 종	성 명	서 명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붙임 2]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 수준평가 예시자료(서울시교육청)

공사·도급(용역) 시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 (업체명:○○건설)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평가기준)	득점	제출서류		
1. 안전보건 조직체제	○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체제 구축 및 운영의 적정 여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여부(대표자 및 책임자에 한함) - 관리감독자 지정 여부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여부(위탁 가능) *지정서(업체 자체 문서) 및 선임확인서 확인	관리책임자	7	관리감독자 지정서 (붙임1)		
		관리감독자	7		7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3			
	○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의 적정 여부 - 학교(기관) 내 안전관리담당자(관리감독자)가 관리하는 인원 (50명 이하 - 5점, 50~100명 이하 - 3점, 100명 초과 - 0점)	50명 이하	5	안전보건관리 계획서(3명) (붙임2)		
50~100명 이하	3	5				
100명 초과	0					
2. 안전보건 계획수립 (안전보건 관리활동 계획서)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수립 및 적정 여부] ○ 안전보건점검 계획 - 관리감독자(안전보건담당자)의 점검, 확인 등 활동(월 1회 이상) 및 안전보건자율점검(주 1회 이상) 포함 여부 ○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 -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사다리 작업 등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포함 여부 ○ 비상대책 계획 수립(구조 및 신고체계 포함) - 산업재해 시 구조, 신고체계, 시나리오, 긴급조치 사항 포함 확인 ○ 학교(기관)에서의 안전·보건조치 계획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도급 시 협의체 참여, 합동점검 참여 등 안전·보건조치 및 작업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확인 ○ 용역 업종별 유해·위험요인 관리 대책 수립 - 용역 업종에 대한 대표적인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대책 수립 여부 확인 ※ 실행 내역은 타 학교(기관) 내역으로 평가 가능	안전보건점검	1~5	5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붙임3) 작업계획서 (붙임3-1)	
		위험작업계획	1~5	5		
		비상대책계획	1~5	5		
		안전·보건조치 계획	1~5	5		
		유해·위험관리	1~5	5		
3. 안전보건 교육	○ 법정교육 외 추가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 안전보건책임자(사업주), 사업책임자와 해당 학교(기관) 관리자로 구분하여 평가 - 최근 1년간 교육실적(2시간 이상) 이수증 확인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주관 교육만 해당	책임자교육	10	10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확인서 (붙임4)	
		학교(기관) 관리자교육	5			
	○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 (우수) 근로자가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추가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 및 계획을 수립한 경우 - (보통) 법정교육 실시계획 수립 및 실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 (미흡) 법정교육의 실시 및 계획에 누락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간 교육계획 및 실적으로 평가	우수	10	10	교육수강확인서(자체교육일지) (붙임5)	
		보통	7			
		미흡	5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효율성 여부 - (우수) 전문강사(안전·보건관리자 포함)에 의한 집합 또는 위탁교육으로 50%이상 실시 - (보통) 관리자 및 인터넷으로 50%이상 실시 - (미흡) 교육자료 등을 통해 전달교육 실시	우수	10	7	교육수료증 (인터넷) (붙임5)	
		보통	7			
		미흡	5			
4. 안전보건 확보	○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또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여부	안전보건 확보	15			
5. 산업재해 발생	[산업재해발생 수준 평가(감점)]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은폐 및 보고의무 위반 ○ 최근 3년간 평균 사고성 산업재해 발생 현황(동종업종 재해를 이상)	중대재해발생	-10	0	사업장 산업재해를 조취 결과 (붙임6)	
		산재은폐	-5	0		
		사고성 산업재해	-5	0		
6. 평가항목별 득점(공사 60점 이상, 도급(용역) 70점 이상)		계		64		

※ 학교(기관) 사정과 계약 내용에 따라 항목, 배점, 적격업체 기준을 변경하여 사용 가능

관 리 감 독 자 지 정 서

소 속 : 직 책 : 성 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로 지정합니다.

※ 관리감독자의 업무 (시행령 제15조)

1.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 · 감독하는 작업 관련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 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 사용에 관한 교육 · 지도
3.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 · 감독
5.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 · 조언에 대한 협조
6.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 · 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 장비 · 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다.

2025 년 11 월 07 일

대 표 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 기관명: ○ 공사명: 	○ 업체명: ○ 현장책임자: ○ 연락처: 	
	☐ 계약현황		
	○ 계약금액 : ○ 공사기간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관리감독자 성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text-align: center;">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표이사 : </div> <div style="display: flex; width: 100%;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45%;"> 관리감독자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45%;"> 현장안전관리자 </div> </div> </div>			
2. 작업 투입인력의 역할과 책임			
구분	부서	직위/성명	역할과 책임
본사	-	대표이사 :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작업 및 안전관리 총괄 - 작업자 안전교육 계획 수립 - 위험성평가 총괄 관리
현장	시공팀	현장 : (연락처 :)	[관리감독자] - 작업 및 안전관리 현장 책임자 -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 작업장 내 순회점검, 작업 총괄
		현장 근로자 (연락처 :)	- 상하역, 절단, 연삭/연마 작업 등 - 작업장 내 정리정돈, 신호수
		현장 근로자 (연락처 :)	- 상하역, 절단, 용접 작업 등 - 작업장 내 정리정돈

② 위험직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1. 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한 유해 위험 부분과 그에 대한 효과적인 산업예방 대책					
산업 재해 유해 위험 부분 \ 산업예방대책	병상정리 절기	모용구 직공-직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식/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제안 활동)
작업자, 집적자 등 생체적자		✓	✓		✓
공속정단기(피동-활성)	✓		✓		✓
연속기(그리핀에 등)		✓	✓		✓
드림기(그리핀에 등)		✓	✓		
용접기 / 가스정단기	✓	✓	✓		✓
프래임, 고소작업자, 카나리작업	✓	✓	✓		✓

4. 작업영역				
도청 작업(폐하도청)				
평가구분	단직요인	가계직요인	물일한정적 요인	관대적 요인
위협요인	- 보소구 직역출	- 고장 또는 고차출	- 물일한정적 상태에서 작업	- 안전교육 미실시
피해대상	직업자 전원	직업자 전원	작업자 전원	작업자 전원
재해형태	비상, 절단, 타박상	비상, 절단, 타박상	비상, 절단, 타박상	비상, 절단, 타박상
위험성 감소대책	- 보소구 직역 확인	- 작업 전 고장 및 노작출 여부 확인	- 안전성 상태에서 작업 실시	- 안전교육 실시

5. 작업영역				
용접 작업(열공용접기, 권거용접기)				
평가구분	단직요인	가계직요인	물일한정적 요인	관대적 요인
위협요인	- 보소구 직역출	- 고장 또는 고차출	- 작업 장소에 수관설 물설 위치	- 안전교육 미실시
피해대상	직업자 전원	직업자 전원	작업자 전원	작업자 전원
재해형태	사각상해, 화상	화상, 화상	폭발	폭발, 화상
위험성 감소대책	- 보소구 직역 확인	- 작업 전 고장 및 노작출 여부 확인	- 작업환경 확인 후 작업 실시 - 소각기 폐차	- 안전교육 실시 - 화상경시대 매차

6. 작업영역				
공소 작업(사다리)				
평가구분	단직요인	가계직요인	물일한정적 요인	관대적 요인

① 상호 및 연락처

<div>본사 담당자</div> <div>대표</div> <div>이</div>	<div>서고 최종방역자</div> <div>연락처</div> <div>이</div>	<div>출원기관</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서(112) - 소방서(119) - 신촌경찰병실 002-332-7402
	<div>필수요기관</div> <div>002-</div> <div>이</div>	
	<div>수요기관 내부</div> <div>보고제에 따른</div>	

② 원장(학교)에서의 안전보건조치 계획

구 분	안전보건 내용	재무 실행계획
출입 통제	학생 및 교직원 출입구와 교사구의 완전 분리	- 가열방역선(1.5m 이상) 설치 - 출입구 할당표 및 경고표지 부착
통행 안전	학생 통로 및 교사 차량 통행 분리	- 통로폭을 3m 이상 시 안내표 배치 - 통로로 직접 차단 표시
낙하물-대선 방지	정부집업 시 낙하물 방지책 설치	- 고층 건물 작업 시 방호망천 설치 - 파편 갈음 시 작업용구 거둬들(속30cm/s)
수출-원료 분리	이전 판매 및 열기 / 시간대 분리작업	- 투입시간에는 후처리 작업은 공정 분리 - 열대작업은 작업원만 교육용 면 - 폐부품장에서 시행 - 폐수출 작업은 수입 출구로 작업

작업계획서		
- 인력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		
업 체 명		
작 성 일	2025년 11월 12일	

1. 작업개요

공 사 명	중앙청문 안전난간 정비공사 물품 구매		
작업목적	문헌자료에 적재된 자재(파이프 및 난간, 자중제한)의 현장 내 하차/운반		
작업장소	학교 내 자재 저장 보관장소		
작업일자	2025. 11. 15	작업시간	08:00 ~ 10:00 (2시간)
운반거리	약 5m / 12m	운반방법	인력

2. 작업인원 현황

직 명	성명 및 연락처	작업위치	교육여부*	보호구지급	자격여부
관리감독자		재차 장소	○	○	건축 초급
운도자 (차량주)		재차 장소	○	○	해당 없음
근로자		재차 장소	○	○	해당 없음
교육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교육, 안전보건교육				

3. 작업계획(순서)

작업 전 준비	- 중앙청문 내 장애물 제거 및 여객, 중장, 미끄럼 방지 조치 -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안전모, 장갑, 안전화 등) - 스트레칭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실시 - 운반 전 자재의 중량과 형태 확인
운반 작업	- 공사로 이동 시 1행은 물체 재중 보호 - 작업 구간 통제 후 운반 - 25kg 이하의 자재는 2인 1조로 운반
제재 및 정리	- 자재는 물려한 면에 적재 높이 1.2m 이하 유지 - 적재 시 온 적열 주의, 신호주의 지시 등에 대응 - 작업 종료 후 정리정돈 및 안전 점검

6. 운반경로(작업계획 도면)



7. 위원요인 및 안전대책

구 분	단 계	위원요인	안전대책
근골격계 부상	운반 작업	부하한 운반 하중 최소중량	중량물 운반 운반, 2인 1조 배치 작업 전 스트레칭 실시 1시간당 10분이상 휴식
충돌	운반 작업	주행 근조각 협조	전방 시야 확보, 동행과 함께 진행 시행로 확보 작업물 착용 신호수 배치
낙상, 낙하	운반 작업	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 근로자 피로	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 장갑을 제거 미끄럼 방지 안전화 착용, 속도 제한 근로자 휴식 및 스트레칭 실시
번식	제재 및 정리	손 끼임	손 끼임 주의, 보호 장갑 착용 신호수 배치
전도	제재 및 정리	제재 적재 불안	제재 높이 1.2m 이하 유지 제재 고정, 제재 견제 유지

4. 양면(양방향) 제원

종 류	스테인리스 파이프	화물형상	형상, 무게
화물규격	325.4×1.2T×(1470/560-1목) / 325.4×1.2T×(1200/110-1목) 325.4×1.2T×(1200/110) / 325.4×1.2T×(1200/70) / 325.4×1.2T×(1200/20)		
화물중량	300kg	1회 운반중량	1목
취급방법	2인 1조 운반	운반방법	2인
비 고	파이프 묶음 끝측 상단 확인		

종 류	스테인리스 제반난간	화물형상	난간형(화물중)
화물규격	W2000×H1500mm(18경간) / W1650×H2300mm(2경간)		
화물중량	1경간당 25kg/56kg 총 81kg	1회 운반중량	1경간
취급방법	2인 1조 운반	운반방법	2인
비 고	모서리 확인 필요 조치		

종 류	플라스틱제이트 4.5T	화물형상	판판(판단용)
화물규격	260×455mm(150경간) / 1220×2440mm(7경간)		
화물중량	1장당 1.66kg/16.1kg 총 39.5kg	1회 운반중량	20kg 미만
취급방법	2인 1조 운반	운반방법	1~2인
비 고	스크래치 / 긁힘 / 비닐 주의		

5. 작업장소의 출입경로·지반 상태 등 사전 조사내용

조사 항목	조사 내용	비 고
전진 위치 및 출입경로	학교 후문 전진구 폭 약 4m 화물차 주차 가능	대형 장비 진입 불가 (1인력 운반 전용 경로 확보)
지면 상태	아스팔트 포장 바닥 (무분자질) 화물 차량의 급격한 제동 시 미끄럼	무분자질로 인한 낙하 위험 높은 주의
지하 시설물 위치	후문 인근 화단의 위치	배수 관망 및 배수 검토
운반 통로 폭 및 장애물	후문 앞면 폭 약 6m×10m	화단 파손 주의
주변 환경	후문 안쪽 도로 전제 작업반경으로 후문 내 출입금지 표시	차량구간 분리 조치

8. 개인보호구 착용 계획

보호구 종류	착용 목적 / 보호 범위	착용 기준	영양 및 관리 방법
안전모	낙하물, 충돌, 찰상 으로부터 머리 보호	전진 시 모든 근로자 필수 착용	균형, 미끄럼 방지, 앞면 정면, 2인 1조 착용
안전화	미끄럼, 낙하물 충격, 날카로운 물체로부터 발 보호	KS 인증 미끄럼 방지형 안전화 착용	발형 맞춤, 끈을 확인 후 발형 시 교체
작업용 장갑	손 끼임, 마찰, 찰상 위험 예방	물건, 바닥 등 모든 작업 시 착용	손바닥 마모, 찢김 여부 확인
작업복	신체 보호 및 사생활 확보	업사복 부착 조끼 착용	오염, 찢김 시 교체

9. 점검 계획

- 작업 전 점검: 운반경로 상태, 자재 적재상태,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기상조건 확인
- 작업 중 점검: 작업자 상태(피로도, 집중도, 숙식시간 준수), 운반경로 상태, 소통체계 확인
- 작업 후 점검: 지체 현황 정리 및 통보 확보, 보호구 착용 여부, 현장 정돈, 이상사항 확인

10. 비상조치 계획

비상조치 계획	
사고 발생 시 즉시 작업 중지 및 관리감독자 보고 → 작업정지 → 조기사출(발생 시) → 긴급 대피 → 병태자 응급처치 및 신고(119, 소방서, 교통사고신고) → 안전요원 → 병원으로 및 대피소로	
신호 및 연락체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관리감독자</p> <p>1</p> </div> <div> <p>작업자</p> <p>2</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관리감독자</p> <p>3</p> </div> <div> <p>작업자</p> <p>4</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수요기관</p> <p>5</p> </div> <div> <p>수요기관</p> <p>6</p> </div> </div>	
수요기관 내부 보조체계에 해당	



[별지 제4호서식]

발급번호 :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확인서			
사업장명	(/건설일감 (건설공사명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0)
대표자 (교육이수자)	()	전화번호	
		팩스번호	
교육 일시	2025.11.11 (2시간)		
소재			
<p>위 사람은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11월 13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p>			



원본문서번호 : []

사업장 산업재해를 조회 결과

【 신청 내용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	[]
사업장명	[]		
산재 적용업종(출입종)	건설업 가계가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소재지	[]		

- ▶ 해당 자료는 기업 스스로 산재현황을 파악하여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 ▶ 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 "사업자등록번호" 기존의 조회자료로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개시번호로 조회한 결과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 2025년 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은 잠정 수치입니다.

【 조회 결과 】

① 사고사망만인율

기간	사고사망만인율(%)	
	기업	동종동규모 평균
2022년01월~2024년12월(3년 평균)	0.00	2.38
2022년01월~2022년12월	0.00	2.15
2023년01월~2023년12월	0.00	2.34
2024년01월~2024년12월	0.00	2.47
2025년01월~2025년06월	0.00	0.92

- ▶ 산출방식: (사고사망자 /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 10,000
- 사고사망자: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업무상 사고사망자
-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문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 · 치욕행사 · 폭력행위 · 동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

② 재해율

기간	재해율(%)					
	전체		사고		질병	
	기업	동종동규모 평균	기업	동종동규모 평균	기업	동종동규모 평균
2022년01월~2024년12월(3년 평균)	0.00	2.08	0.00	1.67	0.00	0.41
2022년01월~2022년12월	0.00	1.70	0.00	1.49	0.00	0.20
2023년01월~2023년12월	0.00	1.96	0.00	1.65	0.00	0.51
2024년01월~2024년12월	0.00	2.27	0.00	1.73	0.00	0.54
2025년01월~2025년06월	0.00	0.61	0.00	0.56	0.00	0.25

- ▶ 산출방식: [재해자 수(사고재해자 + 질병재해자) /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 100
- 재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및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승인을 받은 자
- [동상의 출퇴근으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
- ※ 질병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재해자로, 해당 사업장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 :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25.11.0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무단으로 복사, 위·변조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증명서 발급 정보 : Chrome | 비코드 : 3단 | 비코드 넓이 : 16.0cm | 비코드 높이 : 1.5cm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공통)

[기관(학교)에서 점검하고, 업체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 기관(학교)명 :

■ 정 검 자 :

■ 점검일자 : 2025. 11. 15.

번호	정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학교(기관)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												
2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 사업주(대표자)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주 교육만 해당 1년 이내에 2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증 확인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포함)	○												
3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정기 또는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 반기별 12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 실시(공사 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 대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30개)을 수행하는 근로자	○												
4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지급·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												
5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학교(기관)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												
6	학교(기관)는 공사(용역)기관으로부터 과업에 따라 발생 가능한 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table border="1"> <thead> <tr> <th>점검 체크리스트</th> <th>해당여부(○, x)</th> </tr> </thead> <tbody> <tr> <td>(붙임) 주력재해 예방 체크리스트</td> <td>○</td> </tr> <tr> <td>(붙임) 감전재해 예방 체크리스트</td> <td>○</td> </tr> <tr> <td>(붙임)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td> <td>x</td> </tr> <tr> <td>(붙임) 일반 산업재해 예방 체크리스트</td> <td>○</td> </tr> </tbody> </table> ※ 공사업체의 경우 자율점검관리를 위해 '사업장 자체 점검표' 제공	점검 체크리스트	해당여부(○, x)	(붙임) 주력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붙임) 감전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붙임)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	x	(붙임) 일반 산업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		
점검 체크리스트	해당여부(○, x)													
(붙임) 주력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붙임) 감전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붙임)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	x													
(붙임) 일반 산업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7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와 과업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협의하고 대책을 수립하였습니까?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위험성평가 등 자료에 대한 대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8	건설공사의 경우 학교에서의 '기술지도 계약' 과 업체에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까? ※ (기술지도) 공사금액 1억~120억 미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0만원 이상			○										
9	학교(기관)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관(고용노동부 등)과 학교(기관)에 즉시 보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까?	○												
10	학교(기관)는 과업 수행 중에 추가로 발견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학교(기관)와 예방대책에 대해 협의하도록 안내하였습니까?	○												

* A/S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징구

공사(용역)업체 확인·서약서

학교(기관)로부터 위 점검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았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하며,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

